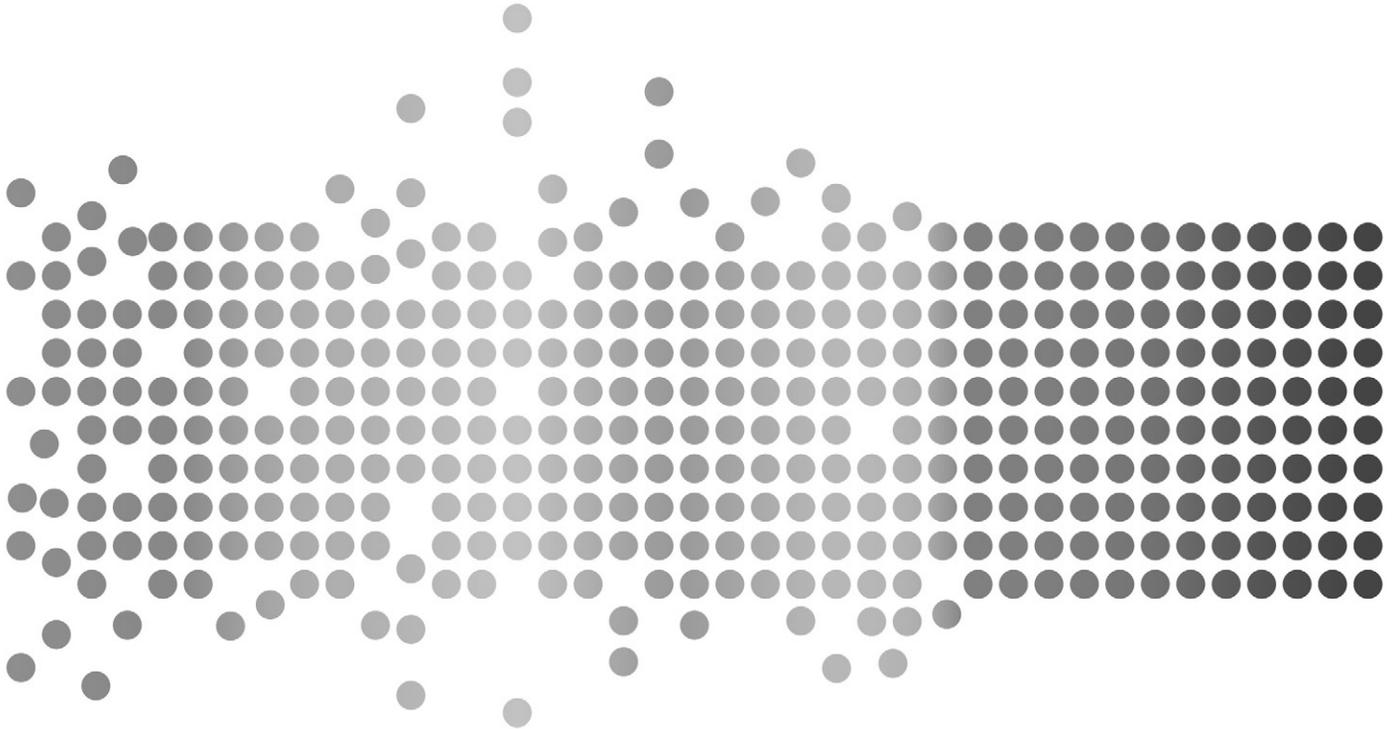


아동수당 도입방안 연구

최성은 · 신윤정 · 김미숙 · 임완섭



보건복지가족부
Ministry for Health, Welfare and Family Affairs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머리말

1970년대 이래 가족은 몇 가지 주요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먼저 출산의 감소와 연기, 다양한 가족형태의 등장과 함께 여성의 노동시장 참가가 증가하는 등 인구학적인 증가가 두드러진다. 이러한 인구학적인 변화는 전통적인 남성부양자 모델에 기초한 한국의 가족정책에 대한 변화를 야기하고 있다. 특히 유자녀 가족에 대한 복지 욕구와 맞벌이 부부에 대한 지원의 증가는 가족정책이자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그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다음으로 연속적인 경기 침체와 평균 이상의 실업률 수준, 노동시장의 이중화는 다른 선진국에서와 마찬가지로 한국에서 경제적 취약집단인 가족을 증가시키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빈곤의 위험에 처한 가족들을 보호할 다양한 정책의 입안을 유도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여성의 노동시장 이탈을 예방하고 노동시장 참여 때문에 혼인과 출산을 연기하는 (예비)부모들의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고자 산전후 휴가와 육아휴직, 가족친화적인 기업문화 조성 등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출산율은 좀처럼 증가하지 않고 있고 출산과 육아에 대한 미혼남녀의 의식 역시 상당히 부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자녀 양육에 대한 국가적 책임의 강화라는 측면에 대한 논란이 끊임없이 계속되어 왔다. 선진국에서 출산을 장려하고 유자녀 가족의 다층적인 복지욕구를 해결하고자 현금 급여와 영유아 보육교육서비스, 일과 가정생활의 조화로운 양립을 지원하는 정책 등을 동시에 제공하면서 출산과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사회와 국가가 분담하는데 반해 한국에서는 그러한 경제적 부담과 돌봄에 대한 사회적 부담이 여전히 자녀를 양육하는 가족에게 한정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최근 보육정책의 대상자확대와 예산의 증가가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취학이후 이동까지를 포함한 유아녀 가족 혹은 일반아동에 대한 지원은 미흡한 수준에 있어 아동수당정책에 대한 필요성이 일부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취지에서의 아동수당은 보편적 형태를 지양하여야 하는데 이는 가족정책의 확장과 구조개편 및 막대한 재원을 필요로 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이에 본 보고서는 현실적 도입 가능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는 견지에서 아동수당의 재원조달 방안들을 검토하고, 한국의 다양한 아동 양육과 관련한 기존의 제도들 내에서 아동수당을 도입해야 할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토하여 선행연구들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한 데 그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최성은 부연구위원의 책임 하에 김미숙 연구위원, 신윤정 부연구위원, 임완섭 선임연구원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본 연구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 연구진은 그동안 다양한 조언과 협력을 해주신 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복지과의 임인택 과장, 연구진행과 원고검독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박찬수 사무관께 깊이 감사하고 있다. 아울러 본 연구의 수행과 결과 등에 유익한 조언을 주신 본원의 최현수 부연구위원과 이소정 부연구위원에게 감사를 표하고자 한다. 본 보고서가 발간되기까지 조사와 자료정리를 꼼꼼히 해준 강지원 연구원, 이선주 연구보조원, 박신영 연구보조원에게도 감사하고 있다.

끝으로 본 보고서에 수록된 모든 내용은 어디까지나 저자의 사견이며 본 연구원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2009년 10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김 용 하

요 약	1
제1장 서 론	15
제1절 연구의 배경	15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8
제2장 아동수당의 필요성 및 타당성	23
제1절 필요성 및 타당성	23
제2절 아동수당의 효과에 관한 선행연구	30
제3장 한국의 아동양육지원정책	37
제1절 수당정책	37
제2절 보육지원정책: 바우처 제도	43
제3절 노동 정책	44
제4절 세제지원	46
제4장 아동수당 재원조달	51
제1절 해외 아동수당 도입국가들의 재원조달: 아동수당유형별 재원조달방식	51
제2절 일본의 아동수당과 재원조달방안	57
제3절 세입유형별 재원조달방안	78
제4절 아동 양육지원 세제감면의 해외사례	82
제5장 아동수당 도입방안	91
제1절 아동수당 정책목표	91
제2절 아동수당 도입 방안과 재정추계	94
제3절 아동수당 도입시 재원조달 방안	101

제6장 아동수당 도입시 쟁점사항	109
제7장 결론 및 정책제언	123
참고문헌	127
부 록	141

표 목차

〈표 2- 1〉 OECD 국가의 아동수당 규모	25
〈표 2- 2〉 가족정책의 노동공급 효과에 관한 선행연구	31
〈표 2- 3〉 가족정책이 출산율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선행연구	32
〈표 2- 4〉 가족정책이 아동양육지출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선행연구	33
〈표 3- 1〉 중앙정부의 아동양육관련 수당정책	39
〈표 3- 2〉 광역지자체의 양육수당 지원 현황(2008년 8월 기준)	40
〈표 3- 3〉 중소도시 양육수당 지원 현황(2008년 8월 기준)	41
〈표 3- 4〉 대도시 출산 축하금 지원 현황 (2008년 8월 기준)	42
〈표 3- 5〉 아동양육관련 바우처제도	44
〈표 3- 6〉 아동양육관련 노동정책	46
〈표 3- 7〉 부양아동 관련 세제혜택	47
〈표 4- 1〉 아동수당 도입국가들의 재원조달 유형	51
〈표 4- 2〉 OECD국가의 아동수당 유형별 재원조달 방식	53
〈표 4- 3〉 일본의 아동수당제도 개관	58
〈표 4- 4〉 일본의 아동수당 구성 및 수급대상	60
〈표 4- 5〉 일본의 아동수당 및 특례급부의 소득제한 한도액(전년도 기준)	60
〈표 4- 6〉 일본의 아동수당 및 특례급부의 월 급여액	62
〈표 4- 7〉 일본의 아동수당제도의 주요연혁	63
〈표 4- 8〉 일본의 아동수당 및 특례급부 운용현황(2006)	66
〈표 4- 9〉 일본의 아동부양수당 소득제한 한도액	68
〈표 4-10〉 일본의 아동부양수당 월 급여액	68
〈표 4-11〉 아동육성수당의 소득제한한도	69
〈표 4-12〉 일본의 고용주 부담액 부과표준	73
〈표 4-13〉 일본의 인적소득공제제도	74
〈표 4-14〉 일본의 특별소득공제제도	75

〈표 4-15〉 ILO기준에 따른 아동수당 부담액과 지급액(2006)	76
〈표 4-16〉 1975부터 2006년까지의 아동과 가족에 대한 사회보장비용	77
〈표 4-17〉 조세감면액 추이	79
〈표 4-18〉 근로소득세액공제 (EITC) 환산표(2003)	85
〈표 4-19〉 미국의 초과소득에 따른 근로소득세액공제의 감축(2003)	85
〈표 4-20〉 영국의 근로세액공제 및 자녀세액 공제율과 구간	86
〈표 5- 1〉 시나리오별 수급대상 규모	97
〈표 5- 2〉 시나리오별 소요재정 추계규모 결과표(월 10만원 수당 지급)	99
〈표 5- 3〉 시나리오별 소요재정 추계규모 결과표(월 5만원 수당 지급)	100
〈표 5- 4〉 아동관련 세제혜택 규모 (1998 ~2008)	104
〈표 7- 1〉 아동수당의 도입 및 중장기 확대방안	125

그림 목차

[그림 4-1] 일본의 아동수당 재원조달 방식	71
[그림 4-2] 일본의 아동수당 교부금 등의 관한 회계조직	72
[그림 4-3] 2000~2009년 일본 아동복지관계 예산	76
[그림 5-1] 아동수당의 정책 목표	91
[그림 5-2] 아동수당 도입 시나리오(보육지원정책과 중복)	95
[그림 5-3] 아동수당 도입 시나리오(보육지원정책과 중복안됨)	96

부표 목차

〈부표 1〉 정부가 전액 부담하는 국가들	133
〈부표 2〉 정부와 고용주가 부담하는 국가들	142
〈부표 3〉 정부와 고용주, 피보험자가 재정을 부담하는 국가들	147
〈부표 4〉 시나리오 1, 2안 소득기준별 수급대상 규모	149
〈부표 5〉 시나리오 3, 4, 5안 소득기준별 수급대상 규모	150
〈부표 6〉 시나리오 1, 2안 소득기준별 소요재정 추계규모(월10만원 수당지급)	151

- 〈부표 7〉 시나리오 3,4,5안 소득기준별 소요재정 추계규모(월10만원 수당지급) 152
- 〈부표 8〉 시나리오 1, 2안 소득기준별 소요재정 추계규모(월5만원 수당지급) ...153
- 〈부표 9〉 시나리오 3,4,5안 소득기준별 소요재정 추계규모(월5만원 수당지급) ·154

요약

1. 아동수당 도입의 필요성 및 타당성

- 아동수당은 아동의 인적자원 육성에 대한 사회적인 책임을 공유하는 동시에, 자녀 양육으로 인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부담을 사회적으로 공유하여 유자녀 가족이 빈곤해지는 것을 예방하고, 유자녀에 대한 경제적·사회적 부담으로 인하여 출산을 꺼리는 가족들의 출산을 장려한다는 측면에서 도입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음.
- 아동수당을 포함하는 가족정책의 효과성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아동수당이 노동공급 (특히 여성)에 미치는 영향은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으나, 이는 분석대상이 되는 가족정책이 육아휴직중인 부모에게 제공되는 수당정책의 노동공급 효과이므로 아동수당의 노동공급효과가 실증적으로 부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 아동수당을 포함하는 협의의 가족정책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은 장기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아동수당만의 출산율제고 효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미미함을 보이고 있는 연구도 있음. 한편, 아동수당은 일반적으로 자녀양육시 소요되는 지출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음.

2. 한국의 아동양육지원 정책

- 한국에서 아동양육을 지원하는 정책들은 복지정책과 노동정책, 조세정책 등에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음.
 - 한국에서 아동 양육에 대한 지원은 주로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및 유아교육비를 지원하는 바우처형식을 띠었음.
 - 아동 양육 관련 수당제도는 양육수당, 장애아동수당, 한부모가족의 자녀 양육수당, 입양 자녀 양육수당, 입양 장애아동 양육보조수당 등이 있음.
 - 노동정책의 측면에서는 일가족양립제도를 통해 아동의 양육을 지원하고 있음.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급여는 출산여성에 대한 보호와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을 사회가 부담하게 함으로써 양성평등과 미래세대에 대한 보호책임을 가지도록 함.
 - 세제측면에서의 지원은 반드시 자녀의 양육을 지원하는 목적은 아니지만 자녀가 있는 가정에 대해 자녀의 존재 혹은 양육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소득공제 형식으로 혜택을 주고 있음.

3. 아동수당의 재원조달

- 아동수당 도입국가들의 재원조달을 재원부담의 주체별로 살펴보면, 정부(43개국) 혹은 고용주(25개국)가 전액 부담하거나 정부와 고용주가 공동부담(12개국), 정부와 근로자가 공동 부담(1개국), 고용주와 근로자 공동부담(2개국), 정부와 고용주, 근로자가 공동부담(12개국)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음.
 - 스리랑카는 특이하게 고용주 부담없이 정부와 근로자가 재원을 분담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
 - 니카라구아와 아프리카 툰시아에서는 정부 부담없이 고용주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극히 예외적인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
- 보편주의 유형하의 재원조달은 주로 정부에서 재원을 부담하지만(노르웨이, 스웨덴 등), 정부와 고용주가 부담(오스트리아, 프랑스)하거나 정부와 고용주, 근로자가 재원을 부담(포르투갈)하기도 함.

- 프랑스의 경우는 보편적 형태의 가족수당을 지급하면서 동시에 자산조사를 실시하는 영아 급여등을 지급하고 있으며, 고용주와 자영업자가 임금총액의 5.4%를 부담하고, 정부가 개인의 소득에 사회기여금을 부여하여 징수.
 - 오스트리아는 보편적인 가족수당과 저소득층 부모에 대한 아동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형태로 아동수당이 지급되고 있으며, 가족수당의 재원은 고용주가 임금의 4.5%를 고용주 부담금으로, 주정부는 거주자당 연 1.74유로를 부담하고, 중앙정부가 세입의 일정 비율을 가족수당 평형기금 (Family Allowances Equalization Fund)으로 이전하여 재원을 부담.
 - 거주자가 2,000명이 넘는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자치단체는 자체 예산으로 가족수당의 재원을 조달하며 이 경우 고용주 부담금은 각출하지 않음.
 - 이스라엘의 경우는 보편적인 가족수당만을 제공하면서 자산조사가 필요한 추가적 수당이 없으나, 고용주가 재원을 부담함에 있어 소득에 따라 차등적인 부담을 부과함.
 - 정부는 소득의 0.8% 와 총 보험료 수입의 202.38% 를 부담하며, 장학금 및 이민자 가정의 아동에 대한 가족수당은 전액 부담함.
 - 고용주는 평균 임금의 60% 이하인 경우 소득의 1.47%를 부담하고, 평균 임금의 60% 이상인 자에 대하여서는 소득의 2.08%를 부담함.
 - 자영업자는 평균 임금의 60% 이하인 경우 소득의 1.39%를 부담하고, 평균 임금의 60% 이상인 자에 대하여서는 소득의 2.4%를 부담함.
 - 포르투갈의 경우는 보편적인 가족수당으로 분류되지만 자산조사를 통해 소득 구간별로 액수가 차등 지급되고 있음. 고용주와 근로자는 각각 연금보험료 34.75% 중 2.15%를 가족수당 재원으로 납부하고 있고, 자영업자는 연금보험료 32% 중 일부를 가족수당의 재원으로 납부.
- 고용관계 유형의 아동수당은 아동이 있는 근로자나 자영업자에 대하여서만 제공되어 사회보험수급자격과 함께 아동수당이 지급되는 경우로, 재원은 그 성격상 고용주가 재원부담의 일차적 책임을 지게 됨. 고용주 부담으로 부족한 경우, 정부가 부족분에 대하여 보조 고용관계라 할지라도 피보험자와 고용주가 나누어 부담하는 경우도 있음.

- 이탈리아는 사회보험, 실업수당을 받는 근로자 가구를 대상으로 하여, 고용주가 임금 총액의 2.48%를 부담하고 정부가 고용주 기여금의 1.8%를 포함한 보조금을 부담하는 형태로 재원을 조달. 자영업자들과 특수직 연금을 수령하는 특수직 종사자에게는 다른 가족수당 시스템이 적용되는데, 자영업자들의 재원부담은 없음.
- 스위스는 대부분의 주정부에서 고용관계 유형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5개 주에서는 고용관계와 공공부조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 스위스 연방정부 사업은 특정소득 이하인 농업부문의 근로자와 소규모 자영업자들도 대상자에 포함하고, 주정부 사업은 비농업부문 근로자를 포함하며 몇 개 주에서는 자영업자와 연방정부의 수당 대상자가 아닌 농민을 포함하는 경우도 있음.
 - 재원은 고용주와 정부가 분담하는 형식이며, 자영업자도 대상이 되는 주정부 수당은 자영업자도 정률의 기여금을 부담하거나 총소득의 1%를 부담
 - 비농업부문의 고용주는 주정부의 재정상황에 따라 급여의 0.1%~ 4%의 부담금을 부담하며, 농업부문 고용주는 급여의 2%를 부담
 - 주정부와 연방정부는 농업부문 고용주 부담금의 부족분과 소규모 자영업자의 급여 전체를 주정부가 1/3, 연방정부가 2/3 부담.
 - 자영업자까지 가족수당의 대상이 되는 주의 경우, 자영업자 부담금을 초과하는 부족분에 대해서는 가족수당기금 (Family allowance fund)이나 주정부가 부담.
 - 주에 따라서는 근로자가 아닌 가구도 포함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주정부가 재원을 부담.
- 그리스의 경우는 고용주외에도 피보험자가 재원을 부담하고 있는데, 피보험자가 소득의 1%, 고용주가 임금총액의 1%를 기여하고, 정부가 예산보조의 형태로 재원을 분담. 자영업자에게는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므로 자영업자는 재원부담을 하고 있지 않음.
- 일본의 아동수당은 고용주 부담과 공공부조 (employer liability and social assistance system)로 분류됨. 이는 3세미만 영유아에 대하여서는 고용주가 재원을 부담하는 등 아동양육에 대한 책임이 일부 기업에 전가되고 있기 때문.

- 일본의 아동수당은 자산조사를 거쳐 일정소득 이하의 가구에게만 지급되므로 보편적 수당이 아니며, 재원은 고용주, 중앙정부, 지방정부 3자가 부담
- 3세미만 영유아에 대한 재원은 고용주가 70%, 중앙정부가 10%, 도·도·부·현이 10% , 시·정·촌이 10%를 부담.
 - 고용주는 급여의 0.13%를 고용주 각출금으로 납부하고, 이는 연금특별회계의 아동수당 계정으로 징수.
 - 직장이 없는 사람이나 자영업자의 경우 중앙정부가 1/3, 도·도·부·현이 1/3, 시·정·촌이 1/3을 나누어 부담
 - 공무원의 경우는 해당기관이 전액 부담
 - 574만엔의 소득 제한으로 인해 아동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는 근로자의 지급률을 자영업자와 같게 하기 위한 특례급부에 필요한 비용은 고용주가 전액 부담
- 만 3세 이상에서 초등학교 수료 전까지의 수급대상아동에 지급될 아동수당에 필요한 비용은, 모두 정부와 지방정부가 나누어 부담.
- 일본의 고용주각출금은 임금과 보수를 부과표준으로 하는 점에 있어서 사회보험료와 유사하지만, 아동의 양육이라는 사회적 위험에 대한 지출이라는 점과, 피고용자만이 아니라 일반 대상자를 위한 각출금이라는 점 등에 있어서, 사회보험료 중 사업주부담과는 다른 새로운 사회보험 각출금으로서의 성격을 지님.
- 이는 국가부담의 일부를 고용주에게 부담시킨다고 하는 소극적인 견지에서만 출발하는 것은 아니고, 각출금 방식을 통한 사회보장제도의 재원조달이 비교적 그 급여 수준이 높고 제도의 지속적 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는 장점에 기인한 측면도 있음.
- 정부측면에서는 중앙정부보다 지방정부의 재원부담이 더 크게 부과되고 있음.
 - 이는 아동수당제도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이지만, 지역주민의 복지와의 밀접히 관계되어있다는 점에 기인함.
 - 원래는 국가와 지방의 책임분담의 정도를 감안하여 중앙정부가 지방공공단체의 2배를 부담해왔으나, 중앙정부와 지자체에 대한 "삼위일체의 개혁"에 의해 부담율이 재고되어, 중앙정부, 도·도·부·현, 시·정·촌 이 각각 동일한 비율로 부담하게 됨.

- 재정지출의 재원조달방안은 세입유형별로 조세, 사회보험료, 국채로 분류할 수 있음.
 - 조세체제를 통한 방안은 세율인상과 세원확대를 통해 추가적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임.
 - 세원확대 방안은 매우 다양하나 비과세감면제도 등의 조세지출제도의 개선, 소득공제제도의 개선, 세원투명성 제고를 통한 세원확대가 가능하며, 목적세의 신설, sin tax 강화, 개별소비세 인상등의 방안이 있음.
 - 사회보험제도를 통한 방안은 육아보험과 같은 사회보험을 신설하거나 기존의 사회보험료 인상, 일본식의 이동수당 고용주각출금을 통한 세입의 증대를 들 수 있음.
- 조세지출은 감추어진 보조금의 역할을 함으로 조세제도 안에 조세지출이 많이 포함될 경우, 재정이 비효율적일 운영될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져 있고 특혜성 보조금지급으로 호를 가능성이 많고 취지와는 달리 주로 고소득층에 의해 활용이 되고 있으므로 역전된 보조의 성격을 띠 수 있음.
 - 한국의 경우, 2008년 총 189개의 조세지출항목에 대한 조세감면제도가 운용되고 있으며 총 조세감면액 규모는 약 29조원으로 잠정 집계됨. 그러나, 특정사항에 대해 조세감면이 집중화되고 기득권화되는 경향이 있음.
 - 이에 정부는 조세지출제도를 정비하려고 하여도, 현실적으로 감면제도의 타당성이나 지원달성여부를 분별하기가 쉽지 않다는 어려움이 있고 축소보다는 확대유인이 더 강한 항목이 있을 수 있으며, 이해당사자들의 저항이 심할 수 있다는 어려움이 있음.
- 목적세는 특정세입과 재정사업지출을 연계하는 것으로, 특정세입과 수혜자 연계성이 큰 경우, 형평성과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음.
 - 정권이 바뀌더라도 다음정부가 해당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는 등 정치경제적 측면에서 타당성이 있으며 기타 조세에 비해 재정지출과 세입이 연계되므로 비교적 모니터링이 용이하고 사회통합을 위해 필요한 지출에 대하여 필요 불가결한 최저한의 재원보장과 사업의 계속성이 보장되고 새로운 조세의 도입이나 기존조세의 세율인상에 대한 조세저항이 일반조세의 경우보다 크지 않아 현실적으로 용이함.

- 그러나, 목적세의 신설로 정부 세입이 다원화될수록 소비자개인들의 정부 재정활동에 대한 비용과 편익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흐려지는 재정환상 (fiscal illusion)현상이 심화되어 정부재정의 팽창이 야기될 수 있음. 아동의 건전육성, 출산장려 등 아동수당의 정책목표와 명백한 연계성을 납득시키기 어려운 경우, 조세저항이 우려됨.

- 사회보험제도를 통한 재원조달의 한 예인 스웨덴의 부모보험은 출산 후 휴가기간 및 육아기간 중 아동의 질병이나 보호자의 질병에 의한 휴가기간 동안의 소득상실의 80%를 지불하는 등의 혜택을 제공하며 재원은 고용주가 부담하는 보험금으로 충당함. 이외에도 기존 사회보험 즉, 고용보험이나 연금보험의 고용주 부담분의 일부를 아동 및 가족수당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경우도 있음.

- 국제발행에 의한 재원조달은 재정사업의 수혜자가 현세대보다는 미래의 세대일 경우, 수혜자 부담원칙에 입각하여 그 타당성이 인정되고 있는 반면, 민간부분 투자에 구축효과를 일으켜 이자율을 상승시키고 민간부분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으며 국제수지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단점이 있음. 사회보장성 보험수지를 제외한 통합 재정 수지상 GDP 대비 1% 수준의 적자국채(약 8조원)의 발행은 재정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짐.

4. 아동수당의 도입방안

- 아동수당의 정책목표로서는 첫째, 아동이 있는 가족의 소득을 보존하며, 둘째, 아동의 권리와 건전한 발달을 통해 미래성장동력을 구축하고, 셋째 이를 통한 출산율의 제고로 수립될 수 있음.

- 이에 따라 한국의 아동수당 도입방안은 궁극적으로 보편성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고안되었으며, 현 제도 중 아동수당과 가장 유사하거나 중복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양육수당과 보육지원제도와와의 관계 설정을 통해 5가지 방안이 검토됨.

- 보육지원제도와 관계에 따라 중복(1안, 2안, 3안)과 비중복(4안, 5안) 시나리오를 구성하였고, 보육지원제도 대상 영유아가 포함 되는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양육수당을 중복 지급할지의 여부를 고려하였음.

- 각각의 시나리오는 연령 제한을 만6세에서 만12세, 만18세로 확대하면서 포괄적인 의미에서 아동을 포함하고자 함.
 - 각각의 시나리오는 차상위계층에서 소득의 하위 50%, 소득하위 80%까지 기준을 완화시키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장기적으로 보편주의를 지향하고자 함.
 -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가장 보수적인 방안(1안)에서 가장 보편적인 방안 (3안)의 소요재정은 약 3천억원 ~ 9조7천억원으로 추계됨.
- 보편적이며 관대한 아동수당 및 가족수당을 제공하며 정부가 재원을 전적으로 담당하는 경우, 소득세제 등에서 아동관련 세제혜택들을 정비하는 경우가 많음.
- 현행 조세제도를 통한 아동양육지원은 직접세를 통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고 형태별로는 부양자 수에 따른 소득공제 형식의 조세지원을 하고 있음. 그러나, 이는 가구원 수 및 부양자수에 따른 보조를 지급하고 있어 해당공제액에 대해 고소득층이 더 많은 혜택을 받는 소득재분배 역행이라는 조세지출제도의 약점을 가지게 됨.
 - 이에 현행 소득공제제도를 개편을 통해, 수혜자 측면에서는 소득공제보다 현금지원이 지원에 대한 정책 만족도나 체감율이 높을 수 있음.
 - 사회보장세의 신설은 부과되는 세원과 아동수당급여 지출과의 연계가 큰 경우,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용이함.
 - 담배에 사회보장세를 부과세 형태로 부과하여 아동수당 재원으로 활용하는 경우, 담배의 외부불경제를 수정하면서 사업의 안정적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음.
 -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보험료가 외국의 경우와 비교하여 낮은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국민연금 보험료율에 일정률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아동수당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음.
 - 일본의 경우와 같이, 사회보험료와 유사한 성격을 갖는 고용주 각출금 징수를 통해 재원을 조달할 수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 급여의 0.1%를 고용주 부담으로 하여 국민연금사업장과 같은 기분으로 부과하는 경우, 약 2천 2백억원의 재원이 추가될 것으로 예측됨.

5. 아동수당 도입시 쟁점사항

□ 아동수당 도입에 따른 급여지급을 위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따른 재정적인 부담이 제도 도입을 주저하게 하는 가장 큰 이유로 지적되고 아동수당 제도 도입시 출산률 제고로서의 역할을 담당해야 함으로 아동수당 도입시 예상되는 쟁점사항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필요.

○ 유사정책과의 중복성 문제

- 수당측면에서 양육수당, 장애아동수당,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사업, 한부모가정 자녀 양육수당, 입양 자녀 양육수당, 입양 장애 아동양육 보조수당 등이 서비스중복에 해당될 수 있는 제도임. 노동정책측면에서 아동수당과 서비스중복에 해당될 수 있는 제도로는 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등이 있음. 아동수당과 인적·특별공제와 같은 세제지원 제도와의 중복성이 있을 수 있음. 중앙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은 아니지만 각 지자체가 추진하고 있는 양육지원 정책 또한 아동수당과의 서비스 중복이 발생할 수 있음.
- 그러나, 노동정책은 양성평등, 여성 노동력의 보호를 강조하는 제도들이고 수당정책은 사회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여성노동력을 활용하기 위한 제도이며 세제정책은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저임금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즉, 아동수당은 자녀의 건전한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다른 서비스와의 중복성은 매우 낮다고 할 수 있음. 일부제도의 경우, 중복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제도 자체에서 중복성을 배제하고 있으며 입법 취지가 다름에 따라 중복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됨.
- 우리나라의 경우 아동수당이 도입된다면 아동수당을 축으로 기존의 보육 및 아동에 대한 교육지원 정책들을 체계화하여 가족정책을 재정립할 필요성이 다분히 존재함.
- 그러한 경우 양육수당으로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과 이용하는 가정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것보다는 보육료나 시설지원을 강화하여 보육을 강화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 소득공제 제도 개편시 수혜계층의 변동
 - 현행 소득공제 제도 개편으로, 고소득층에서 저소득층으로, 전가구에서 아동수당 대상자 가구로 수혜계층이 변동하게 됨에 따라, 아동수당 지급연령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정이나 아동수당의 지급을 받을 수 없는 가정의 부담은 증가하게 됨.
 - 대상아동의 연령이 높고 대다수 소득계층을 포함하는 보편적 형태의 아동수당이 도입되고, 소득공제제도의 개편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소득분포상 대다수의 가구가 수혜대상이 됨에 따라 세제감면 혜택의 정비에 따른 소득계층간 부담의 변동은 상대적으로 작을 수 있음.
 - 또 부양아동이 있으나 아동수당 지급연령 이상의 자녀를 가진 가정에 대한 부담도 상대적으로 작을 수 있음.
 - 다만, 아동수당이 저소득층 가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소득공제제도의 개편은 고소득층 아동부양 가구에서 저소득층 아동부양 가구로 소득이 이전되는 소득재분배적인 측면이 강화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결론하면, 아동수당과 함께 소득공제제도를 개편하는 경우 중산층 미만 가구에 대한 소득재분배 효과와 함께, 빈곤아동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아동수당 제도도입을 위한 사회적 합의
 - 아동양육지원정책은 영유아가 공공재라는 것을 감안해 볼 때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전체 가정에 대한 보편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며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보편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
 - 아동수당의 보편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은 개별가정이 아닌 전 국가적인 책임이라는 것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져야 함.
 - 이러한 합의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아동 수당에 대한 정부의 과감한 재정적 지출이 가능해 질 것으로 판단됨.
- 아동수당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 여성학적 관점에서 아동수당 도입함에 따라 여성의 취업의사가 저하될 수

있다는 이유로 도입을 반대하고 있음.

- 아동수당과 여성의 취업의향과의 문제는 아동수당정책의 도입여부의 차원이 아니라 여성 고용의 환경을 개선하고 여성들의 커리어 의식을 향상하는 차원에서 해결되어야 할 문제임.

○ 중산층에 대한 지원

- 자녀양육부담은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계층이 가지고 있는 문제이기에 소득 계층에 상관없이 아동수당을 보편적으로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음.
- 다만, 소득 형평성 문제를 고려하기 위해 소득계층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즉, 소득분위별로 그룹을 나누어 높은 소득 집단 일수록 지원액수를 감액하여 지급하고 최상위 소득 계층에 대해서는 아동 수당을 지원하지 않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출산률 제고 목적으로서의 아동수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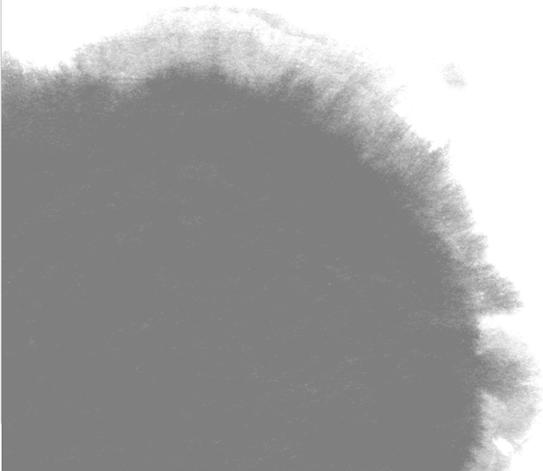
- 아동수당을 포함한 제반 가족정책은 출산률 제고를 위한 목적을 가질 필요가 있음. 이에 아동수당 정책을 통해 다자녀 가정에게 더 높은 급여액을 지원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지자체 양육지원과 아동수당간의 관계 재정립등을 통한 지방비 확보 가능성

- 각 지자체에서 지원하고 있는 다양한 양육비 지원 사업을 아동수당 정책으로 흡수하여 현재 지자체가 자체적인 양육비 지원 사업에 지출하고 있는 예산을 아동수당 정책 추진을 위한 지자체 매칭 펀드로 사용할 수 있음.
- 지자체마다 통일되지 않은 기준으로 양육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것보다 국가적으로 통일된 기준의 아동수당에 대한 재원부담을 하는 것이 양육지원에 대한 지역 간 편차를 줄이고 지역 간 양육비 지원에 있어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음.

01

서론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전통적인 가족정책은 남성가장에게 안정적인 직업과 가족을 유지하기에 충분한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대부분의 가족에게 일정 수준의 생활을 보장하였고 기혼 여성은 전업주부의 역할에 전념할 수 있었다. 그러나 베버리지보고서(Beveridge, 1958)에서도 나타나듯이 한 국가에서 제공하는 사회보장은 가족의 소득보장을 통해서만 이루어지기에는 한계가 있다. 사회보장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베버리지는 3가지 전제조건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그 조건이 바로 아동수당과 포괄적인 보건 및 재활 서비스, 지속적인 고용이다.

베버리지보고서가 제안된 1960년대에는 다양한 가족의 형태가 등장하지 않았으므로 전통적인 가족에 기초하여 사회보장체계를 제안하였다. 따라서 전통적인 가족 단위에서 남성생계부양자가 소득활동을 한다면 가족이 빈곤에 처할 위험은 거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고용 외에 아동수당을 특별히 전제조건으로 제안한 이유는 자녀의 유무와 자녀의 수에 따라 제기되는 복지욕구로 인하여 가구가 빈곤에 처할 위험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즉 자녀가 없는 무자녀 가족과 자녀가 있는 유자녀 가족 사이의 빈곤은 자녀로 인하여 소요되는 비용 때문인 것으로 간주되었다. 또한 자녀의 수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이 상당히 증가하므로 이 역시 가족을 빈곤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으로 여겨졌다.

최근 가족을 둘러싼 몇 가지 주요한 변화는 전통적인 가족정책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지만, 이 역시 아동의 양육과 관련한 중요한 함의를 제공하고 있다. 먼저 출

산의 감소와 연기, 이혼, 한부모가족, 동거와 혼외 출산의 증가 등 가족 구조와 가족 유형의 변화는 가족정책 중 상당수가 출산장려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도록 설계될 필요를 증가시켰다.

둘째, 연속적인 경기 침체, 노동시장의 이중화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가족을 증가시키는 동시에 맞벌이 가구의 증가를 야기하였다. 즉 과거에는 남성 생계부양자가 혼자 노동시장에 진입하여 받는 임금으로 충분히 가족을 부양할 수 있었으나 이제 홀벌이 가구는 빈곤의 위험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의 증가는 여성 혹은 남성이 일과 가족생활을 양립하는 것을 지원하도록 강제하였다.

마지막으로 세계화된 경제로 인한 지속적인 경쟁의 강화는 인적 자본의 수준에 따른 노동시장 지위와 소득 수준의 차이를 야기함으로써 인적자본에 대한 관심을 증가시키고 있다. 특히 성인의 탈빈곤 혹은 고용 정책의 효과가 아동기 투자의 효과보다 낮으며 비용이 많이 든다는 연구 결과(고경환 외, 2008; Cunha et al., 2005; Heckman and Lochner, 2000)들은 아동기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를 주장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Gauthier, 2002; Esping-Andersen et al., 2002).

이러한 흐름에서 가족정책은 출산을 장려하는 동시에 가족의 소득을 보장하고 미래세대에 대한 인적자본육성이라는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정책목표를 수행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특히 국제비교를 통해 살펴본 한국의 가족정책은 일반적으로 가족정책의 근간을 이루는 아동수당 혹은 가족수당이 부재하지만 일가족양립정책과 영유아를 위한 보육 및 교육정책은 적극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경환 외, 2008).

이러한 선행연구들의 결과들이 주는 함의는 2가지이다. 먼저 가족구조의 변화와 가족이 처한 새로운 위험에 직면하여 특히 유자녀 가족에 대한 소득보장이 요구되나 현재 한국의 유자녀 가족의 소득보장의 수준은 매우 낮고 제한적이어서 자녀의 존재 여부로 인한 빈곤의 위험과 소득수준에 따른 아동에 대한 투자의 차이가 생애초기부터 불평등을 야기할 수 있다(고경환 외, 2008).

둘째 지금까지 아동양육에 대한 지원은 보육시설과 유치원을 이용하는 아동을 중심으로 제공되었으나, 5세이상 아동에 관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기존의 보육지원과 더불어 2009년에는 기관 및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만 0~1세를 대

상으로 제공되는 양육수당이 도입되었다. 아동수당을 도입함에 있어서 기존의 보육 정책들과의 관계 정립이 필요하다. 예를들면, 양육수당과 보육료지원 바우처사업이 서로 배치되는 개념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이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아동수당이 발달한 북유럽 국가 모형에서는 자녀의 존재로 인하여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소득보장은 아동수당의 형태로, 자녀의 양육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보육서비스 지원과 양육수당을 중복적으로 제공하고있다 (예, 독일과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 룩셈부르크 등). 그러나 우리와는 여러 가지 여건이 다른 북구형 모형을 우리나라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철학적, 정서적, 현실적으로도 무리가 있다. 보육정책과의 중복여부에 따라 우리나라가 추구할 수 있는 아동수당모형은 다양하게 설계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은 가족정책이라는 큰 틀에서 소득보장체계의 미비가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가족에 대한 소득보장제도의 부재는 선진국에 비해 낮은 가족급여지출(GDP 대비 0.5%, 2007)과 높은 아동빈곤율(10.0%, 2005)과 낮은 출산율(1.08명, 2005) 등의 문제를 야기하는 요인으로 지적된다(아동빈곤율 및 출산율은 고경환 외, 2009a; 가족급여지출은 고경환 외, 2009b). 가족정책의 하위영역은 서로 다른 정책목표를 추구하고 있는데 한국의 가족정책은 자녀의 유무, 자녀의 수에 따라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복지수요 때문에 가족이 빈곤에 처할 위험에 대한 고려(소득보장제도)는 거의 없고, 가족내 노동시장 참가자를 증가시키기 위한 노동시장정책(일가족양립정책, 영유아를 위한 보육 및 유아교육서비스)과 조세정책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한국에서 가족정책의 주요한 목표가 가족의 빈곤을 예방하고, 출산을 통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며, 미래의 인적자본을 훌륭하게 육성하는 데 있다고 할 때 실제 가족정책은 제한적인 역할밖에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근간에는 한국의 복지정책이 아직 성숙하지 못한 단계라는 점과, 이에 따라 정책간 우선순위 설정과 자원배분의 어려움이 있다는 측면도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현실적으로 도입가능한 범위에서의 아동수당과, 복지정책의 성숙과 더불어 지향되어야 할 아동수당의 도입방안을 살펴보고 이의 자원조달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본 연구는 유자녀 가족이 자녀로 인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 때문에 빈곤으로 전락할 위험을 예방하며, 경제적·사회적 부담 때문에 출산을 꺼리는 부부들의 출산을 제고하고, 아동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공유하고 미래의 인적자원으로써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아동 양육을 위해 아동수당을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아동수당의 도입은 그 대상자와 급여수준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막대한 예산이 요구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어, 현실적인 재원조달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 아동수당의 도입에 관한 선행연구들에서는 기존제도와 중복성,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흡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해외사례의 검토를 통하여 한국에서 아동수당을 도입할 경우 소요될 예산에 대한 재원조달방식을 검토하였다. 또 선진국의 다양한 제도와 한국의 기존 아동양육관련 정책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다양한 아동수당 도입방안들을 제안하고, 각각의 방안들에 대한 재정소요액을 추계하여 학계와 정책결정자들이 근거로 제시할 수 있는 실제적이고 분석적인 데이터를 제공하였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2장에서는 아동수당의 개념과 역사와 함께 왜 아동수당이 도입되어야 하는가에 대해 논의한다. 다음으로 3장에서는 한국에서 이미 시행되거나 2010년 도입예정인 한국의 아동양육지원정책은 살펴볼 것이다. 아동양육지원정책은 아동양육과 관련한 다양한 수당과 바우처 제도, 노동정책과 조세정책을 포함한다. 즉 광의의 가족정책의 개념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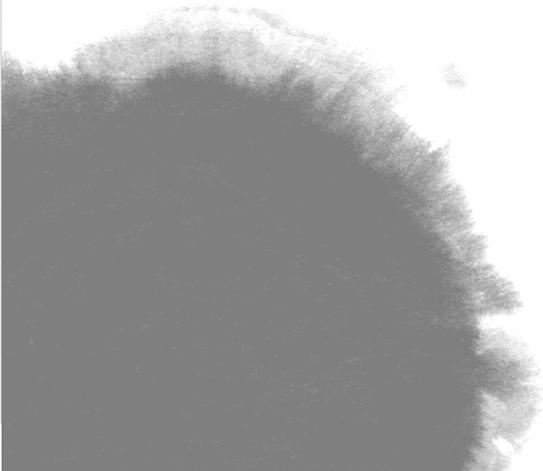
4장에서는 아동수당 재원조달의 해외사례를 통해 본 아동수당 유형별 재원조달 방식과 세입유형별 재원조달방안에 대해서 고찰한다. 정부가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담세율을 높이는 것은 매우 부담스런 일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선진국의 재원조달방안들을 검토하는 것은 한국에서 이용가능한 재원들을 검토할 수 있는 분석틀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5장과 6장에서는 이러한 분석을 통해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한국의 아동수당 도입방안을 제안하고 아동수당 도입시 제기될 쟁점들을 고려할 것이다. 이 방안들은 연령과 소득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초기에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도입되지만 장

기적으로 보편성을 지양하는 설계되었다. 기존의 이동양육지원정책 중 가장 큰 범주를 차지하고 있는 양육수당과 보육료지원사업과의 중복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02

이동수당의 필요성 및 타당성



제2장 아동수당의 필요성 및 타당성

제1 절 필요성 및 타당성

아동은 국가의 미래를 결정한 중요한 자원이므로 아동의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공유하고자 아동수당이 도입되었다. 그러나 각국이 처한 정치·경제·사회적 환경에 따라 아동수당은 사회수당(Social Allowance)의 한 형태로 제공되기도 하고¹⁾, 사회보험의 급여 형태로 제공되기도 한다²⁾.

사회적 수당의 형태를 띠는 아동수당은 일반적으로 수급자의 기여 요건이 없으며, 자산조사에도 기초하지 않아 일정한 조건만 충족되면 보편적으로 제공되는 사회보장 제도이다. 이 때 일정한 조건이란 국가별로 차이가 있는데 스웨덴과 노르웨이, 핀란드에서는 ‘거주자’로 충분한 반면, 덴마크에서는 ‘시민권자’라는 조건이 있다. 이와 함께 아동수당은 공통적으로 일정 연령 이하의 아동에게 제공되므로 연령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한편 사회보험에 포함되는 아동수당(child benefit)은 부모의 기여 혹은 고용이 전제되기도 한다(이탈리아, 일본, 그리스). 이런 경우 사회보험체계에서 배제되는 가구의 아동에게는 주로 공공부조 형태의 아동수당이 제공되기도 한다(독일, 스페인).

-
- 1) 이러한 의미에서는 아동수당을 주로 child allowance, children's allowance라고 명명하나, 아동을 양육하는 가족에게 국한하여 제공하므로 가족수당(family allowance)으로 명명하기도 함(이스라엘, 일본, 그리스). 일부 국가에서는 child allowance와 family allowance를 구분하여 동시에 제공하기도 함(오스트리아).
 - 2) 사회보험방식으로 제공되는 아동수당은 사실상 아동급여(child benefit)로 명명해야하나, 본 연구에서는 포괄적인 의미에서 아동수당에 포함시킴.

가. 개념 및 역사

아동수당은 1926년 세계 최초로 뉴질랜드에서 도입되었다(장화경, 1999; 조애지 외, 2000). 그 이후 프랑스(1932년), 영국과 캐나다(1945년), 스웨덴(1948년), 일본(1971년) 등 2008년 기준으로 전세계 88개국에서 아동수당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다. 한편 미국은 선진국 중에서 유일하게 아동수당제도를 도입하지 않았으며, 한부모가족을 위한 AFDC (Aid to Families with Dependent Children)를 대체하는 한시적 부조 TANF (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를 통하여 저소득가족의 아동을 보호하고 있다. 미국과 유사하게 아동수당을 도입하지 않은 OECD 회원국으로는 한국, 멕시코, 아이슬란드 등이 있다.

아동수당제도 도입의 필요성은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후에 발간된 영국의 베버리지 보고서(Beveridge Report)에서 구체적으로 제기되었고, 최근에는 다양한 국제협약에서도 명시되고 있다. 먼저 베버리지 보고서에서 논한 아동수당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다. 베버리지는 소득보장을 통해서만 사회보장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위해서 3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고 하였다(Beveridge, 1958; 변재관 외, 1998). 그 조건에는 아동수당(children's allowances), 포괄적 보건 및 재활서비스(comprehensive health and rehabilitation services)와 고용의 유지(maintenance of employment)가 있다. 여기서 베버리지는 아동수당을 15세 이전(전일제 학생일 경우 16세 이전)의 아동에게 제공하는 수당으로 보고 있다.

베버리지 보고서에 따르면 아동수당이 필요한 이유는 두 가지이다(변재관 외, 1998). 첫째, 모든 가족의 최저생계수준을 임금만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아동수당이 필요하다. 둘째, 사회보장급여가 임금보다 크면 빈곤함정이 발생하기 때문에 실업급여나 장애급여와 같은 사회보장액수는 많으면 안된다. 단, 대가족의 경우 아동수당을 통해서 임금이 없을 때의 생활고를 해결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음으로 국제노동기구(ILO)의 사회보장협약(Convention on Social Security)과 사회정책협약(Convention on Social Policy) 등에서 명시한 아동수당의 도입의 필요성을 살펴볼 수 있다. 국제노동기구의 사회보장협약(1952)에서는 가족급여(family benefit)라는 명칭으로 근로자의 아동에 대한 지원을 회원국에 권고하고 있다. 이 때

급여의 지급수준은 아동 1인당 임금의 3퍼센트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일찍부터 아동수당 또는 가족수당의 필요성을 인식하고서 임금으로서 충분히 지원하지 못하는 부분은 국가 또는 사회에서 보장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것이다.

오랜 전통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협약에서도 권고되고 있는 아동수당 제도의 국가별 규모는 <표 2-1>에 제시하고 있다.

<표 2-1> OECD 국가의 아동수당 규모

(단위: 원, %)

국가	아동수당 ¹⁾	가처분소득 대비	총소득대비
오스트리아	435,789	12.4	13.1
호주	481,813	16.1	13.4
벨기에	319,680	10.6	8.2
캐나다	196,197	7.9	7.0
체코	95,197	12.3	12.1
덴마크	311,145	18.5	6.6
핀란드	269,440	10.1	7.7
프랑스	140,693	5.3	4.4
독일	394,240	11.6	9.0
아일랜드	356,053	10.3	10.5
이태리	142,827	6.8	5.9
일본	81,300	2.9	2.4
룩셈부르크	589,760	13.7	13.7
멕시코	0	0.0	0.0
네덜란드	183,040	5.8	4.5
뉴질랜드	147,043	7.0	6.0
노르웨이	309,965	7.7	6.1
폴란드	71,040	5.5	5.0
슬로바니아	35,721	6.2	6.0
스페인	0	0.0	0.0
스웨덴	261,857	9.6	7.4
스위스	361,015	8.1	7.3
영국	229,779	6.4	5.2
미국	0	0.0	0.0
OECD 평균 ²⁾	257,790	9.3	7.7

주: 1) 아동 2인을 기준으로 아동수당 규모를 작성함.

2) 아동수당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미국, 스페인, 멕시코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OECD(2006), Taxing Wages: 김수정(2006)에서 재인용.

나. 아동수당의 필요성

아동수당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이유 혹은 아동수당에의 접근에 대한 관점은 크게 세 가지 측면으로(이선주 외, 2006; 이재완 외, 2006; 장화경, 1999) 살펴볼 수 있다. 즉 아동권 보장과 아동이 있는 가족의 빈곤예방, 미래의 노동력 확보가 그것이다.

1) 아동의 권리보장

유엔의 아동권리협약 제 6조에는 아동에 대한 생존권이 명시되어 있다. 즉 1항은 “당사국은 모든 아동이 고유의 생명권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한다”이고, 2항은 “당사국은 가능한 최대한도로 아동의 생존과 발달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밝힌다. 즉 아동의 고유한 생명권을 보장하고 아동이 어떠한 상황에도 관계없이 발달할 수 있도록 그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아동수당은 가족의 경제적 상황과 관계없이 아동이 생존하고 발달하는 것을 지원하는 최소한의 권리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2) 가족의 빈곤예방

일반적으로 자녀의 존재는 그 자체만으로도 상당한 지출의 요소가 된다. 따라서 빈곤선을 벗어난 가구라고 할지라도 아동의 양육에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면서 빈곤선 아래로 떨어질 수 있다. 특히 전통적인 홑벌이 가구의 경우 자녀의 수는 가구의 빈곤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논리에 근거하여 아동수당의 도입은 자녀의 존재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을 보조함으로써 가족의 빈곤을 예방한다고 볼 수 있다.

공적이전과 세제혜택은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족의 빈곤율을 감소시키기 위한 유용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OECD 16개국의 정책효과를 살펴보면, 평균적으로 공적이전과 조세제도를 이용하여 빈곤선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는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족의 빈곤율을 40% 가까이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OECD, 2005).

3) 저출산시대의 미래성장동력 양성

출산이 인구의 양적인 측면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양육은 인구의 질적인 측면을 의미하는 것이다(장화경, 1999). 일반적으로 저출산의 우려 속에서 가장 먼저 제기 되는 정책적 제안들은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이다. 그러나 출산장려정책은 양적인 증가를 유도하는 데 효과가 있을 수는 있지만 미래의 성장동력으로서 인적자원의 육성이라는 질적인 측면에서는 한계를 가진다. 오히려 이미 출산된 아동에 대해서 인적자본을 최대한으로 육성하는 정책들이 제안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제안되는 정책이 바로 아동수당이다.

경제학에서 효율성을 중심으로 생애주기별 투자우선순위를 파악하기 생애주기별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의 회수율을 추정한 Cunha et al.(2005)에 따르면 각 생애주기에 동일한 양의 투자를 가정했을 때 투자 회수율은 취학전 아동이 가장 높고 그 영향이 장기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의 페리 프로그램의 패널 자료 역시 이를 지지하는데, 취학전 페리 프로그램을 경험한 성인은 그렇지 않은 성인보다 고용율이 18% 더 높고 월소득은 \$453나 더 높으며, 복지비용은 17%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OECD, 2005b).

그러나 일각에서는 아동수당이 도입될 경우 공보육 확대가 저하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서는 공적보육시설의 확충과 아동수당은 대체재적인 성격을 가진 정책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성격을 갖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하나의 정책이 다른 정책보다 우선순위에 있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이다. 즉 아동수당은 아동에 대한 추가적 투자를 통해 아동의 인적자본을 향상시킴으로써 미래 한국의 사회적 자본을 증대시키는 것이고, 공적보육은 아동들에게는 동일한 출발의 기회를, 부모에게는 노동권을 보장해주는 정책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윤홍식, 2006).

다. 아동수당의 타당성

아동의 생존권을 보장하면서 발달을 도모하고, 아동이 있는 가구의 빈곤을 예방하는 목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옵션 중에서 왜 아동수당을 도입해야 하

는 가에 대한 질문이 바로 아동수당의 타당성과 연관된다. 최근의 논란은 아동수당 제도의 도입 목적이 유아녀 가족의 빈곤 예방인가, 출산율 제고인가하는 것이다. 최근의 논의들은 주로 출산율 제고 측면에서만 언급되고 있다. 즉, 아동수당의 도입이 출산율과 출산결정에 미치는 효과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이다.

그러나 출산율은 복합적인 사회적, 경제적, 심리적 요인에 따라 변동하는 것이므로 아동수당 자체가 즉각적으로 미시수준의 출산결정을 바꾸어 출산율 제고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기대는 너무 낙관적이라 할 수 있다(김수정, 2006). 실제로 프랑스에서 아동수당을 포함하는 가족정책의 확대가 여성 1인당 출산율을 0.2명 정도 상승시킨다는 연구결과가 나타났다. Laroque and Salanie(2003)은 아동수당과 출산보조금 등 수당정책이 출산율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2005년의 연구에서 사회인구학적 변수들을 상당히 포함한 연구에서는 프랑스의 가족정책이 출산율에 상당한 크기의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프랑스에서 아동수당을 포함하는 가족정책의 확대가 여성 1인당 출산율을 0.2명 정도 상승시킨다는 연구결과가 나타났다. Laroque and Salanie(2003)은 아동수당과 출산보조금 등 수당정책이 출산율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2005년의 연구에서 사회인구학적 변수들을 상당히 포함한 연구에서는 프랑스의 가족정책이 출산율에 상당한 크기의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유사하게 정부의 가족정책은 출산율을 높이는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효과의 크기는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Gauthier, 2007). 즉 아동수당을 포함하는 가족정책이 출산율에 직접적인 강력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나 일반적으로 다른 정책들과의 관계에서 부가적으로 출산율을 제고하는 데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유사하게 정부의 가족정책은 출산율을 높이는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효과의 크기는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Gauthier, 2007). 즉 아동수당을 포함하는 가족정책이 출산율에 직접적인 강력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나 일반적으로 다른 정책들과의 관계에서 부가적으로 출산율을 제고하는 데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아동수당의 도입 목적을 출산율 제고에 둘 경우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 만큼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급여액을 제공해야 되므로 이는 다시 예산확보문제와 결합되어 오히려 아동수당제도의 도입을 어렵게 하

는 요소가 될 수 있다.

아동수당은 오히려 근로소득이 부족한 가족의 빈곤을 예방하는 데 매우 유용하게 사용되는 급여다(김미숙 외, 2007). 보편적 급여로서 아동수당은 동일 계층 내에서, 그리고 전 계층에서 아동이 있는 가구의 상대적인 경제적 불리함을 줄이는 데 효과가 있다. 그러나 아동수당을 통해 빈곤을 경감시키기 위해서는 아동수당 도입 초기 단계에서 막대한 비용이 투입되어야 한다. 제한된 예산에서 아동수당을 도입하고자 한다면 보편적 급여형식을 택하되 연령을 제한 혹은 단계별로 도입하거나, 고소득층을 제외하는 등 자산평가의 문제점을 최소화하면서 보편주의의 대의를 살리는 방식으로의 절충이 가능하다(김수정, 2006).

대부분의 국가에서 아동수당은 아동의 복지향상 및 자녀양육책임에 따른 경제적 격차를 감소시키기 위한 소득분배의 차원에서 아동수당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그 형태는 각국의 정책 목표와 운영방식(보편주의 vs 선별주의), 재원에 따라 다소 혹은 상당히 차이가 있다. 때로 국가의 제도나 정책은 시대적 상황에 따라 그 목적이 변화될 수도 있다. 아동수당제도 역시 각국의 정치·경제·사회적인 환경에 따라 그 목적이 변화하기도 한다³⁾. 따라, 쥘도의 한 가지 측면만을 고려하거나 수행하기 보다는 다각적인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3) 프랑스에서 도입 초기 아동수당의 목적은 아동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공유하고, 아동이 가족이 처한 경제적 상황에 상관없이 발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었으나 저출산 문제가 심각했던 1980년대에는 출산장려정책수단으로 아동수당의 확대가 제한됨.

제2절 아동수당의 효과에 관한 선행연구

본 절에서는 아동수당의 효과에 관한 선행연구를 고찰 할 것이다. 아동수당은 가족정책의 여러 제도들과 다양한 관계를 가지면서 제공되기 때문에 선행연구들은 일반적으로 가족정책패키지를 중심으로 실증분석이 이루어졌다. 즉 아동수당의 효과성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가족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분석을 살펴볼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갖고 있다. 이 때 가족정책은 일반적으로 공적 이전과 조세감면, 일가족양립제도, 영유아보육 및 교육(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ECEC)서비스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가족정책의 범위는 다시 가족정책의 목표와도 연관된다. 즉 협의의 가족정책이 특히 유자녀 가족의 소득보장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광의의 가족정책은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한 인구정책과 연계하거나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하는 노동시장정책과 연계하여 부가적인 정책 목표를 달성하도록 고안되고 있다.

OECD 16개국의 공적이전과 세제혜택을 통한 유자녀 가족의 빈곤율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본 결과 평균적으로 공적이전과 조세제도를 이용하여 빈곤선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는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족의 빈곤율을 40% 가까이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OECD, 2005). 이 때 공적이전과 세제혜택은 일반적으로 아동수당과 자녀세액공제(CTC),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근로가족세액공제제도(미국의 EITC와 영국의 WTC 등)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저소득층 가족에게 이러한 공적이전과 조세혜택을 통한 효과는 제한적으로 나타나는데, 자녀 양육시 소요되는 보육료 지불이 또 다른 가계경제의 부담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보육서비스에 대한 부모 부담은 약 3/4를 차지하고 있는데, 특히 저소득층의 경우 전체 가구소득의 25%를 보육료에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OECD, 2005a). 프랑스에서는 2세 기준 공식보육비가 평균생산직근로자의 임금의 약 3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Immervoll and Barber, 2005).

아동수당 등 가족정책의 현금이전이 노동공급(특히 여성)에 미치는 영향은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Piketty, 1998; Allain and Sedillot, 1999; Laroque and Salanie, 2005). 그러나 이들 연구는 프랑스의 APE (Allocation

Parentale d'éducation, 부모양육수당)의 노동공급효과를 분석한 것으로, 2년에서 5년 간 육아휴직중인 가구에게 지급되는 양육수당의 노동공급효과를 나타낸다는 측면에서 아동수당의 노동공급효과와는 상이한 측면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육아휴직중인 가구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노동공급 감소유인이 명백히 내재되어 있다는 점에서 보편적인 의미의 아동수당과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다. 한편, 영유아에 대한 공보육 및 보육서비스 보조금사업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상당히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Gelbach, 2002; Chevalier and Viitanen, 2002; Hoem, 2005). 또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여성의 취업률이 증가할 경우 아동의 빈곤율을 감소시키는 데도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적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여성의 취업률을 12% 가까이 증가시켰을 경우, 평균적으로 아동빈곤율은 10%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OECD, 2005a).

〈표 2-2〉 가족정책의 노동공급 효과에 관한 선행연구

구분	연구자(년도)	주요 내용
수당제도	Piketty(1998), Allain and Sedillot(1999)	- 1994년 프랑스의 APE(Allocation Parentale d'éducation, 부모양육수당) 확대로 여성 근로자 10만 명~15만명이 노동시장에서 탈출시킨 효과가 발생
	Laroque and Salanie(2005)	- 1994년 프랑스의 APE(Allocation Parentale d'éducation, 부모양육수당) 확대 적용으로 출생이수가 3.7% 증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0.3% 감소
보육서비스	Gelbach(2002)	- 미국의 여성한부모가정에 대해 무료 공립유치원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한부모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상당히 증가
	Chevalier and Viitanen(2002)	- 영국에서 공식적인 보육서비스의 제공으로 여성의 노동공급이 증가함을 확인
노동정책	Ruhm(1998)	- OECD국가를 대상으로 유급 양육휴가가 취업률을 높인다는 사실을 발견
	OECD(2002)	- 휴가기간이 긴 경우 여성의 노동숙련도를 낮추어 노동시장 복귀 시 임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Hoem(2005)	- 스웨덴의 출산율과 산후 직장복귀율이 높은 주된 이유는 탄력적인 파트타임 (탄력근무제)와 공적인 보육서비스 제공 때문임

아동수당을 포함하는 가족정책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은 다소 복잡한 양상을 띤다. 일반적으로 가족정책전체를 분석대상으로 삼을 경우 출산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Ekert-Jaffe, 19986; Blancet and Ekert, 1994; Gauthier and Hatzius,

1997; Laroque and Salanie, 2005), 그 영향은 그리 크지 않고(Laroque and Salanie, 2003; Gauthier, 2007; Lundberg and Pollak, 2007), 오히려 혼합된 결과를 나타낸다(Sleeboos, 2003; Grant et al, 2004).

그러나 아동수당과 조세감면 등 금전적인 인센티브를 변수로 하여 출산율 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아동수당과 출산율의 직접적인 관계가 미비함을 나타낸다. Laroque and Salanie(2003)의 연구에서 아동수당만을 설명변수로 포함시켰을 경우 출산율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2005년의 연구에서 아동수당 외에 다른 가족정책을 설명변수로 포함시킨 결과 출생아 수는 3.7%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계열 자료를 이용해서 장기적으로 영향을 살펴보면 가족정책이 출산율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족정책이 출산율 제고라는 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가족정책이 포괄적으로 제공되어야 하고, 일관되게 정책이 집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Kohler, Billari, and Ortega, 2006).

〈표 2-3〉 가족정책이 출산율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선행연구

구분	연구자(년도)	주요 내용
가족정책 전체	Ekert-Jaffe(1986), Blanchet and Ekert(1994), Gauthier and Hatzius(1997)	- 프랑스의 가족정책은 여성 1인당 출산율을 약 0.2명 정도 상승시킴 - 그러나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특징들(사회적·인구구조적 특징)을 설명하는 변수가 적어 추정결과에 대한 신뢰성이 낮음
	Gauthier(2007)	- 정부정책은 출산율을 높이는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그 효과의 크기는 그다지 크지 않음
	Sleeboos(2003), Grant et al(2004)	- 가족정책이 출산에 미치는 효과는 혼합된(mixed) 결론을 가짐
	Bjorkund(2002)	- 1960-1980년대 동안 노르웨이의 출산율이 0.5명, 핀란드 0.4명 감소한 반면 가족정책을 확대한 스웨덴의 경우 출산율이 감소하지 않음
	Kohler, Billari, and Ortega(2006)	- 출산장려정책이 장시간에 걸쳐서 효과가 나타난다면, 정책의 집행이 일관되고 신뢰성이 높을수록 정책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음
수당제도	Laroque and Salanie(2003)	- 금전적 유인이 출산율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가족정책 외 다른 설명변수 포함)
	Laroque and Salanie(2005)	- 프랑스의 APE(Allocation Parentale d'éducation, 부모 양육수당) 확대 적용(1994)으로 출생아수는 3.7% 증가
	Lundberg and Pollak(2007)	- 금전적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결혼 및 자녀양육을 장려하는 정책적 시도가 출산율을 높이는 데 큰 효과를 가지지 못한다고 결론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아동수당만으로는 저소득층의 자녀 양육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효과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아동수당의 제공이 자녀양육시 소요되는 지출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다(Lundberg, Pollak, and Wales, 1997; Immervoll and Barber, 2005). 영국의 아동수당을 분석한 연구에서는 아동수당이 가족의 경제적 자원 중 자녀에 대한 지출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캐나다 퀘벡주에서는 진보적인 가족정책의 도입으로 보육시설 이용률이 다른 주에 비해 14.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0-4세의 자녀를 둔 여성의 노동시장공급은 다른 주보다 7.7% 포인트 증가하고 보육비용에 대한 지원 역시 1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Baker, Gruber, and Illigan, 2005).

〈표 2-4〉 가족정책이 아동양육지출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선행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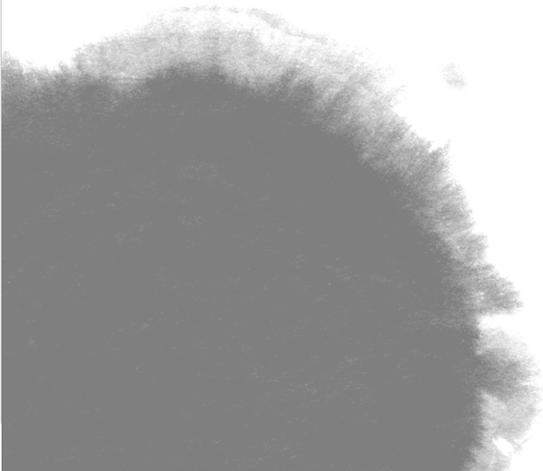
구분	연구자(년도)	주요 내용
가족정책 전체	Baker, Gruber, and Illigan(2005)	- 새로운 정책의 도입 이후 퀘벡주의 보육시설 이용률이 다른 주에 비해 14.7%포인트 정도 뚜렷하게 증가 - 0-4세의 자녀를 둔 퀘벡주 여성의 노동시장공급은 다른 주보다 7.7% 포인트 증가하여 보육비용에 대한 지원율은 10% 증가
수당제도	Lundberg, Pollak, and Wales(1997)	- 어머니를 통제하면, 영국의 아동수당은 가족의 경제적 자원 중 자녀에 대한 지출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음
	Immervoll and Barber(2005)	- 2001년 기준 2세 자녀 기준 프랑스의 공식보육비는 최대 APW(Average Production Workers' Wage, 평균생산직근로자임금)의 약 34%를 차지하여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높음 - 부모소득이 APW 100%인 2자녀가족의 육아비용은 APW의 약 28%로 가계순소득의 18%를 차지
노동정책	Blau(2000), Anderson and Levine(2000)	- 보육비용에 대한 여성의 노동공급탄력성은 최대 0.4를 넘지 않는 비교적 낮은 수준의 탄력성을 갖는다고 추정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동수당을 포함하는 가족정책은 여성의 노동시장공급과 출산율, 아동빈곤율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효과는 다소 복합적으로 나타난다. 이는 가족정책의 하위영역들이 서로 다른 정책목표를 가지고 있어 어느 한 제도의 양적 효과가 다른 제도로 인해 상쇄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아동수당과 가족수당 등 소득보장제도는 여성의 노동시장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으나 어린 자녀를 위한 공보육서비스나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과 같은 하위

영역들은 여성의 노동시장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반면에 수당제도는 아동의 빈곤율에 영향을 주고 자녀 양육으로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지출을 증가시키는 영향을 준다. 저소득층가구에서 이러한 비용은 특히 매우 큰 부담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03

한국의 이동양육지원정책



제3장 한국의 아동양육지원정책

우리나라의 아동양육관련 지원정책으로는 보육지원정책, 교육비지원정책, 노동정책 및 세제지원등이 있다. 중앙정부의 정책이외에도 각 지자체별로 다양한 아동양육 관련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양육지원정책을 형태별로 구분하여 보면, 수당등 현금 지원 정책과 현물 및 바우처 지원, 노동정책, 세제지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향후 아동수당이 도입되면, 기존의 아동양육지원정책과의 유사중복성이 없도록 제도가 설계되어야 하므로, 기존 지원정책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현행 우리나라의 아동양육관련 수당정책과 보육료지원 바우처 정책, 노동정책 및 세제지원의 형태로 아동양육지원정책의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제1절 수당정책

중앙 정부에서 양육 지원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인 정책은 복지부문에 서 찾을 수 있다. 특히 가족의 욕구에 따라 제공하는 수당제도는 가족의 구조와 형태, 거주 지역에 따라 제공되므로 복지 욕구를 충족시킨다는 측면에서 유용하다. 이러한 예로는 양육수당, 장애아동수당,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수당, 입양 자녀 양육수당, 입양 장애 아동 양육 보조 수당 등이 있다.

먼저 양육 수당은 그동안 영유아에 대한 양육 지원이 보육 시설 이용 아동에 한정됨에 따라 가정에서 양육되는 아동에 대한 정부 지원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하여 2009년 7월부터 도입되었다.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저소득층 영유아에게 월 10만원의 양육 수당을 지원하되 예산 상황을 고려하여 만 0~1세 영유아에게 우선 지

원하고 있다. 양육 수당 대상 가구는 최저 생계비 120%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로서 4인 가구 기준으로 볼 때 월 소득인정액 159만원 이하의 가정이 이에 해당된다.

한부모가정 자녀 양육수당은 한부모가구들의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동 가구들의 안정적인 생활영유와 복지증진을 위한 제도라 할 수 있다⁴⁾. 급여수준은 한부모가족의 만 8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서 월 5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입양 자녀 양육수당·입양 장애 아동 양육 보조 수당은 양자로 되는 아동의 보호와 보호가정의 복지증진을 위해 입양가구에 대해 마련된 지원제도라 할 수 있다. 입양 자녀 양육수당(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 23조(양육보조금등의 지급))은 아동을 입양한 양부모에게 입양아동이 만 13세 미만까지 월 13만원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입양 장애 아동수당(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 23조)은 ①장애인에 해당하는 아동, ②분만시 조산·체중미달·분만장애·유전 등으로 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 ③입양당시 장애 또는 의료적 문제가 없었으나 선천적 요인으로 인해 장애 또는 질환이 발생한 아동을 입양한 양부모에게 만 18세까지 월 551천원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장애아동수당은 기초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대상자로서 18세 미만 재가 장애아동의 부모에게 지급되는 수당이다. 관련 법률로는 장애인복지법 제50조 내지 제51조를 근거로 하고 있다. 장애아동수당은 2005년 장애인실태조사를 통해 장애아동의 경우 다른 아동들에 비해 장애로 인해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고 있음이 확인되었으며, 동 제도 도입시 기초조사자료를 근거로 하여 장애아동지원에 대한 현실화를 위해 금액을 상향조정하여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2009년기준) ①기초수급 중증장애인은 1인당 월 20만원, ②기초수급 경증장애인은 1인당 월 10만원, ③차상위 중증장애인은 1인당 월 15만원, ④차상위 경증장애인은 1인당 월 1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4) 한부모가족의 양육수당지원을 위한 관련법률로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복지 급여의 내용)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 제12조(복지급여의 내용)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1조에 따른 복지급여의 신청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복지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이 법에 따른 보호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1.생계비 2.아동 교육지원비 3.직업훈련비 및 훈련기간 중 생계비 4.아동양육비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표 3-1〉 중앙정부의 아동양육관련 수당정책

구분	제도명	대상	급여액
수당제도	양육수당	- 연령: 0~1세 - 소득기준: 기초수급 및 차상위 - 보육시설을 다니지 않는 아동	- 월 10만원
	장애아동수당	-연령: 18세 미만 -소득:기초수급 및 차상위 재가 장애 아동	- 기초수급 중증장애인: 월 20만원 - 기초수급 경증장애인: 월 10만원 - 차상위 중증장애인: 월 15만원 - 차상위 경증장애인: 월 10만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사업 ¹⁾	- 취약계층 농림어업 및 입업인 - 만0~만5세 (만6세 취약유예경우)	- 시설미이용아동: 법정저소득지원단가의 35% 지원
	한부모가정 자녀 양육수당	- 만 8세 미만 자녀를 가진 한부모가정	- 월 5만원
	입양자녀양육수당	- 아동을 입양한 양부모 - 입양 아동 만 13세까지	- 월13만원
	입양장애아동 양육보조수당	- 장애아를 입양한 양부모 - 입양장애아동 만 18세까지	- 월 551천원

주: 1) 농업인 영유아양육비 지원사업 중 시설미이용아동에 대한 지원은 수당을 통해서, 시설이용아동에 대한 지원은 바우처 사업을 통해서 제공되고 있어 각각의 표에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음.

자료: 신윤정 외 (2009), 양육수당도입방안 연구; 보건복지가족부, 2009년도 보육료지원사업, 2009년도 보건복지가족부 소관 예산·기금 운용안, 2010년도 보건복지가족부 소관 예산·기금운용 계획안 개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인 예산을 활용하여 양육비를 지원하고 있는 대표적인 정책으로는 양육수당 정책과 출산 축하금 지원 정책을 들 수 있다. 지자체의 양육수당 정책과 출산 축하금 지원 정책은 영유아의 건전한 양육이라는 기본적인 목적 이외에 좀 더 실질적인 차원에서 각 지자체의 출산율 증가 및 인구 유입을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정책들은 대부분 세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정을 중심으로 지원되고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지자체 양육수당과 출산 축하금 지원 정책은 유사한 정책명 하에서 각 지자체 마다 다양한 유형으로 추진하고 있다. 예를 들면 지원 액수, 지원 기간, 자녀 출생 순위 등에 차이가 있으며, 보육 시설 이용하지 않은 영유아에게만 지원하거나 혹은 보육 시설 이용과 관계없이 지원하고 있는 지자체도 있다.

16개 광역지자체의 양육수당 지원을 살펴보면 수당제도가 없는 지자체가 6곳이고, 보육시설미이용시 월 5만원(대전)에서 월 20만원(대구)까지 매우 편차가 크게 나타난다. 특히 경기도는 첫째, 둘째, 셋째 각각에 대해서 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월 7만원에서 17.5만원까지 0-5세까지 제공한다는 점에서 가장 포괄적인 지원을 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출산율이 저조한 반면 거주자의 연령이 매우 고령화된 지자체인 강원도와 제주도의 경우 양육수당 지원제도조차 없어 출산을 장려하는 수단이 가장 필요한 지자체가 오히려 출산장려정책을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3-2〉 광역지자체의 양육수당 지원 현황(2008년 8월 기준)

지자체	출생순위	보육시설미이용	보육시설이용	기간
서울	셋째	월 10만원	보육료의 50% 지원	만0세~만5세
부산	없음			
대구	셋째	월 20만원	월 20만원	11개월
대전	셋째	월 5만원	월 20만원	12개월 (보육시설미이용) 36개월 (보육시설이용)
인천	셋째		연령별 정부지원 단가의 75% 지원	만0~만4세
울산	셋째		월 최대 10만원	입소~퇴소
광주	셋째	월 10만원	월 10만원	12개월
경기	첫째		월 7만원	만0~만5세
	둘째		월 17.5만원	
	셋째		월 17.5만원	
강원	없음			
충북	둘째		월 10만원	12개월
	셋째		월 15만원	
충남	없음			
전북	셋째		월 10만원	입소~퇴소
전남	없음			
경북	없음			
경남	없음			
제주	없음			

자료: 신윤정 외 (2009), 양육수당도입방안 연구, 보건복지가족부(2008) 내부자료에서 재구성.

중소도시의 양육수당 지원은 일반적으로 보육시설이용여부와 관계없이 정액급여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용인시와 춘천시, 김제시 제외). 중소도시에서도 양육수당지원금액은 매우 큰 편차를 나타내는데, 안산시가 셋째에게 월 3만원을 주는 데 반해 전북 남원시는 셋째 5년간 월 30만원을 제공하고 있어 가장 높은 수당을 가장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중소도시는 월 10만원(11개 도시)에서 월 20만원(6개 도시)선으로 거의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3〉 중소도시 양육수당 지원 현황(2008년 8월 기준)

지자체	출생순위	보육시설미이용	보육시설이용	기간	
경기	성남시	셋째	월 12만원	36개월	
	안산시	셋째	월 3만원	만5세	
	광주시	셋째	월 20.9만원	12개월	
	양주시	셋째	월 5만원	24개월	
	안성시	셋째	월 10만원	12개월	
	김포시	셋째	월 10만원	13개월~만6세	
	용인시	셋째		월 23만원(만2세미만) 월 18만원(만2세) 월 12만원(만3세이상)	
	안양시	셋째		월 31.7만원	입소~퇴소
	군포시	셋째		월 5만원	입소~퇴소
	하남시	셋째		월 9.8만원	
	의왕시	셋째		월 5만원	
	과천시	셋째		월 11만원	
	화성시	셋째		최고 월 10만원	
강원	춘천시	셋째		부모부담 실보육료 50%	
	태백시	셋째	월 20만원	12개월	
충남	계룡시	셋째	월 15만원	입소~퇴소	
	정읍시	셋째	월 13만원	취학전까지	
전북	남원시	셋째	월 30만원	5년간	
	김제시	첫째	월 5만원 (공무원자녀)	취학전까지	
전남	목포시	둘째	월 6만원	만3세까지	
		셋째	월 15만원		
경북	포항시	셋째	월 10만원	12개월	
	경주시	둘째	월 10만원	12개월	
		셋째	월 20만원	12개월	
		넷째	월 20만원	5년	
	안동시	첫째	월 6만원	24개월	
		둘째	월 10만원		
		셋째	월 20만원		
	구미시	셋째	월 10만원	12개월	
	영주시	셋째	월 10만원	36개월	
	영천시	첫째	월 8만원	12개월	
		둘째	월 10만원		
		셋째	월 10.6만원		
	상주시	첫째	월 10만원	12개월	
둘째		월 15만원			
셋째		월 20만원			
경산시	셋째	월 20만원	11개월		
경남	김해시	셋째	월 10만원	만5세까지	

자료: 신윤정 외 (2009), 양육수당도입방안 연구, 보건복지가족부(2008) 내부자료에서 재구성.

한편 출산축하금은 7개 대도시에서만 운영되고 있는데 특히 서울에서는 기초지자체별 축하금의 편차가 매우 크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 즉 서초구와 강남구, 종로구, 중랑구에서 둘째 50만원, 셋째 100만원을 지급하고 있어 다른 기초자치단체에 비해 매우 파격적인 금액을 제공하고 있다.

〈표 3-4〉 대도시 출산 축하금 지원 현황 (2008년 8월 기준)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구분	지원현황	구분	첫째	둘째	셋째
서울	없음	종로구		50만원	100만원
		중구		20만원	100만원
		용산구	5만원	5만원	5만원
		성동구		20만원	50만원
		광진구		10만원	30만원
		동대문구		30만원	50만원
		중랑구		50만원	100만원
		성북구		20만원	20만원
		강북구	20만원	30만원	50만원
		도봉구		5만원	20만원
		노원구		5만원	20만원
		서대문구	2만원	12만원	12만원
		양천구		10만원	30만원
		강서구			20만원
		금천구		20만원	50만원
		영등포구			50만원
		관악구		10만원	50만원
		서초구	10만원	50만원	100만원
강남구		50만원	100만원		
부산	셋째 50만원	중구		60만원	300만원
		동구			20만원
		사상구		30만원(쌍둥이)	50만원(세쌍둥이)
대구	셋째 50만원	중구			100만원
인천	없음	중구			100만원
		서구			100만원
광주	셋째 50만원	동구	5만원	5만원	50만원
		서구			5만원
대전	셋째 10만원				
울산	셋째 30만원	중구			10만원
		남구			20만원
		동구			10만원
		북구		10만원	20만원

자료: 신윤정 외 (2009), 양육수당도입방안 연구, 보건복지가족부(2008) 내부자료에서 재구성.

제2절 보육지원정책: 바우처 제도

아동양육을 지원하는 보육지원정책은 바우처의 형태로 제공된다. 먼저 보건복지가족부는 보육시설에 다니는 만 0-5세 아동의 보육료를 가구소득에 따라 차등지원하고 만 5세아는 무상보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지원사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차등보육료 지원, 두자녀이상보육료 지원, 장애아무상보육료 지원, 만 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 등이 있다. 또한 시간연장형 보육료지원사업에는 휴일에 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시간연장형을 이용할 경우의 지원과 만 6세부터 만 12세까지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방과후보육도 포함된다.

이와 동일한 사업을 교육과학기술부에서도 운영하고 있다. 즉 유치원에 다니는 만 3-4세 아동의 유아교육비를 가구소득에 따라 차등지원하고 만 5세아는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유아교육비지원사업은 만 3-5세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복지부 사업과 차이가 있다. 즉 차등교육비 지원, 두자녀이상교육비 지원, 장애아무상교육비 지원, 만 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사업만 포함된다.

다음으로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은 농어업인의 영농활동에 도움을 주고 양육으로 인한 부담을 줄이고자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등에 대한 특별법을 통해 지원되는 제도라 할 수 있다. 농업인 양육비 지원사업의 근거법령은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17조(농림어업인의 영유아 보육비 지원), 18조(농산어촌 여성의 복지증진), 22조(농산어촌 유치원 유아 교육·보호)에 두고 있다. 이외에도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11조(여성농어업인의 모성보호·보육여건 개선·삶의 질 향상)에서도 근거를 두고 있다. 동제도의 경우 도시지역에 비해 시장개방으로 농가소득이 떨어질 것으로 보이는 농어업 종사자들이 영농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농어민의 소득보전을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지원대상은 농림어업 및 임업인으로 ①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으며, ②농지소유 면적 합계가 5ha 미만 등의 농어가 중 만5세 이하 및 취학을 유예한 만 6세아를 둔 경우, ③대상아동의 부모 중 1인 이상이 농업의 전업적 직업 없이 농어업활동에 실제 종사하는 경우로 하고 있다.

지원금액은 시설이용아동의 경우 보육시설 보육료 및 유치원의 교육비 일부(법정저소득지원단가의 70%)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시설미이용아동에게는 가정육아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수준은 법정저소득지원단가의 35%수준을 지원하고 있다.

〈표 3-5〉 아동양육관련 바우처제도

구분	제도명	대상	급여액
보육료 지원 바우처 사업	차등보육료지원	- 소득하위 70%: 기준단가와 기본보육료 지원 - 소득 70% 초과: 기본보육료만 지원 - 소득 하위 50%: 전액지원	- 소득수준, 연령, 정부인건비 지원 여부에 따라 차등 - 월 52천원~733천원
	두자녀이상 보육료지원	- 소득하위 70%이하, 보육시설 이용 둘째 이상 아동 모두 지원	- 전액지원(186-84천원, 연령별)
	장애이무상 보육료지원	- 만 12세 이하 장애아 (종일보육, 방과후 지원)	- 월 372천원 또는 수납한도액
	만5세이무상 보육료지원	- 소득하위 70%까지	- 월 167천원
	맞벌이가구 보육료지원	- 부부 중 낮은 소득의 25% 차감시 소득분위 이동 가구	- 2010년 도입 예정
	시간연장형 보육료지원	- 도시근로자 가구소득 100%까지	- 시간당 2300원 ~ 정부지원단가의 150%까지
유아 교육비 지원 바우처 사업	차등교육비지원	- 소득하위 70%: 기준단가와 기본교육비 지원 - 소득 70% 초과: 기본교육비만 지원 - 소득 하위 50%: 전액지원	- 소득수준, 연령, 정부인건비 지원 여부에 따라 차등 - 월 52천원~733천원
	두자녀이상 교육비지원	- 소득하위 70%이하, 유치원 이용 둘째 이상 아동 모두 지원	- 전액지원(186-84천원, 연령별)
	장애이무상 교육비지원	- 만 5세 이하 장애아 (종일보육, 방과후 지원)	- 월 372천원 또는 수납한도액
	만5세이무상 교육비지원	- 소득하위 70%까지	- 월 167천원
농업인 자녀 양육 바우처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사업	- 취약계층 농림어업 및 입업인 - 만0~만5세 (만6세 취약유예경우)	- 시설이용아동: 보육료 및 유치원 교육비 법정 저소득지원 단가의 70% 지원

자료: 신윤정 외 (2009), 양육수당도입방안 연구; 보건복지가족부, 2009년도 보육료지원사업, 2009년도 보건복지가족부 소관 예산·기금 운용안; 2010년도 보건복지가족부 소관 예산·기금운용 계획안 개요

제3절 노동 정책

노동 정책의 측면에서는 일가족양립제도를 통해 아동의 양육을 지원하고 있다. 산전후 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는 출산여성 출대한 보호와 자녀양육 출대한 부담을

국가에게 부담하게 함으로써 양성평등과 미래세대 출대한 보호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는 제도이다. 먼저 산전후 휴가급여란급여성근로자가 출산후 모성보호 및 출산자녀의 건강을 위해 출산전과 후 출90일간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또한 동 제도의 경우급여성들의 고용을 촉진함으로써 여성근로자들의 생활안정 출도움을 주고자 하는 제도이다. 동 제도는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⁵⁾, 남녀고용평등법과 일·가정 양립 지원 출관한 법률 제18조(산전후휴가 출대한 지원)⁶⁾, 고용보험법 제75조(산전후휴가 급여 등)⁷⁾에 근거를 두고 있다.

지원하는 급여는 산전후휴가 기간 중 최대 90일분의 급여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①대규모기업은 최초 60일 고용주가 임금 전액 지급, 나머지 30일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이 최대 135만원 지급하며, ②우선지원대상기업은 고용보험에서 최대 405만원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다음으로 육아휴직급여란 만 3세 미만의 자녀를 가진 부모에 대해 최대 1년 동안 자녀양육을 위해 신경 쓸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자들의 고용상의 안정을 기하고자 하는 제도라 할 수 있다. 동제도에 관한 관련 법률로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고용보험법 제70조(육아휴직급여)에 근거를 두고 있다⁸⁾.

고용보험통계에 따르면, 2009년도 9월 기준 산전후휴가의 사용자 수는 9,292명으로 전년동월 대비 14.2% 증가했으며, 육아휴직의 신규 사용자 수는 3,163명으로

-
- 5)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산전과 산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기간의 배정은 산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 6) 남녀고용평등법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산전후휴가에 대한 지원) ① 국가는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휴가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산전후휴가급여등”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 7) 고용보험법 제75조(산전후휴가 급여 등) 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피보험자가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를 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산전후휴가급여 등(이하 “산전후휴가 급여등”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 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① 사업주는 생후 3년 미만 된 영유아가 있는 근로자가 그 영유아의 양육을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해야 한다. 고용보험법 제70조(육아휴직급여) ① 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산전후휴가기간 90일과 중복되는 기간을 제외한다) 부여 받은 피보험자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육아 휴직 급여를 제공한다.

전년동월 대비 24.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포함한 급여액은 28,724백만원으로 전년동월 대비 30.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용보험통계월보, 2009년 9월).

〈표 3-6〉 아동양육관련 노동정책

구분		제도명	대상	급여액
노동 시장 정책	일- 가족 양립 제도	산전후휴가급여	-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 - 90일간의 보호휴가 - 산후에 45일 이상 확보	- 우선지원대상기업: 90일, 최대 450만원 - 대규모기업: 30일, 최대 135만원
		육아휴직급여	-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 만3세미만 자녀부모 최대 1년 기간	- 월 50만원

자료: 고용정보원 홈페이지.

제4절 세제지원

다음으로 조세정책을 이용한 아동 양육 지원 방식이 있다. 세제 지원이 반드시 자녀의 양육을 지원하는 목적은 아니지만 자녀가 있는 가정에 대해 자녀의 존재 혹은 양육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세제 감면의 형식으로 혜택을 준다는 광의의 개념에서 포함하였다. 조세감면 형식의 세제지원은 주로 출산과 양육에 대한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는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적·특별공제 및 근로장려세제(EITC)가 그 예이다.

먼저 조세감면제도는 법인세나 부가가치세 및 기타 세제를 통하여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으나, 직접세인 소득세제 하에서 개인의 소득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직접세가 개개인의 행동양식에 대한 직접적인 경제적 유인을 주는 반면, 간접세의 경우는 보다 많은 경제주체에 영향을 주게 됨으로 기대효과가 좀 더 복잡해질 수 있다는 측면과도 관련이 있다. 예를 들면 부가가치세를 통한 조세지원들의 경우는 해당기업들의 가격설정 과정 등의 이유로 개인에 대한 유인 창출이라는 측면에서는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 우리나라의 부양아동관련 세제혜택은 소득세내의 인적소득공제제도와 양육비, 교육비, 의료비, 보험료 등에 대한 특별공제가 있고, 상속세내의 인적공제제도가 있다⁹⁾.

〈표 3-7〉 부양아동 관련 세제혜택

조세	항목	감면 내용
소득세	인적소득공제	- 부양아동 1인당 100만원의 기본공제, - 6세이하 자녀에 대한 추가공제 100만원, - 다자녀추가공제: 자녀가 2인 이상인 경우 50만원, 3인 이상인 경우 50만원과 2인 초과시 1인당 100만원이 합계액, - 출산입양 당해 연도 1인당 200만원의 출산입양공제
	양육비관련 특별공제	- 보험료공제: 소득이 없는 기본공제 대상자인 자녀의 의료보험료 전액공제, 연 100만원 한도의 보장성 보험료 공제 - 의료비공제: 연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자녀 의료비의 소득공제 (500만원 한도) - 교육비공제: 자녀 입학금, 수업료, 학원 수강료의 소득공제 (영아~고교생: 200만원 한도, 대학생: 700만원 한도,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한도 없음)
상속세	인적공제	- 상속세 과세대상에서 자녀 1인당 3,000만원 공제 - 미성년 자녀에 대하여 20세까지 잔여연수 X 500만원 추가 공제 (유아의 경우 최고 9,500만원 까지 공제)
	근로장려세제	- 연간총소득 1천7백만원미만, 재산 합계액 1억원 미만 - 18세 미만의 자녀를 2인 이상 부양하는 무주택가구 - 연 최대 80만원 급여액지원

자료: 2008년 조세개요

현행 소득세제가 아동양육지원의 유인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은 부양자관련 인적 소득공제 제도와 부양비관련 특별소득공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부양자관련 인적공제제도로는 기본공제로 자녀 1인당 100만원씩을 공제하도록 되어 있고, 이에 추가적으로 6세이하 자녀에 대하여 자녀양육비 추가공제 100만원을 허용하고 있다. 이외에 2007년 새로 개정된 소득세제하에서는 다자녀추가공제를 허용하고 있다.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가 2인까지는 50만원을 추가로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자녀가 3인 이상인 경우는 50만원과 2인 초과인 경우 추가 1인당 100만원을 추가적으로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출산장려 차원에서 2008년에는 출산 입양 당해 연도에 한하여 1인당 200만원을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출산 입양 공제가 신설되었다.

양육비와 관련하여서 현행 소득세제는 가족의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등이 특별소

9) 인적·특별공제란 정부가 근로 혹은 사업소득자들의 세금에 대해 감면조치를 함으로써 개별근로자 및 사업자들의 생활안정과 소비촉진을 유도하는 제도인. 인적공제 중 다자녀공제(소득세법 51조의2(다자녀추가공제))의 경우 다자녀가구들의 조세 감면을 통해 생활안정을 촉진하는 데 목적이 있고 특별공제(소득세법 52조)내의 교육비의 경우 근로자 및 사업자들의 인적자원개발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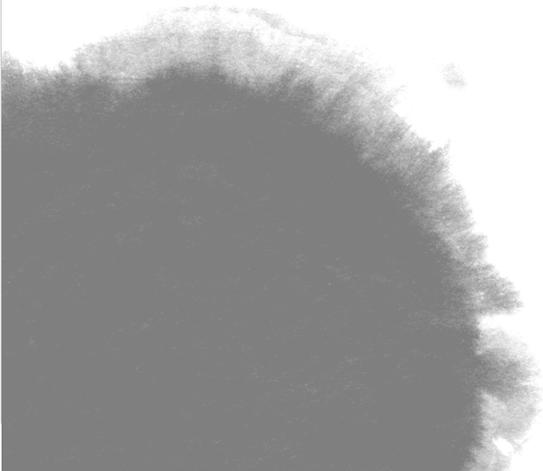
득공제의 대상이 된다. 소득이 없는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를 피보험자로 한 의료보험료는 전액공제가 가능하고, 보장성 보험료는 연 10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녀에게 지출된 의료비가 연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경우 50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자녀에 대한 교육비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학생이나 보육시설 영유아 및 취학전 아동을 위하여 지급한 입학금, 수업료, 학원수강료에 대해 유치원, 영유아, 취학전 아동과 초중고생은 연 200만원, 대학생은 연 700만원 한도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장애아동의 경우 지급된 특수교육비는 한도가 없으며 전액 소득공제 대상이다.

현행 상속세제하에서는 상속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인적공제를 허용하고 있는데, 자녀 1인당 3,000만원의 인적공제를 허용하고 있다. 미성년 자녀에 대한 추가공제로서, 20세미만의 자녀들의 20세까지 잔여 연수당 추가 500만원의 공제를 허용함으로써 유아의 경우 최고 9,500만원의 추가공제가 허용된다. 다만 인적공제와 기초공제를 합산한 공제액과 일괄공제액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하므로, 인적공제액이 3억원이 초과하지 않는 경우는, 인적공제가 무의미 하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근로장려세제(EITC)를 들 수 있는데, EITC는 저소득가구들에게 조세를 통해 오히려 소득을 증가시킴으로써 근로유인을 도모하고자 도입되어 2008년 근로소득기준으로 2009년부터 근로장려금이 지급되기 시작하였다. 근로장려세제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①연간 총소득이 1천7백만원 미만, ②18세 미만의 자녀를 2인 이상 부양, ③ 미의 의 자이 1 2인 이, ④무주택이어야만 한다. 근로장려세제를 통한 지원금액은 연 80만원까지이다. 현행의 근로장려세제는 원래 사회보험과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근로빈곤층(차상위계층)을 위한 사회안정망으로 도입된 것으로, 시행초기에는 제도의 안정적 도입과 정착을 위하여 18세 미만 자녀 2인 이상 부양 가구로 대상을 한정하였으나, 이후 제도의 안정적 정착이 이루어진 단계에서는 이러한 자녀수 규정을 철회할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

04

이동수당의 자원조달



제4장 이동수당 재원조달

제1절 해외 이동수당 도입국가들의 재원조달: 이동수당유형별 재원조달방식

기존 이동수당 도입 국가들의 경우 이동수당과 관련제도의 구조와 유형에 따라 중앙정부, 고용주, 지방 정부 등이 재원을 부담하고 있다. 국가에 따라서는 중앙정부와 고용주, 지방정부가 재원을 분담하거나, 사회보험의 형태와 유사하게 고용주와 피고용인이 분담하는 등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동수당을 도입하고 있는 국가들의 재원조달 유형을 보면, 정부의 국고로만 재원을 충당하는 경우가 43개 국가로 제일 많고, 고용주가 충당하는 국가가 25개국, 정부와 고용주가 분담하는 국가가 12개국, 정부와 고용주, 피고용인인 근로자가 분담하는 국가가 12개 국가이다. 한편 스리랑카와 같은 국가에서는 특이하게 고용주 부담없이 정부와 근로자가 재원을 분담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니카라구아와 아프리카 툰시아에서는 정부 부담없이 고용주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극히 예외적인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표 4-1〉 이동수당 도입국가들의 재원조달 유형

유형	정부 단독	고용주 단독	근로자 단독	정부+고용주	정부+근로자	고용주+근로자	정부+고용주+근로자
국가 수	43	25	0	12	1	2	12

미국의 사회보장청이 발간하는 Social Security Programs Throughout the World에서는 아동수당제도를 그 성격에 따라 보편주의(Universal System), 고용관련제도 (Employment-related system)로 분류하고 있다. 보편주의는 정해진 자녀수에 해당하는 자녀를 가진 모든 가구에게 지급되는 수당으로 주로 유럽 국가들에서 많이 관찰되고 있다. 고용관련제도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간혹 자영업자도 그 대상에 포함되기도 하는 경우로, 주로 아프리카 국가들 대부분과 남미국가에서 운영되고 있다. 몇몇 나라들에서는 근로자가 아닌 가구도 대상으로 포함하는 경우도 있다.

대부분의 고용관련제도로 운영되는 국가들의 경우 근로자가 은퇴시 혹은 임시 휴직 및 장애, 실업, 산재 등의 급여를 받을 때에도 가족수당을 지속적으로 지급한다. 한편 아동을 가진 가족에 대한 가족수당의 전체 시스템적 측면에서 그 성격이 정확히 구분되지 않고 대상자, 재원조달의 측면에서 다양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 경우 보편주의와 공공부조의 혼합 (Universal and Social Assistance System),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혼합 (Social Insurance and Social Assistance System) 등으로 세분화되기도 한다.

이러한 아동수당의 유형별로 재원조달 방식을 살펴보면, 보편주의 유형의 아동수당은 주로 정부가 재원을 부담하고, 고용관련제도 유형의 아동수당은 고용주가 중심이 되고 정부가 보조하는 방식으로 재원을 분담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보편주의형 아동수당제도를 가지면서도 자산조사를 하는 다른 추가적 수당을 가지는 경우 정부 외에 고용주나 혹은 근로자까지 재원을 부담하는 경우도 있다. 사회보험형 아동수당제도의 재원조달은 원칙적으로 고용주와 근로자가 부담하고 정부가 일부 보조하는 형식으로 운영된다. 그러나 가족수당의 전체 시스템이 공공부조적 측면을 가지고 있거나 하는 경우 스페인의 경우처럼 정부가 전적으로 부담하는 경우도 있고, 또 반대로 멕시코의 경우처럼 고용주가 전적으로 재원을 부담하는 경우도 있다.

〈표 4-2〉 OECD국가의 아동수당 유형별 재원조달 방식

	정부	고용주	정부+고용주	정부+고용주+근로자
보편주의	네덜란드, 노르웨이, 뉴질랜드(공공부조), 덴마크, 독일(공공부조), 룩셈부르크, 스웨덴, 슬로바키아, 아이슬란드, 아일랜드(공공부조), 호주(공공부조), 체코, 폴란드, 핀란드, 헝가리		오스트리아, 프랑스	포르투갈
고용관련			이탈리아, 스위스	그리스
사회보험	스페인(공공부조)	멕시코 벨기에(공공부조)		
세액공제	영국(보편주의), 캐나다(환급가능세액공제)			
고용주 부담형			일본(공공부조)	

가. 보편주의 유형

보편주의는 아동이 있는 모든 가구를 대상으로 하므로, 그 재원은 원칙적으로 정부가 부담하는 형식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부가 전액 부담하는 국가는 자산조사가 필요하지 않는 보편적 형태의 가족수당이나 아동수당이 제공되는 국가들로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영국,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아일랜드 등의 국가들이다. 핀란드의 경우는 보편주의 가족수당을 채택하면서 정부가 전액 재원을 부담하지만, 가정내에서 양육하는 아동에 대한 가정양육수당은 자산조사를 실시하는 형태로 지급되고 있다. 이에 대한 재원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이렇듯 보편주의제도하에서의 재원조달은 주로 국고지원이나, 프랑스, 오스트리아 등 고용주가 일부 부담하는 경우도 있다. 이들 국가의 경우는 대체로 보편적인 형태의 가족수당을 제공하면서 이에 부가적으로 자산조사를 실시하는 저소득층에 대한 영아수당, 아동수당들을 추가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면 프랑스의 경우는 보편적 형태의 가족수당을 지급하면서 동시에 자산조사를 실시하는 영아 급여등을 지

급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고용주와 자영업자가 임금총액의 5.4%를 부담하고, 정부가 개인의 소득에 사회기여금을 부여하여 징수하고 있다.

오스트리아는 보편적인 가족수당과 저소득 부모에 대한 아동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형태로 아동수당이 지급되고 있다. 가족수당의 재원은 고용주가 임금의 4.5%를 고용주 부담금으로 부담하고, 주정부는 거주자당 연 1.74유로를 부담하고 중앙정부가 세입의 일정 비율을 가족수당 평형기금 (Family Allowances Equalization Fund)으로 이전하여 재원을 부담하고 있다. 거주자가 2,000명이 넘는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자치단체는 자체 예산으로 가족수당의 재원을 조달하며 이 경우 고용주 부담금은 각출하지 않는다. 오스트리아의 경우 아동수당은 전적으로 가족수당평형기금에서 재원이 충당되고 있다.

이스라엘의 경우는 보편적인 가족수당만을 제공하면서 자산조사가 필요한 추가적 수당이 없으나 고용주가 재원을 부담함에 있어 소득에 따라 차등적인 부담을 지우고 있다. 이스라엘의 가족수당 재원은 고용주, 자영업자, 정부가 부담한다. 정부는 소득의 0.8% 와 총 보험료 수입의 202.38% 를 부담하며, 장학금 및 이민자 가정의 아동에 대한 가족수당은 전액 부담한다. 고용주는 평균 임금의 60% 이하인 경우 소득의 1.47%를 부담하고, 평균 임금의 60% 이상인 자에 대하여서는 소득의 2.08%를 부담한다. 자영업자는 평균 임금의 60% 이하인 경우 소득의 1.39%를 부담하고, 평균 임금의 60% 이상인 자에 대하여서는 소득의 2.4%를 부담한다.

포르투갈의 경우는 보편적인 가족수당으로 분류되지만 자산조사를 통해 소득구간 별로 액수가 차등 지급되고 있다. 재원은 정부와 고용주, 그리고 피보험대상인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모두 분담하는 형태이다. 고용주와 피보험인, 자영업자가 납부해야 하는 연금보험료 중 일정량이 가족수당 재원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사회보험료 징수를 통해 재원조달 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고용주와 근로자는 각각 연금보험료 34.75%중 2.15%를 가족수당 재원으로 납부하고 있고, 자영업자는 연금보험료 32% 중 일부를 가족수당의 재원으로 납부하게 된다.

한편 보편주의와 공공부조(social assistance)의 혼합체계로 분류되는 국가들에서는 주로 국가가 재원을 부담하고 있다. 호주, 독일 등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국가로 전액 국고와 일반세입에서 재원이 충당되고 있다.

나. 고용관계 유형 (Employment-related type)

고용관계 유형의 이동수당은 이동이 있는 근로자나 자영업자에 대하여서만 제공되어 사회보험수급자격과 함께 이동수당이 지급되는 경우이다. 고용관계 유형하의 이동수당의 재원은 그 성격상 고용주가 재원부담의 일차적 책임을 지게 된다. 고용주 부담으로 부족한 경우 정부가 부족분에 대하여 보조하게 된다. 그러나 고용관계라 할지라도 피보험자와 고용주가 나누어 부담하는 경우도 있다. 이탈리아의 경우 사회보험, 실업수당을 받는 근로자 가구를 대상으로 하여, 고용주가 임금 총액의 2.48%를 부담하고 정부가 고용주 기여금의 1.8%를 포함한 보조금을 부담하는 형태로 재원을 조달하고 있다. 자영업자들과 특수직 연금을 수령하는 특수직 종사자에게는 다른 가족수당 시스템이 적용되는데, 자영업자들의 재원부담은 없다.

스위스는 대부분의 주정부에서 고용관계 유형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5개 주에서는 고용관계와 공공부조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스위스 가족수당은 연방정부와 주정부 사업이 있는데, 연방정부 사업은 농업부문의 근로자와 소규모 자영업자들도 대상자에 포함하고, 주정부 사업은 비농업부문 근로자를 포함하며 몇 개 주에서는 자영업자와 연방정부의 수당 대상자가 아닌 농민을 포함하는 경우도 있다. 재원은 고용주와 정부가 분담하는 형식이며, 자영업자도 대상이 되는 주정부 수당은 자영업자도 정률의 기여금을 부담하거나 총소득의 1%를 부담한다. 비농업부문의 고용주는 주정부의 재정상황에 따라 급여의 0.1%~4%의 부담금을 부담하며, 농업부문 고용주는 급여의 2%를 부담한다. 주정부와 연방정부는 농업부문 고용주 부담금의 부족분과 소규모 자영업자의 급여 전체를 주정부가 1/3, 연방정부가 2/3 부담한다. 자영업자까지 가족수당의 대상이 되는 주의 경우, 자영업자 부담금을 초과하는 부족분에 대해서는 가족수당기금(Family allowance fund)나 주정부가 부담한다. 주에 따라서는 근로자가 아닌 가구도 포함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주정부가 재원을 부담한다.

그리스의 경우는 고용주외에도 피보험자가 재원을 부담하고 있는데, 피보험자가 소득의 1%, 고용주가 임금총액의 1%를 기여하고, 정부가 예산보조의 형태로 재원을 분담한다. 그리스는 자영업자에게는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므로 자영업자는 재원부담을 하고 있지 않다.

다. 고용주 부담형 (employer liability): 일본

이외에 아동수당의 유형이 독특한 국가로서 일본을 들 수 있다. 일본은 고용주 부담과 공공부조 (employer liability and social assistance system)로 분류되고 있는데, 이는 일본의 경우 3세미만 영유아에 대하여서는 고용주가 재원을 부담하는 등 아동양육에 대한 책임이 일부 기업에 전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의 아동수당은 자산조사를 거쳐 일정소득 이하의 가구에게만 지급되므로 보편적 수당이 아니며, 재원은 고용주, 중앙정부, 지방정부 3자가 부담하고 있다. 3세미만 영유아에 대한 재원은 고용주가 70%, 중앙정부가 10%, 도·도·부·현이 10% , 시·정·촌이 10%를 부담한다. 고용주는 급여의 0.13%를 고용주 각출금으로 납부하고, 이는 연금특별회계의 아동수당 계정으로 징수된다. 직장이 없는 사람, 시·정·의 경우 중앙정부가 1/3, 도·도·부·현이 1/3, 시·정·촌이 1/3을 부담한다. 공무원의 경우는 해당기관이 전액 부담한다. 574만엔의 소득 제한으로 인해 아동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는 근로자의 지급률을 자영업자와 같게 하기 위한 특례급부에 필요한 비용은 고용주가 전액 부담한다. 만 3세 이상에서 초등학교 수료 전까지의 수급대상아동에 지급될 아동수당에 필요한 비용은, 모두 정부와 지방정부가 나누어 부담한다.

고용주로부터의 각출금을 징수하여 피고용인뿐 아니라 3세미만 아동수당 대상자 전부에 대한 재원부담을 부과시키는 일본의 재원조달 방식은 기타 해외국가의 재원조달 사례에 비추어 보아 무척 특이한 경우이다. 일본의 고용주각출금은 임금과 보수를 부과표준으로 하는 점에 있어서 사회보험료와 유사하다. 하지만 아동의 양육이라는 사회적 위험에 대한 지출이라는 점과, 피고용자만이 아니라 일반 대상자를 위한 각출금이라는 점 등에 있어서, 사회보험료중 사업주부담과는 다른 새로운 사회보험 각출금으로서의 성격을 지닌다. 일본의 경우 고용주 부담은 원칙적으로 차세대의 사회를 담당할 아동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아동의 자질 향상을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미래 인적자원의 확대와 성장동력의 확충과 연결되는 효과를 기대한다는 취지에 기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국가부담의 일부를 고용주에게 부담시킨다고 하는 소극적인 견지에서만 출발하는 것은 아니고, 각출금 방식을 통한 사회보장제도의 재원조달이 비교적 그 급여 수준이 높고 제도의 지속적 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는 장

점에 기인한 측면도 있다.

정부측면에서는 중앙정부보다 지방정부의 재원부담이 더 크게 부과되고 있다. 이는 아동수당제도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이지만, 지역주민의 복지와의 밀접히 관계되어있다는 점에 기인한다. 원래는 국가와 지방의 책임분담의 정도를 감안하여 중앙정부가 지방공공단체의 2배를 부담해왔으나, 중앙정부와 지자체에 대한 "삼위일체의 개혁"에 의해 부담율이 재고되어, 중앙정부, 도·도·부·현, 시·정·촌이 각각 동일한 비율로 부담하게 되었다.

제2절 일본의 아동수당과 재원조달방안

가. 개요

일본의 아동수당제도는 아동수당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가 보편주의적 제도로 운영하고 있는 반면, 부모의 소득에 따라 소득제한이 있는 선별주의적 제도로 운영된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일본에서의 아동수당제도는 첫째,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 소득을 보장하고, 둘째, 미래 사회의 주체인 아동을 건전하게 양육하며, 셋째, 양질의 미래 노동력을 확보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 세 번째 노동력 확보와 같은 노동 정책적 관점에서, 사업주에게 아동수당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일본의 아동수당은 원래 치바현에서 지자체사업으로 수행하고 있던 제도를 동경도를 거쳐 정부사업으로 채택하게 되었다. 1969년에 후생성 내에 아동수당심의회를 설치하고, 1971년에 아동수당법을 제정하면서 시작되었다. 이 법안이 197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이후 1972년, 1981년, 1985년, 1991년, 1994년, 2000년, 2004년, 2006년, 2007년의 개정을 거쳐 현재의 제도로 운영되고 있다.

현재 일본의 아동수당의 종류로는 만 12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아동수당(兒童手當, child allowance), 모자가정에 대한 아동부양수당(兒童扶養手當, child-rearing allowance), 장애 아동에 대한 특별아동부양수당(特別兒童扶養手當, special allowance for child-rearing) 등이 있으며, 지자체별(동경도)로 부자가정도 포괄할 수 있는 아동육성수당(兒童育成手當) 등을 지급하기도 한다.

〈표 4-3〉 일본의 아동수당제도 개관

종류	대상	급여 내용	제도의 시행
아동수당 (兒童手當)	- 초등학교 수료전의 아동	- 만 3세 미만 : 일률적으로 월 10,000엔 지급. - 만 3세 이상 :첫째·둘째 자녀 월 5,000엔, 셋째 자녀 월 10,000엔 지급.	전국
아동부양수당 (兒童扶養手當)	- 18세 미만의 아래와 같은 상황에 있는 아동 · 아버지의 사망 · 아버지에 의해 1년 이상 유기되고 있는 경우 · 아버지의 이혼 · 아버지가 법에 의해 1년 이상 구금되어 있는 경우 · 아버지가 중증장애인 경우 · 어머니가 생계를 꾸려가는 경우 · 아버지의 생사가 불명확할 경우	- 소득제한 한도액에 따라, · 전액지급 : 월 42,370엔 부터 · 일부지급 : 월 42,360 ~ 10,000엔까지 차등지급.	
특별아동부양수당 (特別兒童扶養手當)	- 20세 미만의 장애아를 양육하는 자	· 일반장애 : 월 34,330엔 · 중증장애 : 월 51,550엔	
아동육성수당 (兒童育成手當)	- 18세 미만의 아래와 같은 상황에 있는 아동 ·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사망 · 아버지 또는 어머니에 의해 1년 이상 유기되고 있는 경우 · 부모의 이혼 ·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법에 의해 1년 이상 구금되어 있는 경우 ·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중증장애인 경우 · 혼인 외 자녀 ·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생사가 불명확할 경우	- 지자체별로 급여내용이 상이함 - 소득수준 등에 따라 차등지급	지자체
장애아동육성수당 (障害兒童育成手當)	- 20세 미만의 장애아를 양육하는 자 · 지적장애 1·2·3급 · 신체장애 1·2급 · 뇌성마비 또는 진행성 근위축증		

자료: 일본노동후생성 내부자료

최근 정권교체에 성공한 일본 민주당의 핵심공약인 자녀양육관련 선거공약은 첫째 출산시 모든 아동에게 1인당 55만엔을 일괄지급하고, 둘째 ‘어린이 수당’을 도입하며, 셋째 공립고교생은 수업료 무료, 사립고교생은 연 12만엔~24만엔 지원, 넷째 대학생 및 전문대생 희망자 전원이 받을 수 있는 장학금 제도 도입, 다섯째 생활보

조를 받는 모자가정의 아동부양수당제도(09년 폐지)를 부활시키고, 부자가정에도 아동부양수당 지급, 여섯째 빈 교실을 활용한 보육소 확대로 대기아동 해소 등이다(일본 민주당, 매니페스토 자료집 발췌).

민주당은 정권교체를 이루자마자 공식기자회견을 통해 어린이수당과 관련한 법안을 가장 먼저 입법화하기로 발표했다. “어린이수당”은 “아이가 태어난 직후부터 중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15년간 1인당 매월 2만6천엔(한화 약 35만원)씩 소득제한이나 국적 같은 제한조건 없이 일률적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기존의 아동수당과는 확연히 차별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저널리스트 데쓰오는 “일본의 아동양육관련 수당제도의 총액은 GDP 대비 1.2% 수준으로 프랑스, 영국, 독일 등이 3%이상인데 비해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으며, 특히 프랑스와 영국이 수당제도의 증액을 통해 출산율 회복에 성공했다는 점을 상기할 때 더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JP News, 2009/9/2).

나. 아동수당제도

1) 아동수당

아동수당은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 지급되는 현금 급여로서, 자녀가 있는 세대에 생활의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있다. 0세 이상 만 12세까지의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에게 지급되지만, 부모가 아동을 양육하지 않는 경우에는 아동을 대신 양육하는 자에게 수당이 지급된다. 아동수당은 대상자와 소득에 따라서 급여의 명칭을 구분하고 있다. 즉 만 3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아동수당’으로 명명되는 반면, 만 3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지만 소득제한에 의해 아동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특례급여’로 명명된다. 또 만 3세 이상부터 초등학교 졸업 전까지 아동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초등학교 졸업 전 특례 급여’로 명명된다.

〈표 4-4〉 일본의 아동수당 구성 및 수급대상

	피고용인	자영업자	공무원
아동수당 (3세 미만)	v	v	v
초등학교 수료 전 특례급부 (3세 이상 12세 이하)	v	v	v
특례급부 (소득제한 한도액 초과 시)	v	-	v

자료: 일본노동후생성 내부자료

(1) 수급자 선정기준

아동수당은 일본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자가 지급요건아동(3세 미만의 아동, 또는 3세 미만의 아동을 포함하는 2인 이상의 아동)을 양육하고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부 또는 모이거나, 부모가 양육하지 않거나 이들과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지급요건 아동을 감호하면서 생계를 유지하는 자인 경우에 지급된다.

수급자 선정은 초등학교 졸업 전의 아동을 양육하고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세대를 대상으로, 청구자 본인(또는 맞벌이 부부 중 소득이 많은 자)의 전년 소득액을 기준으로 수급자격 여부를 심사하게 된다. 또한 전년도(1월부터 5월까지의 아동수당은 전전년도) 소득이 일정액 이상인 경우 아동수당은 지급되지 않는다.

〈표 4-5〉 일본의 아동수당 및 특례급부의 소득제한 한도액(전년도 기준)

부양가족수	자영업자(아동수당)	(단위 : 만엔)		
		세전소득	근로자(특례급부)	세전소득
0명	460.0	652.5	532.0	733.3
1명	498.0	695.6	570.0	775.6
2명	536.0	737.8	608.0	817.8
3명	574.0	780.0	646.0	860.0
4명	612.0	822.2	684.0	902.2
5명 이상	1인당 38만엔 가산	864.4	1인당 38만엔 가산	944.4

주: 소득세법에 의한 노인공제 대상 배우자 또는 노인부양친족이 있는 자에 대한 한도액은 위의 액수에 해당 노인공제 대상 배우자 또는 노인부양친족 1명에 대해 6만엔을 가산한 액

부양 친족 등의 수가 6인 이상인 경우에 한도액은 1명에 대해 38만 엔(부양 친족 등이 노인공제 대상 배우자 또는 노인부양친족인 경우는 44만 엔)을 가산한 금액

특례급부 소득제한 한도액에는 8만엔(사회보험료 공제 및 생명보험료 공제에 상당하는 액으로 일률적 공제분)을 가산함.

자료: 일본 후생노동성 홈페이지 (<http://www.mhlw.go.jp/bunya/kodomo/jidou-teate.html>)

실제소득제한 한도를 적용할때는 세전소득은 활용하지 않고 세후소득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소득제한 한도액은 4인 가구(부부와 자녀 2명)을 기준으로 할 때, 자영업자가 574만엔(약 7,631만원)이며, 근로자는 연 646만엔(약 8,588만원)까지 특례급부를 지급받을 수 있다. 근로자의 경우는 자영업자보다 높은 소득수준까지 수당을 지급받도록 되어 있다. 574만엔 이상 646만엔의 소득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특례급부라는 명칭의 아동수당을 지급받는데, 이의 재원은 아동수당과 같이 사업주가 70%를 부담하거나 중앙과 지방이 분담하는 형식이 아니라 100% 사업주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즉, 근로자의 경우 소득상한선 이상 특례급부 소득상한선 미만의 소득을 버는 사람들에게는 사업주가 재원을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자영업자보다는 더 많은 대상자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2) 급여내용

지급액은 만 3세 미만의 아동의 경우 월 1만엔(약 13만원)이 지급되며, 만 3세 이상 만 12세 이하(초등학교 졸업 전)의 아동의 경우 첫째 자녀와 둘째 자녀에는 월 5천엔(약 6만 5천원), 셋째 자녀에는 월 1만엔(약 13만원)이 지급된다. 수당은 4개월마다 각각 그 이전달의 수당을 포함하여 지급되며, 지급 시기는 2월, 6월, 10월이다.

아동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소재지 시·정·촌장의 인정을 받아야 하며, 주소지가 바뀌거나 아동수가 증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인정을 받아야 한다. 인정청구를 한 날이 속하는 달의 익월부터 지급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되며, 수급자는 매년 6월 1일에 현황을 시·정·촌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현황신고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나 시·정·촌장의 자료제출 명령에 응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지불의 정지, 지급의 제한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표 4-6〉 일본의 아동수당 및 특례급부의 월 급여액

		아동수당	특례급부
3세 미만 아동		월 10,000엔	월 10,000엔
3세 이상 ~ 초등학교 졸업 전 아동	첫째·둘째 자녀	월 5,000엔	월 5,000엔
	셋째 자녀부터	월 10,000엔	월 10,000엔

자료: 일본 후생노동성 홈페이지 (<http://www.mhlw.go.jp/bunya/kodomo/jidou-teate.html>)

(3) 변천과정

일본은 1972년 제도를 발족하여 세 번째 자녀 이하를 대상으로 아동수당을 지급하기 시작하였다. 만 5세 미만의 셋째 자녀에 대해 제도가 시작되었지만 지급연령을 단계적으로 연장하여 의무교육 수료 전, 즉 중학교 졸업 전까지 확대하기로 명시하였다. 1982년에는 행정개혁 특례법에 의해 특례조치에 따라 소득제한을 강화하고 특례급부를 실시하였다. 1985의 개정에 따라 1988년까지의 경과기간을 두고 의무교육 취학 전의 두 번째 자녀 이하까지 대상이 확대하였으며, 1991년의 개정에서는 1994년까지의 경과기간을 두고 지급대상을 첫 번째 자녀까지로 확대 하였으며 지급기간을 만 3세 미만에 한정시키는 것이 중점화되었다.

2000년의 개정에서는 의무교육 취학 전까지로 지급 대상을 확대하였고, 이후 2004년의 개정에서는 소학교 3학년 수료 전까지로, 2006년의 개정에서는 소학교 수료까지로 지급대상을 점차 확대하였다.

2007년의 개정에서는 유유아 가산(乳幼児 加算)이 창설되어, 만 3세 미만의 아동수당액을 일률 1만엔으로 확충하여 만 3세 미만의 자녀라면 첫째 자녀부터 매월 1만엔을 지급받게 되었다.

〈표 4-7〉 일본의 아동수당제도의 주요연혁

연도	개정내용	지급 대상	수당월액(엔)		소득제한(만엔)		지급 아동수 (천명)	지급 총액 (억엔)	국가 부담금 (억엔)	고용주 부담금 (억엔)	부담 금율 (/1000)
			시행 시기	1인당 지급액	시행 시기	한도액					
1971	72년1월 제도발족 셋째자녀이후 의무교육 수료 전 (단계적실시)	5세 미만	71.1월	3,000	71.1월	174.7	1,119	65	27	13	0.5
1972					72.6월	204.2	1,435	421	195	120	
1973		10세 미만			73.6월	238.0	2,353	750	347	199	
1974		의무교육 종료전의 아동	74.10월	4,000	74.6월	288.2	2,762	1,060	490	283	1.2
1975			75.10월	5,000	75.6월	362.0	2,823	1,445	659	398	
1976					76.6월	399.5	2,837	1,690	764	477	
1977					77.6월		2,845	1,695	760	489	
1978	법률개정 (복지시설 도입)		78.10월		5,000 (시정촌민 세소득할비 과세자 :6,000)	78.6월	432.0	2,814	1,719	773	
1979			79.10월	5,000 (6,500)	79.6월	2,763		1,784	813	507	
1980					80.6월	2,678		1,778	813	505	
1981			81.10월		81.6월	377.5	2,358	1,640	768	451	0.9
1982				5,000 (7,000)	82.6월	아동 수당 : 318.5 (특례급 부 :487.5)	2,462	1,659 (238)	731	516	
1983					83.6월	319.4 (497.5)	2,411	1,648 (396)	682	569	
1984					84.6월	326.0 (505.0)	2,391	1,636 (434)	663	579	
1985	법률개정 지급대상변경 : 둘째자녀까지확대				85.6월	334.4 (525.0)	2,333	1,589 (445)	619	579	

주: [] 은 특례급부임.
 자료 : 후생노동성 내부자료

〈표 4-7〉 일본의 아동수당제도의 주요연혁 (계속)

연도	개정내용	지급 대상	수당월액(엔)		소득제한(만엔)		지급 아동수 (천명)	지급 총액 (억엔)	국가 부담금 (억엔)	고용주 부담금 (억엔)	부담 비율 (/1000)
			시행 시기	1인당 지급액	시행 시기	한도액					
1986		86년 6월부터 둘째: 2세미만 셋째이후 :의무교육종료전	86.6월	저소득자특 례페지 둘째 : 2,500 셋째이후 : 5,000	86.6월	340.6 (558.8)	3,296	1,604 (557)	561	674	0.9
1987		87년 4월부터 둘째 : 4세미만 셋째 : 9세미만		둘째 : 2,500 셋째이후 : 5,000	87.6월	341.4 (581.3)	3,678	1,556 (659)	455	755	
1988		88년 4월부터 의무교육취학전			88.6월	342.4 (592.5)	3,899	1,485 (708)	390	777	
1989				둘째 : 2,500 셋째이후 : 5,000	89.6월	347.8 (603.3)	3,851	1,452 (741)	354	797	
1990					90.6월		3,687	1,389 (738)	322	795	
1991	법률개정 지급대상 변경 :첫째까지 확대, 수당월액 증액	92년 1월부터 첫째 : 1세미만 둘째 이후 : 5세미만	92.1월		91.6월		2,939	1,379 (791)	296	822	1.2
1992		93년 1월부터 첫째 : 2세미만 둘째 이후 : 4세미만			92.6월	358.9 (625.0)	2,653	2,147 (1,334)	422	1,375	
1993		94년 1월부터 첫째 : 3세미만 둘째 이후 : 3세미만			93.6월		2,484	1,942 (1,283)	352	1,277	
1994	법률개정 (아동육성사업의창설, 사업비충당거출금 도입)			첫째,둘째 :5,000 셋째이후 10,000	94.6월		2,485	1,709 (1,153)	302	1,150	
1995					95.6월	370.4 (594.4)	2,275	1,609 (1,058)	294	1,091	
1996					96.6월	377.2 (600.0)	2,248	1,530 (982)	290	1,037	
1997					97.6월		2,158	1,494 (950)	285	1,014	
1998					98.6월	381.1 (620.6)	2,210	1,484 (940)	286	1,006	
1999					99.6월		2,407	1,587 (886)	319	1,009	
2000	법률개정 지급대상의변경	00년 6월부터 의무교육 취학전			00.6월	432.5 (670.0)	5,781	2,935 (890) [소학교 수료전 특례 급부 :1,219]	1,180	1,086	

〈표 4-7〉 일본의 아동수당제도의 주요연혁 (계속)

연도	개정내용	지급 대상	수당월액(엔)		소득제한(만엔)		지급 아동수 (천명)	지급 총액 (억엔)	국가 부담금 (억엔)	고용주 부담금 (억엔)	부담 비율 (/1000)
			시행 시기	1인당 지급액	시행 시기	한도액					
2001							6,769	4,036 (594) [2,089]	1,859	1,063	1.1
2002						596.3 (780.0)	6,881	4,298 (417) [2,248]	2,021	1,044	
2003							6,929	4,353 (394) [2,305]	2,133	1,042	
2004	법률개정 지급대상변경	04년 4월부터 초등학교 3학년 수료전		첫째, 둘째 :5,000 셋째이후 10,000			9,645	5,933 (391) [3,881]	3,021	1,040	0.9
2005						596.3 (780.0)	9,604	6,249 (378) [4,238]	3,157	1,023	
2006	법률개정 지급대상변경 국가부담금의 재검토	06년 4월부터 초등학교 수료전					12,993	8,069 (179) [6,340]	2,418	1,111	
2007	법률개정 수당월액의증액 (3세미만 : 1만엔)		07.4월	3세 미만 :10,000 3세이상 첫째, 둘째 :5,000 셋째이후 10,000		780.0 (860.0)	12,980	9,751 (231) [6,691]	2,749	1,761	

주: [] 은 특례급부임.
자료 : 후생노동성 내부자료

(4) 운용 현황

2007년 아동수당 및 특례급부의 수급자는 9,273,566명, 지급대상 아동수는 12,993,353명이었다. 이 중 아동수당 수급자는 2,648,054명(28.7%), 특례급부 수급자는 98,841명(1.1%), 초등학교 수료 전 특례급부 수급자는 6,526,671명(70.3%)이었다. 2006년도 아동수당 및 특례급부의 지급총액은 806,905,487,000엔(약 10조원)으로, 이 중 아동수당에 191,998,463,000엔(23.8%; 약 2조 4천억 원), 특례급부에 11,670,903,000엔(1.4%; 약 1천 4백억 원), 초등학교 수료 전 특례급부에 603,236,121,000엔(74.8%; 약 7조 5천억 원)이 지급되었다.

근로자는 6,104,240명(전체 수급자의 67.8%)이 아동수당 및 특례급부를 지급받

았으며 그 규모는 524,363,035,000엔(전체 지급액의 65.0%; 약 6조 5천억 원)이었다. 자영업자는 2,361,173명(3.9%)이 210,035,544,000엔(26.0%; 약 2조 6천억 원)을 지급받았으며, 공무원은 808,153명(8.7%)이 72,506,908,000엔(9.0%; 9천억 원)을 지급받았다.

〈표 4-8〉 일본의 아동수당 및 특례급부 운용현황(2006)

		(단위, 명, 천엔)		
		수급자수	지급대상아동수	지급총액
전체	계	9,273,566	12,993,353	806,905,487
	아동수당	2,648,054	2,947,260	191,998,463
	특례급부	98,841	109,064	11,670,903
	초등학교수료전특례급부	6,526,671	9,937,029	603,236,121
근로자	계	6,104,240	8,499,261	524,363,035
	아동수당	1,789,718	1,978,105	127,552,090
	특례급부	70,157	76,352	8,479,305
	초등학교수료전특례급부	4,244,365	6,444,804	388,331,640
자영업자	계	2,361,173	3,318,916	210,035,544
	아동수당	643,902	723,432	49,824,190
	초등학교수료전특례급부	1,717,271	2,595,484	160,211,354
	공무원	808,153	1,175,176	72,506,908
공무원	계	808,153	1,175,176	72,506,908
	아동수당	214,434	245,723	14,622,183
	특례급부	28,684	32,712	3,191,598
	초등학교수료전특례급부	565,035	896,741	54,693,127

주: 수급자수와 지급대상 아동 수는 2007년 2월 말 자료이며, 지급총액은 2006년 자료임.
 자료: 아동수당사무매뉴얼, 아동수당제도연구회 감수. 중앙법규 (兒童手當事務マニュアル, 中央法規)

2) 아동부양수당

아동부양수당은 아버지와 생계를 공유하지 않거나 그 아버지의 수입이 일정 수준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18세 미만의 아동을 부양하는 모나 생계를 같이하며 양육하는 자에게 가정의 생활 안정과 자율 촉진을 위해 지급되는 현금 급여이다. 아버지가 부재하는 경우에 경제적 불안정을 없애는 목적으로 1961년에 도입되었다. 일본은 남성을 생계책임자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아동부양수당은 부자가정에는 지급되지 않는다. 2002년과 2003년에 아동부양수당제도의 개혁이 있어, 지급범위는 확대되었지만 전액지급 요건을 어렵게 하여, 전체 지급액을 감소시키고자 하였다.

20세 미만의 장애아를 기르고 있는 가정에 지급되는 아동부양수당도 있는데, 지

급받는 가구 수가 많지는 않다. 처음에는 중도정신박약아 부양수당으로 1964년에 시작되었으나, 지급범위가 확대되어, 정신 및 신체장애가 있는 20세 미만의 장애아를 보호하고 있는 부, 모 및 기타 양육자에게 지급된다.

(1) 수급자 선정기준

부모가 이혼을 한 경우, 부가 사망한 경우, 부가 장애의 상태에 있는 경우, 부의 생사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부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유기되고 있는 경우, 부가 계속해서 1년 이상 구금되고 있는 경우, 혼인을 하지 않은 경우 생존해 있는 부로부터 양육을 받지 않는 경우, 모가 아동을 출생한 당시의 사정이 불명확한 경우에 지급대상아동이 된다.

다만, 부의 사망으로 공적연금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어머니 또는 양육자가 노령 복지 연금을 제외한 공적연금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아동이 공적 연금의 수급대상이 되는 경우, 아동이 아동복지시설에 거주하는 경우, 양육자의 전년 소득이 일정액 이상일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개정 이후, 급여의 소득제한 한도액의 산정 방법이 변경되어, 양육자의 소득에 부모부터 받은 양육비의 80%가 포함되어 산정되고, 어머니가 수급자가 되는 경우 종래 적용되던 미망인 특별공제는 적용되지 않게 되었다.

(2) 급여 내용

아동부양수당의 급여는 ‘전액 지급’과 ‘일부 지급’의 두 가지로 나누어지며, 이에 대한 소득제한 한도액도 달라진다. 전액 지급의 경우, 아동이 한 명일 경우 월 42,370엔(약 56만원)이, 아동이 두 명일 경우 월 47,470엔(약 63만원)이, 여기에 아동이 한 명 추가될 때마다 5,000엔(약 4만원)씩이 추가로 지급된다. 전액 지급의 소득제한 한도액은 1,300(약100엔(약 11,28만원)이다. 월 1,300(약100엔의 소득이 있을 경우, 급여소득 공제액수 0엔0(약100엔(약 864만원)을 제외하고, 일률 공제되는 사회보험료 8만엔(약 106만원)이 공제되고 나면 5,500(약100엔(약 758만원)이 전액 지급의 소득제한 한도액이 된다. 일부 지급의 지급액은 전액 지급액으로부터 단계적으로 감액되어 월 42,360엔(약 56만원) ~ 월 10,000엔(약 13만원)이 지급된다. 일부 지급의 소득 제한 한도액은 1,300,000엔 ~ 3,650,000엔(약 4,853만원) 사이이다.

〈표 4-9〉 일본의 아동부양수당 소득제한 한도액

(단위 : 만 엔)

부양가족 수	수급자격자 본인		배우자, 부양의무자, 고아 등의 양육자
	전부지급	일부지급	
0명	19	192	236
1명	57	230	274
2명	95	268	312
3명	133	306	350
4명	171	344	388
5명 이상	1인당 38만엔 가산	1인당 38만엔 가산	1인당 38만엔 가산

주: 전년도에 연간소득을 기준으로 함.

자료: 후생노동성 내부자료

특별아동부양수당은 중증 장애(건강보험증 A, 신체장애 보험증 1급·2급 정도)인 경우 월 51,550엔(월 68만원)이 지급되고, 보통(건강보험증 B, 신체장애 보험증 3급 정도)의 경우 34,330엔(월 46만원)이 지급된다. 이때 소득제한 한도액은 4인 세대의 경우 7,707,000엔(약 10,246만원), 6인 세대의 경우 9,542,000엔(약 12,686만원)이다.

〈표 4-10〉 일본의 아동부양수당 월 급여액

(단위: 엔)

	전부지급	일부지급
아동부양수당액	월 41,720엔	월 41,710엔 ~ 월 9,850엔
가산액	둘째자녀	월 5,000엔
	셋째자녀부터 자녀 1인당	월 3,000엔

출처: 후생노동성 내부자료

3) 아동육성수당

아동육성수당은 동경도에서만 지급되고 있는 지자체 사업으로, 정부의 아동수당등과 중복수여가 가능하다. 18세 미만의 부 또는 모가 사망한 아동·부 또는 모에 의해 1년 이상 유기된 아동·부모가 이혼한 아동·부 또는 모가 법령에 의해 1년 이상 구금되어 있는 아동·부 또는 모가 심한 장애가 있는 아동·혼외출생 아동·부

또는 모의 생사가 불분명한 아동에게 지급되는 육성수당과, 20세 미만의 심신에 장애가 있는 지적장애로 사랑수첩(愛の手帳)의 1,2,3도 정도에 해당하는 아동·신체장애로 신체장애자수첩(身體障礙者手帳)의 1,2급 정도에 해당하는 아동·뇌성마비 또는 진행성근위축증을 앓고 있는 아동에게 지급되는 장애수당을 동경도에서는 아동수당이나 아동부양수당과 중복하여 지급하고 있다.

아동이 아동복지시설 등에 입소하여 있는 경우, 또는 아동이 부 및 모와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아동이 부 및 부의 배우자 또는 모 및 모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청구자가 전년도에 소득이 일정액 이상인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아동육성수당 지급액은 육성수당이 한 아동 당 월 13,렙 같이 해 18만원), 장애수당이 한 아동 당 월 15,500엔(약 21만원)이며, 2월, 6월, 10월에 해당 월 전월까지의 월 급여를 합산하여 지급받는다.

〈표 4-11〉 아동육성수당의 소득제한한도

(단위 : 만 엔)

부양친족 수	육성수당 · 장애수당	부양친족 수	육성수당 · 장애수당
0명	360.4	3명	474.4
1명	398.4	4명	512.4
2명	436.4	5명 이상	1인당 38만엔 가산

자료: 동경도청 내부자료

4) 기타 수당제도

(1) 출산수당

출산일 이전 42일부터 출산일 후 56일 사이에 출산을 위해 결근하고, 보수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 1일에 표준보수일액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급된다. 보수가 일부 지급되는 경우는 출산수당금과의 차액이 지급된다.

(2) 출산육아일시금 · 가족출산육아일시금

정부관장 건강보험 · 조합관장 건강보험 · 국보 · 각종공제조합 · 선원보험 등에서 본인, 피부양자를 불문하고 한 아동에 38만엔(약 505만원)의 정액이 지급된다.

(3) 육아휴업급부

1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육아휴업을 취득한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휴업을 개시하기 전의 임금액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이 정부관장 건강보험·조합관장 건강보험·국고·고용보험 등에서 지급된다.

다. 재원조달방식

1) 법과 제도적 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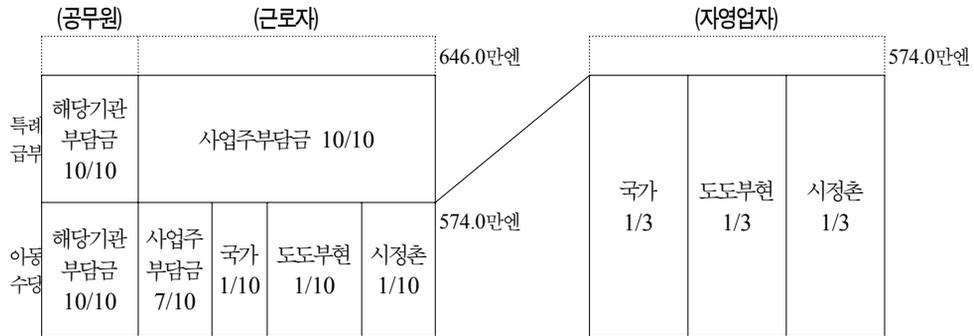
일본의 경우 아동수당 재원은 만 3세 미만과 만 3세 이상에서 초등학교 수료 전 까지로 나눌 수 있다. 만 3세 미만의 수급대상아동에 지급되는 아동수당에 필요한 비용은, 근로자의 경우 70%를 고용주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가 나누어 부담하며, 574만엔의 소득 제한으로 인해 아동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는 근로자의 지급률을 자영업자와 같게 하기 위한 특례급부에 필요한 비용은 고용주가 전액 부담한다. 자영업자 세대의 급여는 중앙 정부와 지방정부가 나누어 부담한다. 공무원 등에 대하여는 소속된 해당기관에서 아동수당에 필요한 비용을 전액 부담한다.

만 3세 이상에서 초등학교 수료 전까지의 수급대상아동에 지급될 아동수당에 필요한 비용은, 모두 정부와 지방정부가 나누어 부담한다. 아동부양수당에 필요한 비용은 정부가 75% 도·도·부·현이 25%를 부담하지만, 행정적인 사무는 시·정·촌에서 담당한다. 특별아동부양수당에 필요한 비용은 정부가 전액 부담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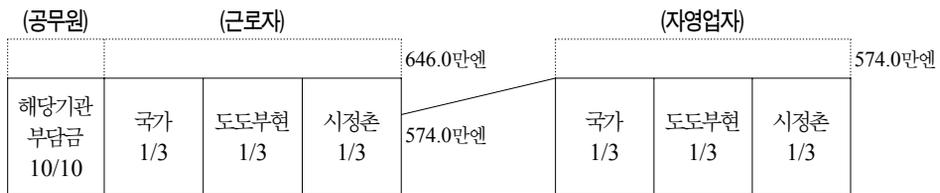
사업주 부담금은 후생연금적용사무소와 사회보험 운영기관을 거쳐 연금특별회계 아동수당재정으로 수납되며, 기타 단체의 부담금은 해당 법인을 거쳐 역시 아동수당 재정으로 수납된다. 여기에서 필요한 행정비용이 지급되며, 아동수당의 지급에 관련된 부분은 도·도·부·현의 회계관리자를 거쳐 시·정·촌 사업소를 통해 수급자에게 전달된다. 공무원특례 등을 포함한 특례급부는 연금특별회계를 거치지 않고 직접 수급자에게 지급된다.

[그림 4-1] 일본의 아동수당 재원조달 방식

0세 ~ 만 3세 미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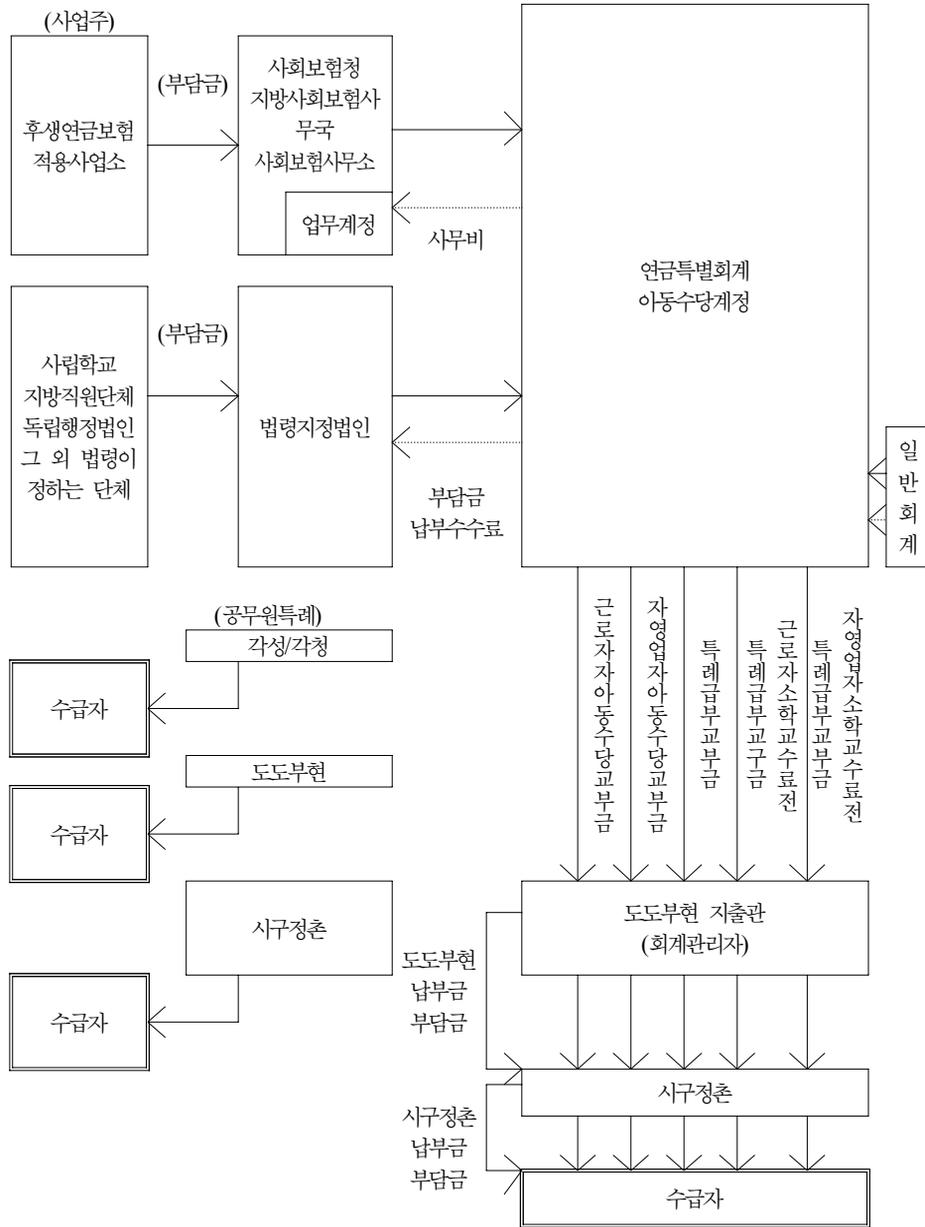


만 3세 ~ 초등학교졸업 전



자료: 아동수당사무매뉴얼, 아동수당제도연구회 감수. 중앙법규 (兒童手當事務マニュアル, 中央法規)

[그림 4-2] 일본의 아동수당 교부금 등에 관한 회계조직



출처 : 후생노동성 내부자료

고용주 부담액은 대상자의 유형과 급부유형에 따라 후생연금보험법, 사립학교 교직원 공제법, 농림어업단체 직원공제조합법, 지방공무원 공제조합법등의 법률에 근거하여 규정된다. 근로자의 경우를 예를 들면 후생연금보험법에서 정하는 표준보수월액에 표준상여액 비율을 곱한 금액을 부담금으로 한다. 부담금 비율은 매년도 근로자에 대한 이동수당 지급에 필요한 비용 예상총액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그 해 부과표준 예상총액을 공제한 비율과, 이동육성사업에 필요한 비용 중 부담금으로 충당할 금액의 예정액에서 그 해의 부과표준 예상총액을 공제한 비율을 더하여 결정한다.

〈표 4-12〉 일본의 고용주 부담액 부과표준

관련법	후생연금보험법	사립학교 교직원공제법	농림어업단체 직원공제조합법	지방공무원등 공제조합법	국가공무원 공제조합법
급여기준액	표준보수월액	표준급여의 월액	표준급여의 월액	급료의 액	표준보수의 월액
	표준상여액	표준상여액	표준상여액	기말 수당 등의 액	표준기말 수당 등의 액

2) 관련 세제

2000년대에 일본 역시 이동수당의 지급대상 연령을 3세 미만에서 의무교육취학 전으로 대폭 확대하면서 관련 세제도 변화하였다. 1999년에는 소득한도액이 381만엔에서 432만엔으로 증가하고, 2000년에는 지급대상 연령이 확대됨에 따라 대상자 수도 1999년의 2,407천명에서 5,781천명으로 대폭확대 되었다. 이에 따른 재원마련을 위해 소득세제에 있어서 연소자 부양공제의 부분적폐지, 배우자 특별공제 폐지가 수반되었다.

2006년 1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부모에 대한 소득세의 연소자 부양공제를 자녀 1인당 연 48만엔(약 637만원)에서 38만엔(약 504만원)으로 10만엔 인하하면서 아동수당의 대상을 초등학교 3학년에서 초등학교 6학년까지 확대하였다. 공제가 축소되면서 소득세를 계산하는 기준 과세 대상액이 증가하여, 아동수당 지급연령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정이나 아동수당의 지급을 받을 수 없는 가정의 부담은 증가되었다.

일본의 소득세법에 의하면 배우자가 전업주부이거나 연간수입이 103만엔(약 1,368만원) 이하 또는 140만엔(약 1,859만원) 이하인 경우, 남성은 배우자공제와 배우자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배우자특별공제는 1987년에 도입된 것으로 배우자공제와 달리 적용자에게 연간 1,000만엔(약 13,279만원) 이하라는 소득 제한이 있지만 배우자특별공제로서 38만엔(약 504만원)이 추가로 공제되어 합계 76만엔(약 1,009만원)을 공제하였던 제도이다. 이 중 배우자특별공제가 2004년부터 폐지되어 이에 따른 재원 증가분이 아동수당의 기간 연장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다.

〈표 4-13〉 일본의 인적소득공제제도

(단위: 엔)

항목		소득공제액
기초공제		380,000
배우자공제	공제대상배우자	380,000
	노인공제대상배우자(70세 이상)	480,000
부양공제	부양친족	380,000
	특정부양친족(16세이상 23세미만)	630,000
	노인부양친족(70세이상)	480,000
	동거노친 등 가산 동거특별장애자 가산	+100,000 +350,000
장애자, 과부, 노동학생공제		270,000
특별장애자		400,000
특별과부 가산		+80,000
배우자특별공제	배우자의 합계소득금액	공제액
	1,030,000 미만	380,000
	1,030,000 ~ 1,100,000	360,000
	1,100,000 ~ 1,150,000	310,000
	1,150,000 ~ 1,200,000	260,000
	1,200,000 ~ 1,250,000	210,000
	1,250,000 ~ 1,300,000	160,000
	1,300,000 ~ 1,350,000	110,000
	1,350,000 ~ 1,400,000	60,000
	1,400,000 ~ 1,410,000	30,000
	1,410,000 이상	0

자료: 第133回国稅廳統計年報(平成19年度[2007]版), 國稅廳 (<http://www.nta.go.jp>); 일본의 세제 2008년도, 재정정보사 (日本の稅制 平成20年度版, 財經詳報社).

〈표 4-14〉 일본의 특별소득공제제도

(단위: 엔)

항 목		소득공제액	
잡손공제(deduction for casualty losses)		다음 중 액수가 더 큰 쪽을 선택. (1) 재해 등의 손실액에서 총 소득액등의 10%를 초과하는 금액. (2) 재해관련지출의 금액에서 50,000엔을 초과하는 금액.	
의료비공제		지출한 의료비에서 100,000엔과 총 소득액 등의 5%를 공제한 금액. (최대 : 2,000,000엔)	
생명보험료공제	일반생명보험료	25,000엔 이하	전액
		25,000엔 ~ 50,000엔	지불보험료*1/2 + 12,500
		50,000엔 초과	지불보험료*1/4 + 25,000 (최대 50,000엔)
	개인연금보험료		상동
	위의 두 가지를 모두 지불하였을 때		두 공제액의 합
사회보험료공제		전액	
지진보험료공제	지진보험료	50,000엔 이하	전액
		50,000엔 초과	50,000
	구장기손해보험료	10,000엔 이하	전액
		10,001엔 ~ 20,000엔	지불보험료*1/2 + 5,000
		20,000엔 초과	15,000
위의 두 가지를 모두 지불하였을 때		두 공제액의 합	
소규모기업공제등보험료공제		지불한 소규모기업공제보험료, 특정거출연금법의개인형연금가입자보험료 및 심신장애자부양공제보험료 등의 합	
장애자, 과부(寡婦),과부(寡夫), 노동학생공제			270,000
	특별장애자		400,000
	특정과부(寡婦)		350,000
기부금공제		특정기부금의 금액과 총 소득액 등의 40% 중 작은 쪽의 금액을 5,000엔 한도 내에서 지급	

자료: 第133回国稅廳統計年報(平成19年度[2007]版),國稅廳 (<http://www.nta.go.jp>); 일본의 세제 2008년도, 재정상보사 (日本の税制 平成20年度版, 財経詳報社).

3) 재정

2006년에 지급된 아동수당 지급액 총액인 8,069억엔(약 10조 9000억원)은 2004년에 비하여 2,136억엔(△36.25%, 약 2조 8600억원) 증가한 액수이다. 아동수당 지급에 필요한 비용은 고용주가 1,111억엔(13.76%, 약 1조 4900억원), 중앙정부가

2,418억엔(30%, 약 3조 2350억엔), 도·도·부·현/시·정·촌의 지방정부가 4,540억엔(56.26%, 약 6조 0740억엔)을 부담하였다. [그림 4-3] 에서와 같이 아동수당을 포함한 아동복지에 관련된 예산은 2000년 이후 매년 약 90억엔(약 1,200억엔)에 달하며, 예산총액은 2006년에 급격히 감소하였다가 다시 증가하고 있다. 1975년부터 2006년까지, 아동수당을 포함하여 아동에 대해 지급되는 사회보장비용은 위에서 언급한 바 있는 아동부양수당과, 아동복지서비스의 형태로 지급되는 비용, 육아휴직 및 출산전후휴직에 지급되는 수당 등으로 그 금액의 합계와 연간증가율 및 전체 사회보장비용 중의 비율이 <표 4-15> 에 제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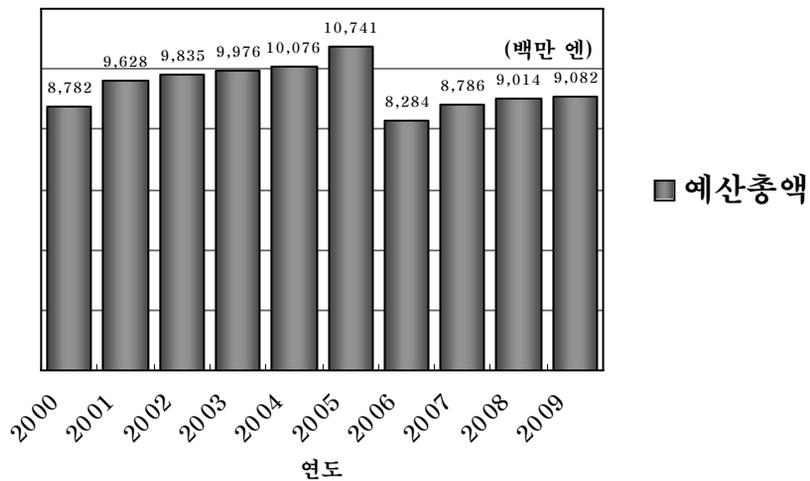
<표 4-15> ILO기준에 따른 아동수당 부담액과 지급액(2006)

(단위 : 만 엔)

부담액		지급액	
고용주부담	210,108	아동수당	808,401
정부부담	227,047	기타 의료비용	67,410
지방정부부담	470,535	행정비용	1,988
기타 수입	3,175	기타 지출	6,454
합계	910,865	합계	884,254

자료: ILO 홈페이지(<http://www.ipss.go.jp/ss-cost/e/cost06/data/cost2006.pdf>)

[그림 4-3] 2000년 ~ 2009년 일본 아동복지관계 예산



자료 : 후생노동성 내부자료

〈표 4-16〉 1975부터 2006년까지의 아동과 가족에 대한 사회보장비용

(단위: 억엔, %)

연도	가족 수당			아동 복지 서비스	육아 휴직 수당	소계	산·전후 수당	합계	연간 증가율	사회보장 비용 중 비율
	가족 수당	아동 수당	아동 부양수당							
1975	1,829	1,444	385	3,549	-	5,378	1,229	6,607	-	5.6
1976	2,333	1,691	642	4,258	-	6,591	915	7,506	13.6	5.2
1977	2,509	1,695	814	4,802	-	7,311	1,702	9,013	20.1	5.3
1978	2,834	1,719	1,114	5,243	-	8,076	1,683	9,759	8.3	4.9
1979	3,180	1,785	1,396	5,744	-	8,925	1,668	10,593	8.5	4.8
1980	3,560	1,778	1,782	5,998	-	9,558	1,639	11,197	5.7	4.5
1981	3,790	1,641	2,149	6,225	-	10,015	2,149	12,164	6.6	4.4
1982	4,109	1,660	2,449	6,386	-	10,495	2,240	12,735	4.7	4.2
1983	4,365	1,650	2,715	6,138	-	10,503	2,260	12,763	0.2	4.0
1984	4,544	1,637	2,908	6,408	-	10,953	2,641	13,594	6.5	4.0
1985	4,617	1,589	3,027	6,836	-	11,452	3,060	14,512	6.8	4.1
1986	4,604	1,605	3,000	7,635	-	12,240	3,161	15,401	6.1	4.0
1987	4,574	1,558	3,016	7,358	-	11,932	3,150	15,082	2.1	3.7
1988	4,500	1,488	3,012	7,555	-	12,055	3,105	15,160	0.5	3.6
1989	4,465	1,454	3,011	8,048	-	12,513	2,990	15,503	2.3	3.5
1990	4,449	1,391	3,059	8,532	-	12,982	3,005	15,987	3.1	3.4
1991	4,439	1,381	3,058	9,327	-	13,766	3,104	16,870	5.5	3.4
1992	5,267	2,173	3,094	9,691	-	14,958	3,692	18,650	10.6	3.5
1993	5,072	1,942	3,130	10,424	6	15,502	3,775	19,277	3.4	3.4
1994	4,928	1,710	3,218	10,768	5	15,701	4,224	19,925	3.4	3.3
1995	5,112	1,612	3,500	11,177	327	16,616	4,497	21,113	6.0	3.3
1996	5,201	1,536	3,666	13,312	507	19,021	4,594	23,615	11.8	3.5
1997	5,304	1,497	3,807	12,809	559	18,672	4,586	23,258	1.5	3.4
1998	5,370	1,488	3,885	13,336	603	19,312	4,687	23,999	3.2	3.3
1999	5,524	1,547	3,977	14,188	643	20,355	4,617	24,972	4.1	3.3
2000	7,116	2,917	4,199	14,963	721	22,800	4,618	27,418	9.8	3.5
2001	8,574	4,062	4,512	15,876	1,078	25,528	4,606	30,134	9.9	3.7
2002	8,964	4,315	4,649	16,788	1,241	26,993	4,543	31,536	4.6	3.8
2003	9,158	4,365	4,792	16,724	1,304	27,185	4,440	31,625	0.4	3.8
2004	11,236	5,909	5,327	17,180	1,370	29,786	4,443	34,229	6.2	4.0
2005	11,579	6,300	5,279	18,268	1,428	31,275	4,363	35,638	4.1	4.2
2006	13,512	8,084	5,428	15,674	1,487	30,673	4,718	35,391	0.7	4.0

제3절 세입유형별 자원조달방안

일반적으로 보아 재정지출의 자원조달방안은 세입유형별로 크게 조세, 사회보험료, 국채로 분류할 수 있다. 조세체제를 통한 방안은 세율인상과 세원확대를 통해 추가적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 세원확대 방안은 매우 다양하나 비과세감면제도 등의 조세지출제도의 개선, 소득공제제도의 개선, 세원투명성 제고를 통한 세원확대가 가능하며, 목적세의 신설등을 통하여서도 가능하며, sin tax 강화, 개별소비세 인상등의 방안이 있다. 한편, 사회보험제도를 통한 방안은 육아보험과 같은 사회보험을 신설하거나 기존의 사회보험료 인상, 일본식의 이동수당 고용주각출금을 통한 세입의 증대를 들 수 있다.

가. 조세를 통한 자원조달

1) 소득공제제도 및 비과세감면제도 등의 조세지출제도의 개선

각종 비과세, 저율과세, 세액감면,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 등의 조세지출제도를 정비하고 추가적인 비과세·감면제도의 신설을 억제하여 확보한 세입을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조세지출은 감추어진 보조금의 역할을 함으로 조세제도 안에 조세지출이 많이 포함될 경우 재정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져 있다. 복잡한 조세감면제도는 조세체계를 왜곡하게 되고, 명목세율과 실효세율간의 차이를 초래하여 효율성을 저해하게 된다. 또한 조세지출은 특혜성 보조금 지급으로 호를 가능성이 많고, 취지와는 달리 주로 고소득층에 의해 활용이 되고 있으므로, 역전된 보조의 성격을 띄게 될 수도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8년 현재 총 189개의 조세지출항목에 대한 조세감면제도가 운용되고 있으며, 총 조세감면액 규모는 29조 6,321억원으로 잠정 집계되고 있다. 현행 조세감면제도의 범위는 주로 근로자 및 농어민 등 서민층지원, 중소기업과 R&D 및 설비투자지원, 교육, 문화, 환경 및 사회보장 지원, 국방 및 일반행정 지원 등으로 나뉘지고 있는데, 특정사항에 대해 조세감면이 집중화되고 기득권화되는 경향이 있다.

이에 정부는 조세지출에 대한 일몰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나 일몰이 도래한 후에도 폐지되지 않고 지속되는 등 항구화 기득권화 현상이 보이고 있다.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일몰이 도래한 조세지출 178개 사항중 48개항만이 폐지되었을 뿐이며, 2006년부터 2008년까지도 37개항만이 폐지되었을 뿐이다. 이렇듯, 부단한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조세감면의 규모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조세지출제도를 정비하려고 하여도, 현실적으로 감면제도의 타당성이나 지원달성여부를 분별하기는 쉽지 않다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축소보다는 확대유인이 더 강한 항목이 있을 수 있어 축소에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고, 이해당사자들의 저항이 심할 수 있다는 어려움이 있다.

〈표 4-17〉 조세감면액 추이

(단위: 조원)

구 분	' 04년	' 05년	' 06년	' 07년	' 08년 (잠정)	' 09년 (추정)*
조세감면액	18.2	20.0	21.3	23.0	29.6	28.6
조세감면율	13.4	13.6	13.4	12.5	15.1	13.9
고유가대책 제외시			13.4	12.5	13.6	13.9

주: 조세감면율= 조세감면액 ÷ (조세수입 총액 + 조세감면액)

2) 목적세 신설

목적세는 특정세입과 재정사업지출을 연계하는 것으로, 광범위한 의미에서는 사회보험료도 사회보장세라는 목적세로 간주될 수도 있다. 프랑스의 가족수당 재원으로 활용되는 사회기여금(CSG)은 소득에 부과되어 기금을 형성하는 목적세라고 볼 수 있다. 원론적으로 볼 때 목적세는 특정 세입과 수혜자 연계성이 큰 경우 형평성과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다. 목적세가 재원조달 수단으로서 보다 타당하다고 보는 것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이다. 첫째, 정권이 바뀌더라도 다음정부가 해당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는 등 정치경제적 측면에서 타당성이 있다. 둘째, 목적세는 기타 조세에 비하여 재정지출과 세입이 연계되므로, 비교적 모니터링이 용이한 장점이 있다. 셋째, 사회보장지출등 사회통합을 위해 필요한 지출에

대하여 필요 불가결한 최저한의 재원이 보장될 수 있고, 사업의 계속성이 비교적 잘 보장될 수 있다. 넷째, 새로운 조세의 도입이나 기존조세의 세율인상에 대한 조세저항이 일반조세의 경우보다 크지 않아 현실적인 용이성이 있다.

반면, 목적세는 예산 운영의 경직성, 복잡성 등을 유발하고, 일반조세의 경우에 비해 전체적인 정부재정규모가 팽창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는 목적세의 신설 등으로 정부 세입이 다원화될수록 소비자개인들의 정부재정활동에 대한 비용과 편익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흐려지는 재정환상(fiscal illusion)현상이 심화됨으로써 정부재정의 팽창이 야기될 수 있음에 기인한다.

명분이 있는 적정 세목에 사회보장세와 같은 목적세를 부과하는 경우 효율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으며 조세저항도 분산 가능성이 가능하다. 한편, 아동의 건전육성, 출산장려등 아동수당의 정책목표와 명백한 연계성을 납득시키기 어려운 경우 조세저항이 우려된다. 사회보장세를 부과하는 경우 적정 세목으로 담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담배세의 경우, 흡연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피해를 줄이고 담배소비를 억제하기 위한 담배세 인상의 필요성이 있다. 담배세 인상은 흡연자에게 흡연의 외부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부담하게 하며, 흡연의 감소와 담배부담금의 건강증진사업에의 사용으로 인한 건강증진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담배가격은 담배가격 인상을 권고하고 있는 WHO의 담배규제 기본협약과 더불어 흡연을 감소를 위한 담배가격 인상에 대한 수차례의 논의 끝에 인상되었으나 여전히 낮은수준으로 논의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담배소비세는 62%로, OECD평균인 70.35%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현재 우리나라 담배소비세수는 2007년 기준 약 2조 7천억원이며, 이외에 담배에 부과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약 1조 5,753억원이다.

나. 사회보험제도를 통한 재원조달

사회보험을 신설하여 아동수당을 비롯하여 아동양육에 관한 재반 사업의 재원마련할 수 있다. 스웨덴의 부모보험(parental insurance)은 출산후 휴가기간 및 육아기간중 아동의 질병이나 보호자의 질병에 의한 휴가기간 동안의 휴가상실의 80%를 지불하는 등의 혜택을 제공하며, 이에 대한 재원은 고용주가 부담하는 보험금으로 충당한다. 사회보험형 아동수당의 경우는 낳는 아님 사회보험료로 재원을 충당하

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사회보험방식으로 갈 경우 이동양육에 대한 사회적 연대에 도움이 되고, 지원 대상불하선정의 어려움을 피할 수 있다. 또 부처별, 제도별로 분산된 프로그램을 통합하여 일관성 있는 양육지원 정책의 수립과 운영이 가능하다. 반면, 새로운 사회보험으로 인한 국민부담의 증가에 대한 심리적 저항이 발생할 수 있다.

사회보험제도 신설이외에도 기존 사회보험료의 일부를 아동수당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해외의 사례를 보면 고용보험이나 연금보험의 고용주 부담분의 일부를 아동 및 가족수당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경우도 볼 수 있다. 포르투갈의 경우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아동수당의 재원으로 활용하며, 프랑스의 경우도 고용보험의 일부를 가족수당의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일본은 고용주가 급여의 일부를 고용주 각출금으로 아동수당의 재원을 마련하고 있는데, 이 고용주 각출금은 근로자가 아닌 일반 대상자도 포함하는 유형의 사회보험료로 간주될 수 있다.

다. 국채발행

조세평준화(tax smoothing)이론에 의하면, 한꺼번에 세율을 올려서 재정지출의 증가에 따른 재원을 마련하는 것보다는, 세율을 점진적으로 인상하며 단기적인 재정적지를 운영하는 것이 조세로 인한 왜곡과 손실을 줄이며 보다 효율적일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추가적인 재원조달을 위해 단기적으로 국채를 발행하는 것이 타당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국채발행에 의한 재원 조달은 재정사업의 수혜자가 현재세대보다는 미래의 세대일 경우 수혜자 부담원칙에 입각하여 그 타당성이 인정되고 있다. 반면 국채발행은 민간부분 투자에 구축효과를 일으켜 이자율을 상승시키고 민간부분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으며, 국제수지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일반적으로 실업률이 낮고 경기가 좋을 때는 추가적인 정부의 지출은 인플레이션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세율을 인상하여 민간의 소비를 위축시킬 필요가 있다. 반대로 실업률이 높고 불경기인 경우는 국채를 발행하여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좋을 수 있다. 현실적으로 재정의 안정성이 높다면 국채발행을 통한 적자 재정도 무리가 없다. 사회보장성 보험 수지를 제외한 통합재정 수지상 GDP 대비 1% 수준의 적자국채(약 8조원)의 발행은 재정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제4절 이동 양육지원 세제감면의 해외사례

가. 미국

미국의 경우 이동양육지원요인과 관련이 있는 소득세제상의 제도는 크게 부양자수에 따른 소득공제인 인적공제 (exemptions)와 자녀수에 따른 자녀세액공제(child tax credit) 및 부양비세액공제(credit for child and dependent care expenses)와 교육비세액공제(education credit)가 있다. 미국의 경우 소득세제상의 자녀 및 부양비(cred세제혜택이 주로 소득공제의 형태보다는 세액공제의 형태로 제공되고 있다는 것이 대부분 소득공제의 형태로 조세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나라와 다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1) 인적소득공제(exemptions)

미국 소득세제하에서는 총소득(adjusted gross income, AGI)에서 본인 및 배우자, 그리고 부양가족수에 따른 인적소득공제를 제한 후 과표기준이 책정된다. 인적공제는 우리나라의 기본공제와 비슷하나, 고소득층에 대하여 단계적으로 낮은 공제액을 허용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가구원수에 따라 일인당 \$3,300의 소득공제를 허용하고 있는데, 만약 총소득(AGI)이 \$112,875(부부가 따로 세금보고를 하는 경우, 2006년 기준)을 넘는 가정에 대하여는 각각 공제액의 차등을 두고 있다.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피부양자 조건은 납세자와 인척관계에 있거나 동거인이어야 하고, 납세자가 피부양자를 위한 경비를 50%이상 지출하여야 한다. 19세 이상이나 24세 이하의 학생이 아닌 피부양자의 총소득이 인적공제액(3,300달러)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2) 자녀세액공제 (child tax credit)

미국의 경우 세액공제는 환급이 가능한 세액공제와 환급되지 않는 세액공제로 구별되는데, 환급되는 세액공제의 경우는 공제액이 과세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이 환

불되는 것이고, 환급되지 않는 세액공제는 초과분 환불이 되지 않는 것이다. 자녀세액공제는 공제액이 과세액을 초과하더라도 초과분 환불이 되지 않는다. 자녀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요건은 미국시민의 자녀가 17세 이하여야 하고 미혼이며, 맞벌이 부부의 경우 한쪽 배우자만의 부양인으로 등록되어야 한다. 자격요건이 되는 자녀 1인당 \$1,000 (2006년 기준)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이 자녀세액공제는 부부합산의 경우 \$110,000까지의 소득, 독신자의 경우는 \$75,000달러까지의 소득에, 부부가 따로 세금보고를 하는 경우는 \$55,000달러까지의 소득에 대하여 적용되고, 이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소득에 대하여서는 1,000달러당 50달러 씩 혜택이 줄어든다.

3) 부양비 세액공제 (child and dependent care credit)

자녀나 부양자를 위하여 지불하는 보육비등의 비용은 세액 공제의 대상이 된다. 부양비 세액공제는 13세 이하의 자녀나 일할 능력이 없는 배우자나 일할 능력이 없는 부양인에 대하여, 가정 유지를 위하여 최소 50%의 비용을 능하는 경우에 자격요건이 된다.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비용은 가정관리, 간호, 요리, 탁아 비용이나 혹은 6명 이상을 돌보는 탁아소 위탁 비용에 한한다. 부양가족 1인당 \$3,000, 2인 이상은 \$6,000 달러 한도내에서 위탁비용의 35%가 허용된다. 근로소득보다 많은 위탁비용은 인정되지 않는데, 맞벌이 부부의 경우는 소득이 적은 편이 근로소득보다 위탁비용이 큰 것은 인정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회사에서 자녀위탁을 위한 대하금을 따로 받았을 경우, 이중 최대 \$5,000까지는 총소득(AGI)에서 공제를 할 수가 있는데, 이중혜택을 방지하기 위하여 회사지원금액은 세액공제에서 감하도록 되어있다.

부양비 세액공제는 누진적으로 설계되어 있는데 총소득(AGI)이 \$15,000를 초과하는 경우는 초과분의 \$2,000달러당 1%씩 세액공제액이 감소하도록 되어 있다. 최소 공제비율은 20%로서 총소득(AGI)이 \$43,000를 초과하는 사람은 20%를 적용받는다.

4) 교육비 세액공제 (education credit)

부양자녀를 위한 교육비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교육비 공제는 HOPE credit라

는 프로그램과 Lifetime learning credit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HOPE program은 중등교육 이상의 학비에 대하여 교육과정 첫 2년간 2006년 기준 \$1,650 까지 세액공제를 받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교육비관련 제반경비의 \$10,000까지에 한하여 교육경비의 20%를 lifetime learning credit로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5) 근로세액공제(EITC)

근로세액공제는 세액공제액이 근로소득을 초과하였을 경우라도 환급이 가능한 세액공제의 유형이다. 근로세액공제는 저소득층의 근로욕구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따라 세액공제를 하여주는데, 이때 자녀수에 따라 공제 가능한 근로소득의 상한선 및 잠정 세액이 틀려지기 때문에 부양자녀수와 관련한 세제로 다루기로 한다. 세액공제의 혜택은 근로소득과 총소득(AGI)을 기준으로 자녀가 있는 개인과 일부 독신자에게 주어지는데, 자격요건이 되려면, 납세자와 반년 이상 같이 거주한 19세 이하의 자녀나 손자이어야 한다. 학생의 경우라면 24세 이하까지 자녀로 분류되고, 불구자 자녀가 있는 경우는 나이에 제한 없이 부양자로 인정된다. 자녀가 없는 경우는 미국 내에서 반년 이상 거주하고 25-64세로 다른 사람의 부양가족이 아니면 자격이 주어진다.

근로소득 세액공제 금액은 자녀의 수에 따라 다른 비율로 적용되 세액공제금액이 달라지는데, 2003년의 경우 자녀가 한명도 없는 경우는 4,990달러의 소득액까지 7.65%의 비율로 세액공제를 받고, 1명인 경우 7,490달러의 소득액까지 34%의 비율로 세액공제를 받도록 하고 2명이상인 경우 10,510달러까지의 소득액에 대하여 40%의 세액공제를 받도록 하고 있다.

〈표 4-18〉 근로소득세액공제 (EITC) 환산표(2003)

(단위: 달러, %)

자녀수	한계비율	공제가능한 최대근로소득	잠정세액공제 '06년도 감면액 (억원)
0	7.65	4,990	382
1	34.0	7,490	2,547
2 ~	40.0	10,510	4,204

자료: K. Murphy and M. Higgins, Concepts in Federal Taxation, 2003 eds, Thomson Co., 2003, US; 한국조세연구원 (2004), 주요국의 조세제도에서 재인용

근로소득세액공제는 근로소득과 총소득(AGI)중 큰 쪽을 기준으로 보아 소득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는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지 않게 된다. 세액의 감축이 발생하는 소득구간과 감축비율 및 소득 상한액은 근로자인지 기타 납세자인지의 여부와 자녀수에 따라 달라지는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표와 같다.

〈표 4-19〉 미국의 초과소득에 따른 근로소득세액공제의 감축(2003)

(단위: 달러, %)

자녀수	감축 출발점	감축비율	감축 종료점
부부합산			
0	7,240	7.65	12,230
1	14,730	15.98	30,666
2~	14,730	21.06	34,692
기타 납세자			
0	6,240	7.65	11,230
1	13,730	15.98	29,666
2~	13,730	21.06	33,692

주: 초과소득에 따른 출발 및 종료점은 근로소득과 조정된 총소득 중 큰 금액임.

자료: K. Murphy and M. Higgins, Concepts in Federal Taxation, 2003 eds, Thomson Co. 2003, US; 한국조세연구원 (2004), 주요국의 조세제도에서 재인용.

나. 영국

영국의 경우는 소득공제에 관한한 엄격하여, 필수불가결한 비용만을 공제한다는 원칙이다. 영국은 부양 아동수에 따른 소득공제가 없는 반면, 세액공제에 있어서는

부양지수에 따른 혜택을 주고 있다. 세액공제는 총소득에서 소득공제항목의 금액을 차감함으로써 일차세액을 구한 뒤 최고소득 세액공제(top slicing relief), 벤처기업 투자조합, 대출금이자, 부부, 배우자 잉여 이전분, 근로여부, 자녀등의 요소를 감안한 조정을 거친다. <표 4-20>에서 볼 수 있듯이 근로세액공제에 있어서 2자녀 이상인 경우 자녀보육비조로 1주당 200파운드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자녀세액공제 자녀당 1,445파운드의 세액공제를 받으며, 장애인 자녀는 2,155파운드의 세액공제를, 그리고 추가 장애인 자녀 1명당 865파운드의 세액공제를 받도록 되어 있다.

<표 4-20> 영국의 근로세액공제 및 자녀세액 공제율과 구간

	항목	파운드/1년
근로세액공제	- 기본요소	1,525
	- 부부요소	1,500
	- 30시간 요소	620
	- 장애근로자 요소	2,040
	- 추가장애근로자 요소	865
	- 자녀보육 요소(최고액, 2자녀이상)	200파운드/1주
자녀세액공제	- 가족 요소	545
	- 자녀 요소	1,445
	- 장애자추가 요소	2,155
	- 추가장애자녀 요소	865
공통특성	- 첫째 소득구간	5,060
	- 둘째 소득구간	50,000

자료: HM Treasury, Budget Report 2003. 조세연구원(2004), 주요국의 조세제도에서 재인용

다. 프랑스

프랑스에서 가족에 대한 소득보장은 ‘수평적 재분배’(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모든 가족에게 부여되는 ‘보편적 수당’) 원칙과 ‘수직적 재분배’(소득여건에 따른 차등 수당액 지급) 원칙에 따른 국가의 개입이 팽팽한 긴장관계를 가지고 있다. 초기에 프랑스의 가족현금지원은 모성을 중심으로 여성을 통합하는 성격을 띠고 있었다. 즉 모성으로서 여성의 역할에 대한 인정과 보상은 가족수당(아동수당)을 중심으로 나타났다. 가족수당은 출산을 장려하려는 정부의 의도와 가족수당과 임금을 분리하여 기업의 임금을 억제하려는 시도, 그리고 페미니스트들이 주장하는 모성임금 주장 등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어우러져 탄생했다. 이후 가족수당은 이동이 있는 가족에 대한 ‘수평적 재분배’의 기능을 갖는 동시에 이동을 양육하는 사람에 대한 사회적 보장의 근거로서 기능하였다(김수정, 2002: 8).

현재 프랑스의 가족수당은 소득세의 과표가 되는 순종합소득을 기준으로 산출된다. 이는 종합소득(revenue net global)에서 각종 비용을 공제한 것이다. 종합소득은 각 소득별 총수입금액(revenu brut)에서 각소득에 해당되는 비용(charges)을 공제한 후 각 소득별 순소득을 합친 것이다. 급여, 부동산임대소득, 양도소득등으로 구성된 간 소득들중 부동산 양도소득은 부양자녀수에 따른 추가공제를 허용하고 있다. 부동산 양도소득은 먼저 기초 공제액으로 930유로가 공제되고, 배우자 공제 3,070유로를 공제받고, 기타 부양가족의 수에 따라 1,530유로를 추가공제 받을 수 있다.

각 소득별 순소득을 합한 종합소득에서 공제될 수 있는 비용들중 아동양육지원 요인과 관련이 있는 항목들은 부양료공제와 특별공제가 있다. 부양료는 노약자 또는 유약자에 대하여 법령이 요구하는 부양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이는 소득공제의 대상이 된다.

라. 독일

독일의 가족현금지원은 조세정의를 실현하여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가족의 능력이 최상으로 발휘될 수 있는 사회경제적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협소한 목적으로 탄생했다. 그러나 보다 광의의 개념으로 자녀가 있는 가족이 무자녀 부부 가족에 비해 사회경제적으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가족유형간의 수평적 소득재분배를 실현하기 위해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1960년대에서 1970년대에 집권한 사민당은 취학전 이동을 대상으로 다양한 계층의 아동들에게 동일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통합적인 제도로써 가족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개별 가족구성원, 특히 아동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정책목표를 설정하였다.

2001년 이후 독일의 가족소득지원프로그램은 아동수당과 세금공제, 자녀 양육비 지원을 중심으로 제공되고 있다. 특히 독일에서 가족의 생활 상황을 개선하고 자녀로 인한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아동수당과 세금공제를 통

칭하여 ‘가족부담조정’으로 부르고 있다. 이는 시장경제원리에 따른 소득분배를 가족 정책적 관점에서 교정하기 위해 재분배를 실현하는 것으로, 첫째 사회 전체를 위한 가족의 기능들을 긍정적으로 인정하고, 둘째 자녀가 없는 부부가구와 자녀를 둔 가족간에 생활 수준의 차이가 지나치게 커지지 않도록 양육비용의 부담을 가능한 한 덜어주고, 셋째 가족 내에서 부양자가 한 사람일 경우에도 최소 생계비를 초과하는 소득을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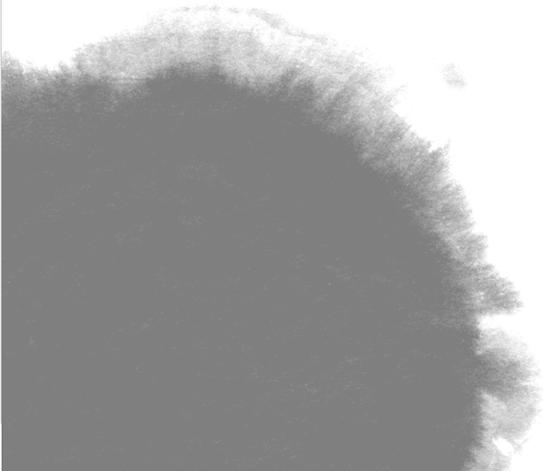
독일의 소득세법 하에서는 원칙적으로 사적인 생활과 관련된 비용의 공제를 허용하고 있지는 않으나, 예외로서 특별지출과 비경상적 부담의 공제를 허용하고 있는 등 엄밀한 의미에서는 이러한 원칙이 고수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소득공제가 허용되는 특별지출은 연금 및 연금형 저축에 대한 불입금, 보험료, 직업교육비등이 있다.

독일의 경우 특이한 점은 부양자녀수에 대한 소득공제와 자녀보조금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부양자녀수에 따른 소득공제는 한 자녀당 2,904유로를 공제받도록 하고 있는데, 부부합산의 경우는 이의 두배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반면, 자녀보조금은 세 번째 아이까지는 한 자녀당 매달 154유로의 자녀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자녀보조금을 받게 되면 부양자 소득공제는 받을 수 없게 된다. 독신가장이 한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할 경우는, 특별히 2,340유로의 가계소득공제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독일에서는 자가주택 구입 및 건축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소득상한선이 자녀수와 연동되어 있다. 1995년 12월 31일 이후 시작된 건축물이나 1995년 12월 31일 이후에 체결된 계약건물에 한하여 자가주택보조금이 지급되는데, 독신자의 경우 81,807유로 이하의 소득을, 부부의 경우 163,614유로 이하의 연소득을 가진 가정에 대하여 지급되고 있다. 자녀 1인당 30,678유로씩 연소득의 한계가 높아진다.

05

이동수당 도입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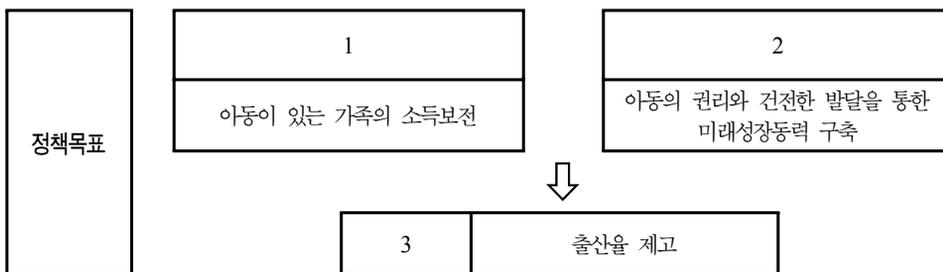
제5장 아동수당 도입방안

제1절 아동수당 정책목표

선진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아동수당의 정책목표는 포괄적인 가족정책의 영역에서 제시되는 경향이 있다. 즉 영국과 프랑스에서 아동수당은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자녀가 있는 가족의 소득을 보전해 가족구조에 따른 ‘수평적 재분배’를 통해 자녀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고양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 두 국가의 공통점은 이러한 정책의 실현을 통해 부차적으로 출산율을 제고하는 데 목적을 두고 다양한 정책 패키지와 동시에 제공했다는 점이다. 또한 그러한 가족정책의 끊임없는 개발의 성과로 1970년대 급격히 떨어졌던 출산율이 회복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례과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본 연구에서는 한국에 아동수당을 도입하는 정책 목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째, 아동이 있는 가족의 소득을 보전하고 자녀의 유무에 따른 세대내 재분배를 촉진하는 것이다. 둘째 아동의 권리와 건전한 발달을 통해 미래 성장 동력을 구축하고, 셋째 출산율을 제고하는 것이다.

[그림 5-1] 아동수당의 정책 목표



첫째, 아동이 있는 각 가정에 아동 수당을 지원하여 아동 양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아동이 건전하게 자라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해 주어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국가적으로는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유엔은 세계인권선언을 통해 모든 사람이 유년기에 특별한 보호와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선언하였다. 아동 수당은 각 가정의 아동에 대한 비용 지출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함과 동시에 국가가 아동이 건전하게 자라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다. 아동 수당을 지원하고 있는 대부분의 유럽 국가는 역사적으로 인권 보장에 대하여 많은 노력과 진통을 겪어 왔다. 이러한 인권 보장의 노력 결과로 아동 수당이라는 제도가 발달하였다. 우리 사회에서 아동 권리 보장에 대한 노력은 아직 초보적인 단계의 수준이다. 아동 수당의 목표를 아동의 권리 보장으로 뒀으로써 우리 사회에서 아동의 권리가 확보되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노력으로서의 기능을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기초적인 아동 권리 보장을 바탕으로 아동의 건전한 발달을 보장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앞으로 다가올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서 미래 성장 동력의 확보가 가능할 것이다.

둘째, 아동은 국가의 중요한 자원으로써 국가 존립의 기반을 형성하는 기반이다. 따라서 보편적 형태로서의 아동에 대한 지원은 전 사회적인 책임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책임은 아동 수당이라는 정책으로 구체화될 수 있다. 아동 수당은 아동 양육함에 있어 개별 가정이 지출하는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국가가 아동에 대한 보편적인 책임을 천명하는 중요한 기제로서의 역할을 한다. 즉, 아동 수당으로 지불되는 현금 지원이 현실적으로 각 가계의 아동 양육에 도움이 됨과 동시에 아동 양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상징하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이 “가족은 사회의 기초집단이며 모든 구성원 특히 아동의 성장과 복지를 위한 자연적 환경으로서 공동체 내에서 그 책임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필요한 보호와 지원이 부여되어야 할 것”을 강조한 것에서도 가족의 소득 보전을 목표로 하는 아동 수당의 정신이 잘 나타나 있다.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은 대부분 개인에게 주어지며 아동을 공공재로 인식하는 경향은 부족한 상황이다. 우리나라에서 국가의 아동에 대한 지원은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 자녀, 장애아, 입양 아동 등 취약계층에게만 한

정되어 있으며 보편적인 차원에서의 지원은 미비한 실정이다. 보육시설 이용에 대한 보육료 지원이 소득 하위 70%까지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동 양육에 소요되는 전반적인 비용에 대한 지원이라기 보다 보육 서비스 이용에 대한 현물 서비스의 개념에 가깝다. 우리 사회가 아동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아동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가정에게 지원하는 보편적 형태의 양육 수당 도입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셋째, 우리나라는 최근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겪고 있으며 아동 수당을 통해 출산률 회복을 위한 국가의 의지를 천명해야 할 것이다. 유럽 국가에서 아동 수당이 활발하게 논의된 시점은 유럽 국가들이 저출산 문제를 심각하게 직면한 때 이다. 아동 수당 도입의 표면적인 목적은 아동권의 보장이라고 할 수 있지만 하락하고 있는 출산률을 회복하려는 국가의 실질적인 목적이 분명히 내재하고 있었다. 물론 아동 수당이 출산률 제고를 위한 도구적인 기능을 강조해서는 안된다. 아동 수당은 국가의 존립의 위협을 주고 있는 저출산 문제에 직면하여 이를 해결하려는 국가적인 노력을 국민에게 보여주는 정책적 수단이어야 할 것이다. 외국의 많은 연구 결과를 살펴 볼 때 현금 지원이 출산률 회복에는 그다지 큰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는 사실을 명심하여야 한다.

외국의 정책을 볼 때 출생 순위가 높을수록 아동 수당의 금액 수가 높은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이는 자녀가 많은 가정에 그 만큼 더 많은 노력과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더 많은 비용을 지원한다고 볼 수도 있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다자녀 가정을 “모범적인” 가족 모형으로서 자리매김하도록 하는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를 볼때 아동 수당을 통하여 국가가 저출산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을 지원하고 있다는 의지를 보여야 함과 동시에 자녀에 대한 가치관이 하락하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다자녀 가정에 대한 가치를 함양하기 위한 정책적 목적도 가져야 할 것이다.

제2절 이동수당 도입 방안과 재정추계

가. 이동수당 도입 방안 시나리오

이동수당 도입의 기본 시나리오는 선별적 수당 지급에서 시작하여 장기적으로 보편성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고안 되었다. 이동수당 도입시 보육지원제도와 중복성을 고려하여 구분할 수 있다. 즉 보육지원제도와 중복적으로 이동수당을 제공하는 방안들(제 1안, 2안, 3안)과 보육지원제도 대상 아동을 제외하고 이동수당을 제공하는 방안들(4안, 5안)이 있다. 다음으로 모든 방안들은 양육수당과의 중복성을 고려하여 제시되었다. 여러 수당들 중에서 양육수당과의 중복성을 고려한 이유는 다른 수당들 중에서 가장 중복성이 높기 때문이다.

먼저 시나리오 1안에서 3안까지는 보육지원제도 여부와는 상관없이 이동수당을 제공하는 방안들이다. 제 1안은 최저생계비 120%이하 가구에 속해있는 6세 이하(만 5세이하)의 둘째 아동부터 월 10만원 씩 양육수당과 중복 없이 수당을 지급하는 예산이 가장 적게 소요되는 안으로, 차상위이하 계층을 대상으로 다른 제도(양육수당)와의 중복을 허용하지 않는 보수적인 접근을 취함으로써 모든 시나리오의 기준점을 제시한다. 이러한 1안의 경우 시나리오 확장방향은 대상아동을 12세 이하 까지, 또는 18세 이하까지 확대하는 연령확대 방안과 소득기준을 상위 50%까지, 또는 상위 80% 까지 확대하는 소득기준 완화 방안을 기본으로 삼고, 여기에 기존 양육수당과의 중복 허용 및 첫째 아동부터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들과의 조합을 통해 다양한 결과를 예측해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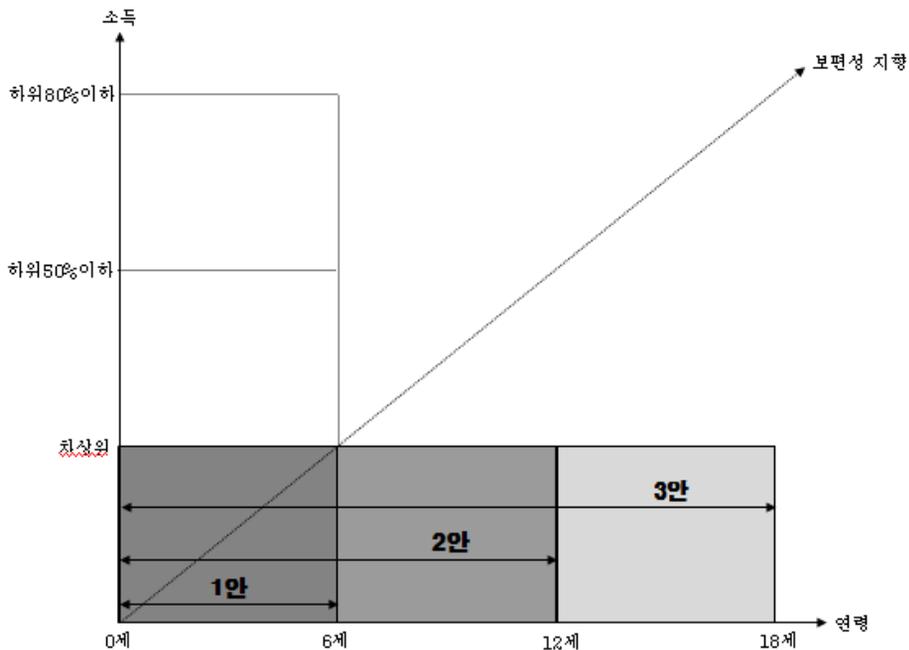
제 2안은 최저생계비 120%이하 가구에 속해있는 12세 이하의 둘째 아동부터 월 10만원 씩 양육수당과 중복 없이 지급하는 것을 기본 시나리오로 한다. 제 2안의 경우 시나리오 확장방향은 대상아동을 18세 이하까지 확대하는 연령확대 방안과 소득기준을 상위 50%까지, 또는 상위 80% 까지 확대하는 소득기준 완화 방안을 기본으로 삼고, 제 1안과 마찬가지로 기존 양육수당과의 중복 허용 및 첫째 아동부터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들과의 조합을 통해 다양한 결과를 예측해 볼 수 있다.

제 3안은 최저생계비 120%이하 가구에 속해있는 18세 이하의 둘째 아동부터 월

10만원 씩 양육수당과 중복 없이 지급하는 것을 기본 시나리오로 하며, 시나리오 확장방향은 앞의 시나리오와 동일한 방법으로 적용한다.

아래의 그림은 시나리오별 아동수당 확대방안을 보여주고 있다. 시나리오 1, 2, 3은 연령제한을 6세에서 12세로 그리고 18세로 완화시키는 경우 소요예산을 의미하며 이러한 대상 아동연령 제한완화와 더불어 소득기준을 차상위 120%에서 소득의 상위 50%이하까지, 소득의 상위 80%이하 까지 완화시키는 소득기준 완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으며 이 두 방안을 동시에 고려해 볼 때 대각선 방향으로 우상향하는 화살표는 보편성을 지향하는 아동수당 도입 확대방안을 의미한다.

[그림 5-2] 아동수당 도입 시나리오 : 연령기준과 소득기준을 중심으로(보육지원정책과 중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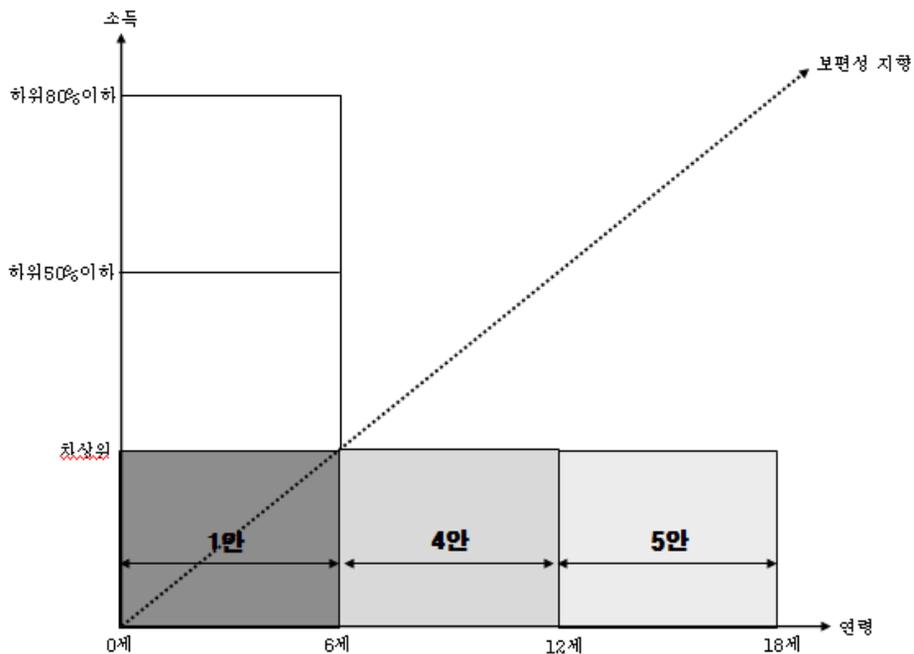


다음으로 시나리오 4안과 5안은 보육지원제도 대상 아동을 제외하고 아동수당을 제공하는 방안들이다. 제 4안은 최저생계비 120%이하 가구에 속해있는 7세 이상 12세 이하의 둘째 아동부터 월 10만원 씩 양육수당과 중복 없이 수당을 지급하는 안으로, 차상위이하 계층을 대상으로 다른 제도(양육수당)와의 중복을 허용하지 않는 가장 협소한 방식을 취한다. 이 역시 아동수당의 확대는 대상아동의 연령 확대와 소

득기준의 완화에 의한다.

제 5안은 보육지원제도 대상 아동과 초등학생 아동을 제외한 아동에게 수당을 제공하는 형태이다. 이러한 방안이 검토된 이유는 실제적으로 아동양육으로 인한 비용 소모가 가장 큰 중고등학생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 소득을 보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거의 전무하기 때문이다. 즉 6세까지의 아동에게 제공되는 보육지원제도는 양육으로 인한 비용을 보전하기보다는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보육료·교육비)를 보조하는 것이고 12세까지의 아동에게 제공되는 의무교육 역시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형식이다.

[그림 5-3] 아동수당 도입 시나리오 : 연령기준과 소득기준을 중심으로(보육지원정책과 중복안됨)



나. 방안별 소요재정 추계

위에서 설명한 5개의 기본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시나리오를 구성하는 주요 변수에 따른 소요재정을 추계하였다. 이 때 주요 변수는 시나리오들을 구분하는 거시적인 기준인 보육료지원과 학교교육부터 일인당 지급액 수준, 지급연령, 양육수당과 중복허용 여부, 소득상한의 존재, 출산장려를 고려한 모형설계 여부 등 미시적인 변수까지 포함한다. 소요재정 추계를 위해서는 한국복지패널 3차 자료를 사용하였다. 추계에 사용된 한국복지패널은 소득에 관한 자료는 물론 가족관계 및 보육시설이용에 관한 세부적인 자료를 가지고 있어 아동수당도입에 따른 재정추계에 필요한 자료들을 거의 갖추고 있다.

〈표 5-1〉 시나리오별 수급대상 규모

(단위 : 명, %)

연령 및 대상 아동			소득기준 및 중복여부		소득기준			
			차상위미만		소득하위 50%이하		소득하위 80%이하	
			양육수당 중복불가	양육수당 중복	양육수당 중복불가	양육수당 중복	양육수당 중복불가	양육수당 중복
연령 기준	1안 (6세 까지)	둘째아동	164,758 (0.3)	211,272 (0.4)	654,349 (1.4)	888,030 (1.8)	1,196,754 (2.5)	1,640,180 (3.4)
		첫째아동	245,698 (0.5)	304,958 (0.6)	1,169,105 (2.4)	1,552,711 (3.2)	2,238,420 (4.6)	2,993,514 (6.2)
	2안 (12세 까지)	둘째아동	443,706 (0.9)	490,220 (1.0)	1,648,569 (3.4)	1,882,251 (3.9)	2,937,308 (6.1)	3,380,734 (6.9)
		첫째아동	770,745 (1.6)	830,005 (1.7)	3,080,049 (6.4)	3,463,654 (7.1)	5,722,124 (11.8)	6,477,218 (13.3)
	3안 (18세 까지)	둘째아동	689,972 (1.4)	736,486 (1.5)	2,462,654 (5.1)	2,696,336 (5.6)	4,417,671 (9.1)	4,861,097 (10.0)
		첫째아동	1,269,480 (2.6)	1,328,740 (2.7)	4,810,138 (9.9)	5,193,744 (10.7)	8,751,327 (18.0)	9,506,421 (19.6)
	4안 (6세-12세 까지)	둘째아동	278,948 (0.6)		994,220 (2.0)		1,740,554 (3.6)	
		첫째아동	525,047 (1.1)		1,910,944 (4.0)		3,483,704 (7.2)	
	5안 (13세-18세 까지)	둘째아동	246,266 (0.5)		817,085 (1.7)		1,480,364 (3.1)	
		첫째아동	498,735 (1.0)		1,730,089 (3.5)		3,029,202 (6.3)	

주: ()는 전체 인구대비 비중을 나타냄.

주: 본 추계는 2008년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기초하여 2007년도 조사대상자의 생활실태를 기준으로 추정된 것임.

한국복지패널은 가장 최근에 조사한 자료인 2008년도(3차 자료) 자료가 2007년도의 조사대상자의 생활실태를 조사한 것이어서 현 시점과의 차이가 존재한다. 또한 복지패널 분석상의 유의점으로는 복지패널의 조사대상은 9개월 이상 생계를 같이한 가구원만 조사에 포함되므로 2008년 복지패널에서 조사된 가장 어린 가구원은 2007년 3월에 출생한 가구원이 해당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제약된 조건을 수정하기 위해 대상아동의 연령을 2007년 3월을 기준으로 삼아, 6살 이하의 아동의 경우 2001년 4월 이후 출생자부터 2007년 3월까지의 출생자로 정의하였다.

가구소득과 이동순위별 수급대상의 규모를 살펴보면, 가장 보수적인 방안(1안)은 첫째아동과 둘째아동을 대상으로 양육수당과 중복하지 않는 형태로 아동수당을 제시할 경우 전체 아동 대비 0.8%가 수급대상이 된다. 이 시나리오에서 연령을 확대하면 수급자 수는 각각 3배(2안), 5배(3안)로 늘어난다. 한편 보육지원 및 학교제도의 중복을 고려한 4안과 5안의 수급자는 1안의 2배이다.

아동수당 급여액이 월 10만원인 경우 시나리오별 재정 추계는 다음의 <표 5-2>와 같다. 먼저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6세까지 차상위미만 가구의 아동의 첫째 자녀에 한해 양육수당과 중복하지 않고 보육지원서비스와 중복적으로 제공할 경우(1안) 소요되는 재정은 약 3천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를 둘째아동까지 포함하면 재정 소요는 약 5천억원으로 증가한다. 또한 1안에서 첫째 아동만 대상으로 포함하고 연령조건을 각각 12세(2안), 18세(3안)로 완화한 방안에 대해서 재정 소요를 추계한 결과는 각각 9천억원, 1조5천억원으로 각각 3배에서 5배정도로 증가한다. 마지막으로 1안에서 소득기준을 차상위계층에서 소득하위 50%이하가구와 소득하위 80%이하가구로 확대하면 재정부담은 각각 1조4천억원, 2조7천억원으로 증가하며 각각 4.7배, 9배로 나타난다.

4안과 5안은 보육지원제도와 학교에 다니는 아동을 배제한 방안이므로 양육수당 중복 여부는 대상자 수와 재정 추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보육지원제도에 포함되는 아동을 제외하고 차상위미만가구의 첫째 자녀에게 아동수당을 제공(4안) 하는 경우 재정은 6천3백억원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먼저 보육료지원바우처사업과의 중복성을 제거하고자 7세~12세미만 첫째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수당을 월 10만원씩 제공할 경우(4안) 재정은 6천3억원, 13세~18세미

만 첫째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수당을 제공할 경우(5안) 재정은 약 6천억원으로 추계된다. 이 방안들 역시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하위 80% 가구를 대상으로 아동수당을 제공할 경우 소요되는 재정은 각각 4조2천억원, 3조6천억원으로 약 7배, 6배 가량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5-2〉 시나리오별 소요재정 추계규모 결과표(월 10만원 수당 지급)

(단위 : 만원)

연령 및 대상 아동			소득기준 및 중복여부		도시근로자가구소득기준			
			차상위미만		소득하위 50%이하		소득하위 80%이하	
			양육수당 중복불가	양육수당 중복	양육수당 중복불가	양육수당 중복	양육수당 중복불가	양육수당 중복
연령 기준	1안 (6세까지)	둘째아동	19,770,984	25,352,645	78,521,839	106,563,636	143,610,496	196,821,594
		첫째아동	29,483,796	36,594,921	140,292,658	186,325,309	268,610,452	359,221,713
	2안 (12세까지)	둘째아동	53,244,693	58,826,354	197,828,287	225,870,084	352,476,932	405,688,030
		첫째아동	92,489,439	99,600,564	369,605,825	415,638,476	686,654,933	777,266,194
	3안 (18세까지)	둘째아동	82,796,687	88,378,348	295,518,477	323,560,275	530,120,561	583,331,659
		첫째아동	152,337,642	159,448,767	577,216,611	623,249,261	1,050,159,202	1,140,770,463
	4안 (7세-12세까지)	둘째아동	33,473,709		119,306,448		208,866,436	
		첫째아동	63,005,643		229,313,167		418,044,481	
	5안 (13세-18세까지)	둘째아동	29,551,994		97,690,190		177,643,629	
		첫째아동	59,848,203		207,610,786		363,504,269	

주: 본 추계는 2008년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기초하여 2007년도 조사대상자의 생활실태를 기준으로 추정한 것임.

마지막으로 아동수당 급여액을 월 5만원으로 설정하여 각 방안별 재정을 추계해 보았다. 그 결과 보수적인 1안을 기준으로 차상위미만 가구의 첫째아동에게만 아동수당을 지급했을 때 1천5백억원가량의 재정이 소요되며, 가장 보편적인 3안을 기준으로 첫째아동에게만 아동수당을 지급했을 때 7천6백억원의 재정이 소요된다. 이러한 추계결과는 가구의 소득수준 확대에 따라 급증한다. 이러한 추계결과는 가구의 소득수준 확대에 따라 급증한다. 즉 1안의 경우 차상위미만가구를 대상으로 양육수당과 중복하지 않으면서 아동수당을 첫째에게만 지급했을 때 1천4백억원이 소요되

는 반면 동일한 조건에서 소득하위 80%이하의 가구까지 범위를 확대하면 약 10배나 증가한 1조3천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 때 보편적인 아동수당의 형태를 소득 하위 80%가구까지로 설정한 이유는 재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고소득층의 자녀 양육으로 소요되는 비용은 월 5만원이나 10만원으로 충당되지도 않는 수준이고 고소득층에게까지 아동수당을 제공할 경우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재정의 부담에 대한 담세율의 증가가 오히려 정책의 도입을 꺼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표 5-3〉 시나리오별 소요재정 추계규모 결과표(월 5만원 수당 지급)

(단위 : 만원)

연령 및 대상 아동		소득기준 및 중복여부	소득기준					
			차상위미만		소득하위 50%이하		소득하위 80%이하	
			양육수당 중복불가	양육수당 중복	양육수당 중복불가	양육수당 중복	양육수당 중복불가	양육수당 중복
연령 기준	1안 (6세까지)	둘째아동	9,885,492	12,676,323	39,260,919	53,281,818	71,805,248	98,410,797
		첫째아동	14,741,898	18,297,461	70,146,329	93,162,654	134,305,226	179,610,857
	2안 (12세까지)	둘째아동	26,622,346	29,413,177	98,914,143	112,935,042	176,238,466	202,844,015
		첫째아동	46,244,720	49,800,282	184,802,913	207,819,238	343,327,467	388,633,097
	3안 (18세까지)	둘째아동	41,398,344	44,189,174	147,759,239	161,780,137	265,060,280	291,665,830
		첫째아동	76,168,821	79,724,383	288,608,305	311,624,631	525,079,601	570,385,232
	4안 (7세-12세까지)	둘째아동	16,736,854		59,653,224		104,433,218	
		첫째아동	31,502,822		114,656,584		209,022,241	
	5안 (13세-18세까지)	둘째아동	14,775,998		48,845,096		88,821,814	
		첫째아동	29,924,101		103,805,392		181,752,134	

주: 본 추계는 2008년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기초하여 2007년도 조사대상자의 생활실태를 기준으로 추정된 것임.

제3절 이동수당 도입시 자원조달 방안

이동수당의 본격적 도입은 이동수당의 형태나 대상자 및 급여 수준에 따라 재원의 규모는 상당히 차이가 나기는 하겠지만, 대체로 상당량의 재원이 들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여건상 차상위 및 빈곤아동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경우도 수천억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보편적인 형태의 이동수당으로 확대한다면 수조에 이르는 재원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일례를 들면, 이동수당 유형별 자원조달의 해외 사례에서는 보편적 이동수당은 대부분의 경우 정부가 그 재원을 담당하고, 근로자가구를 주된 대상으로 하는 고용관련 유형의 이동수당은 고용주가 재원을 부담하고 있는 것이 관찰된다. 이동수당 및 가족수당이 사회보험으로 운영되는 국가의 경우는 사회보험료가 주된 재원이 된다. 한편 자산조사를 거쳐 일정 소득수준 이하 가구에 대하여 이동수당을 지급하는 경우는 포르투갈등의 경우와 같이 사회보험료의 일부를 이동수당의 재원으로 한다든지, 일본의 경우와 같이 고용주가 근로자가 아닌 일반 대상자의 수당까지 일부 부담하도록 하는 경우가 관찰된다. 연금보험료의 일부로 이동수당 등 가족수당의 재원을 조달하는 포르투갈의 경우는 보편적인 가족수당 제도이면서도 연금보험료의 2.15%를 가족수당의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는 고용주가 피고용인을 포함한 일반 대상자까지에 대한 부담을 지고, 급여의 0.13%를 각출금으로 납부하고 있다. 한편, 프랑스의 경우는 사회기여금을 소득에 부과하여 아동 및 가족수당의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어찌보면 이동수당에 대한 사회적 동의가 형성되어 보편적인 이동수당이 실시되는 국가에서는 정부가 재원을 전적으로 담당하는 데 큰 무리가 없을 수도 있으나, 우리나라의 현 실정에서는 보편성은 지향하고자 하는 방향은 될 수 있겠으나 현실적으로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보편적이며 관대한 이동수당 및 가족수당을 제공하고 있는 유럽국가들의 경우도 정부가 재원을 전적으로 담당하는 경우 소득세제등에서 아동관련 세제혜택들을 정비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일면 세제감면 혜택대신 수당이라는 현금지원 방법을 선택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도 이동수당이 점차 확대되어 보편성에 근접하여 갈수록 재원측면에서

의 선택은 관련 소득공제제도의 정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가장 관대한 시나리오 (시나리오 3)하에서처럼 소득 하위 70% 만 18세 이하 아동까지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보편적 시나리오 하에서는 대다수의 가구가 수혜대상이 됨에 따라 세제 감면 혜택의 정비에 따른 수혜계층의 변동도 적게 된다. 더불어 소득공제제도의 개편은 조세제도의 단순성과 이에 따른 효율성의 제고에도 도움이 된다. 수혜자 측면에서 세제혜택보다는 현금의 수혜만족도와 정책 인지도가 높다는 점도 긍정적인 측면이다.

지자체도 아동양육에 대한 책임이라는 측면에서 재원을 일부 부담할 필요가 있다. 현재 많은 지자체가 자체 사업으로 출산 및 양육비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지자체 마다 통일되지 않은 기준으로 양육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것보다 국가적으로 통일된 기준의 아동수당에 대한 재원부담을 하는 것이 양육지원에 대한 지역간 편차를 줄일 수 있다. 지자체가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자체의 유사중복 수당의 정비 등을 통한 사업비 확보를 유도할 수 있다. 각 지자체에서 지원하고 있는 다양한 양육비 지원 사업을 아동 수당 정책으로 흡수하여 현재 지자체가 자체적인 양육비 지원 사업에 지출하고 있는 예산을 아동 수당 정책 추진을 위한 지자체 매칭 펀드로 사용할 수 있다. 현재 각 지자체 마다 어느 정도 양육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아동 수당 제도로 흡수할 때 아동 수당 제도를 도입시 지자체 매칭 펀드 조성에는 큰 무리가 따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가. 세제지원제도의 개편

아동수당제도의 도입시기에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가족 및 아동과 관련된 세제지원제도의 개편이 함께 논의 되었다. 보편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유럽 나라들의 경우는 아동과 관련한 각종 수당이 다양하고 그 금액도 커짐에 따라 소득세제하에서 부양자녀수에 따른 소득공제로 인한 세제감면을 축소하거나 아예 폐지하는 경우도 보이고 있다. 핀란드의 경우는 현행 소득세제하에서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감면제도가 전혀 없는 나라이다. 이는 핀란드가 1994년 아동수당제도의 현금 급여액을 증가하면서 가족에 대한 소득감면제도를 완전히 폐지하였기 때문이다. 독일의 경우는 부양

자녀수에 따른 소득공제혜택이 있으나 소득세제하에 존재하기는 하지만, 세제혜택과 아동수당의 중복수혜는 금지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는 고소득층일수록 아동수당보다는 세제혜택 금액이 더 많게 산출지는데, 국세청에서 이를 원천적으로 선별하여 더 높은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선별하여 지급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도 1997년 선별적 아동수당제도를 채택하였다가 1998년 보편적 제도로 재도입하는 고소득층이면서 부양아동이 1명인 가족과 독신자에 대한 세금혜택을 축소하였다.

한편, 소득에 따라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일본에서는 아동수당제도 재원마련을 위해 2000년대 연소자 부양공제를 부분적으로 폐지하고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었던 배우자 특별공제를 폐지하였다. 또 2006년에는 아동수당의 대상을 초등학교 3학년에서 초등학교 6학년까지 확대하면서, 1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부모에 대한 소득세의 연소자 부양공제를 자녀 1인당 연 48만엔(약 637만원)에서 38만엔(약 504만원)으로 10만엔 인하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동관련 세제감면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부양아동 관련 소득공제제의 한 예로, 6세이하 자녀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액의 규모는 1998년 195억원에서 2008년에는 약 3천541억원 규모로 증가하였다. 6세이하 자녀에 대한 추가소득공제액은 2005년부터 급격히 증가하였다. 이는 2005년 이전에는 수혜대상이 여성이나 배우자가 없는 남성만 해당하였던 반면 현재는 수혜대상이 모든 근로자이며, 2005년 이전에는 공제액이 1인당 연 50만원이었으나 이후 연 100만원으로 증가한 것에 기인한다. 교육비 특별공제 규모는 1998년 3,174억원에서 2008년의 경우 약 1조 798억원에 이르기까지 증가하였다.

우리나라의 현행 조세제도를 통한 아동양육지원은 많은 경우 직접세를 통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고, 형태별로 보았을 때는 부양자 수에 따른 소득공제 형식의 조세 지원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조세지원의 경우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는 것은 조세지원의 소득 역진성이다. 일례로 현행 소득공제제도는 가구원 수 및 부양자수에 따른 보조를 지급하고 있어서, 현행방식대로 조세지원이 되는 경우는 해당 공제액에 대하여 고소득층이 더 많은 혜택을 받는 소득재분배 역행이라는 조세지출 제도의 약점을 그대로 가지고 가게 된다.

〈표 5-4〉 아동관련 세제혜택 규모 (1998 ~2008)

(단위: 억원)

연도	교육비특별공제	6세이하 자녀에 대한 추가공제
1998	3,174	155
1999	3,174	162
2000	3,712	131.6
2001	4,876	144.6
2002	5,357	140.9
2003	5,100	141
2004	6,577	146
2005	7,804	2,444
2006	8,036	2,445
2007	8,812	3,335
2008	10,718	3,541

자료: 조세지출보고서 각년도

앞서 살펴보았듯이 현행 소득세 체계에서 부양자녀수에 따른 기본공제는 일인당 100만원이며, 다자녀가정에 대한 추가적 소득공제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출산을 장려하고 아동양육을 지원하고자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소득공제 방식은 역진적 성격이 있어, 소득이 많을수록 세부담 감소가 더 많아지는 경향이 있고, 세제구조가 복잡해지는 등 지원방식의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맥락에서는 같은 금액으로의 재정지출을 통한 지원이 더 효과적인 경우도 많이 발생하게 된다. 즉, 조세 지원방식의 약점을 많은 부분 극복할 수 있고, 소득세제도를 좀 더 단순화 시킬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납세자의 입장에서도 소득공제보다는 지원에 대한 체감율이 높아지게 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경제적인 유인을 준다는 측면에서도 더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맥락에서는 기존의 추가적인 조세지원책의 마련보다는 직접적인 재정지출로서의 아동수당이 더 효율적일 수도 있다.

다만, 아동수당이 저소득층 가구와 낮은 연령의 아동을 중심으로 도입되기 시작하는 것이 더욱 현실적인 시점에서 소득공제제도의 개편을 통한 재원조달은 고소득층 아동부양 가구에서 저소득층 아동부양 가구로 소득이 이전되는 소득재분배적인 측면이 강화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대상아동의 연령이 높고 대다수 소득계층을 포함하는 보편적 형태의 아동수당으로 대상이 확대되는 경우는 소득분포상 대다수의

가구가 수혜대상이 됨에 따라 세제감면 혜택의 정비에 따른 소득계층간 부담의 변동은 상대적으로 작을 수 있다. 또 부양아동이 있으나 아동수당 지급연령 이상의 자녀를 가진 가정에 대한 부담도 상대적으로 작을 수 있다. 따라서 아동수당의 도입시 보다는 보다 보편적인 방향으로 아동수당을 확장하는 시기에 소득공제제도의 개편을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수혜계층간의 불만을 좀 더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나. 사회보험식 재원조달방안

보편적인 아동수당은 막대한 재원을 요할 것으로 예측되는데, 이때 안정적인 제도 운영을 위하여서는 독자적인 재원이 필요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사회보험료와 유사한 형태의 재원을 활용할 수 있다. 첫째는 프랑스의 사회기여금처럼 목적세의 성격과 유사한 사회보험료 혹은 사회보장세를 신설하여 보편적인 아동수당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둘째는 국민연금 보험료와 같은 기존의 사회보험료를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셋째는 일본의 고용주 각출금과 같이 사업주 부담금을 징수하여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먼저, 사회보장세의 신설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부과되는 세원과 아동수당급여 지급과의 연계가 큰 경우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가 용의하다. 프랑스의 사회기여금은 소득에 부과되고 있다. 아동수당과의 직접적 연계가 있는 세원을 찾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일반적으로 담배, 주류, 경마, 도박등 sin tax라 불리는 세원들의 경우 외부불경제를 수정하는 측면에서 세원으로서의 타당성이 크게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담배세에 사회보장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담배가격은 지속적으로 인상되어 왔으나, 금연등을 위하여 향후 더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현재담배에는 종량세인 담배소비세이외에도 지방교육세, 부가가치세, 폐기물 부담금, 건강증진부담금이 부과되고 있다. 담배에 부과되는 담배소비세의 경우 OECD 국가중 낮은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다. 종량세인 담배소비세의 50%가 지방교육세로 징수되고 있다. 2007년의 경우 담배소비세 예산은 약 2조 7천 억원이었다. 담배에 사회보장세를 부가세 형태로 부과하여 아동수당의 재원으로 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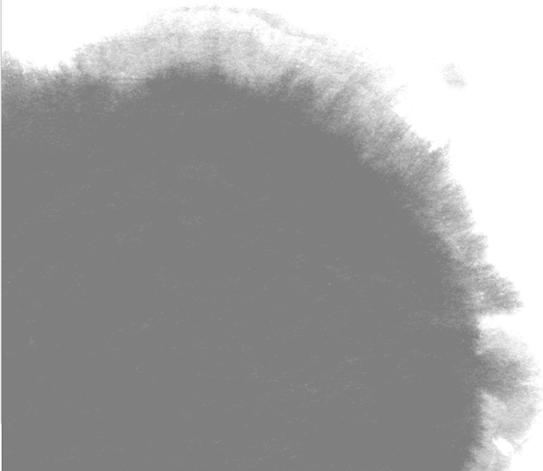
용하면, 담배의 외부불경제를 수정하면서 사업의 안정적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다음으로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정율을 이동수당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현행의 국민연금 보험료는 소득의 9%로, 사업장 가입자의 경우 고용주와 근로자가 각각 4.5%를 분담하여 납부하고 있다. 2008년의 경우 약 22조 3천억원이 보험료로 징수되었다. 우리나라 국민연금 보험료는 외국의 경우와 비교하여 낮은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에 일정률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이동수당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식을 생각할 수 있다.

한편, 이동의 건전한 발달이 다만 국가의 책임이 아니라 기업의 책임도 된다는 견지에서 일본의 경우와 같이 고용주가 재원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이는 사회보험료와 유사한 성격을 띠는 고용주 각출금 징수를 통해 재원을 조달하는 형태이다. 일본의 경우 1971년 이동수당 도입시 각출율 0.05%에서 시작하여 0.12%, 0.09% 등 징수율이 여러차례 변화였으며, 현재는 급여의 0.13%를 고용주 각출금으로 징수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급여의 0.1%를 고용주 부담으로 하여 국민연금 사업장과 같은 기준으로 부과하는 경우, 2008년 기준 국민연금 사업장 보험료 징수분이 약 22조 3천억원 (사업주 부담금 약 11조 1천억원)에 해당하는 점을 고려하면, 약 2천 2백억원의 재원이 추가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06

이동수당 도입시 재정상황



제6장 아동수당 도입시 쟁점사항

아동수당제도 도입에 대한 필요성이 지난 몇 년간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아동 수당 제도의 도입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2009년 7월부터 가정에서 양육되고 있는 아동에 대하여 양육 수당 정책이 도입되었으나 동 정책은 보육시설 이용에 따른 보육료 지원과의 형평성 추구를 위해 마련된 정책이며 보편적으로 아동의 건전한 발달을 위해 지원되는 아동 수당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취지와 목적을 가지고 있다. 아동 수당이 우리 사회에서 적극적으로 논의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아동 수당 도입에 따른 급여 지급을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에 따른 재정적인 부담이 제도 도입을 주저하게 하는 가장 큰 이유로 지적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아동 수당 도입을 위해서는 아동 양육 지원에 대한 국가적인 의지와 더불어 자녀 양육이 전 국가적인 책임이라는 사회적인 합의 도출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여성계에서는 아동 수당 도입에 따라 여성의 경제 활동 의지가 약화되어 여성으로 하여금 노동 시장에 참여하지 않고 가정에 남아 자녀를 돌보게 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측면에서 아동수당제도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많은 수의 여성 노동자가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평균적인 임금 수준도 낮은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해 볼 때 아동 수당 도입에 따른 여성의 경제활동 의지 약화는 전혀 현실성 없는 주장은 아니다. 아동 수당이 보편적인 지원을 목표로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모든 가정에 대한 지원으로 중산층 이상에게 까지 지원한다는 사실을 고려해 볼 때 이에 대한 국민적인 반감도 아동 수당을 도입할 때 함께 고려해 보아야 할 문제이다. 이 밖에도 우리나라의 출산률이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의 출산률을

보이는 현실에서 아동 수당 제도 마련시 출산률 제고로서의 역할을 아동 수당이 담당해야 한다는 것도 논의가 필요하다. 아동 수당 도입시 예상되는 다음과 같은 쟁점 사항에 대해 충분한 고려가 필요하다.

가. 유사정책과의 중복성 문제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10여년간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욕구와 정부의 노력으로 인해 많은 제도가 생겨나게 되었다¹⁰⁾. 그러나 사회적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 및 복지서비스가 완비되면서 나타난 문제는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중복의 문제라 할 수 있다. 즉 다양한 사회서비스제도가 완비되면서 한 사람이 여러 서비스를 중복해서 받거나, 여러 정부기관으로부터 한 서비스를 제공받게 되는 현상들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서비스 중복이란 엄밀한 점에서 행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며, 일정부문 부정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할 수 있다. 즉 서비스중복이란 동일한 사유에 의하여 서로 다른 복수의 서비스를 제공받게 되는 것을 의미하며, 행정적으로는 부정수급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박능후, 2007). 그러나 서비스 중복의 의미는 공급자 측면과 수요자 측면에서 함께 살펴볼 수 있다. 공급자 측면에서는 공급자(예, 정부부처)가 동일하거나 비슷한 내용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수요자 측면에서는 동일한 조건(예, 연령, 소득 등)하에서 다양한 공급자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부정수급이란 의미에서 서비스 중복의 의미는 공급과 수요측면에서 동일하게 발생할 경우를 의미하며, 단순히 서비스 공급의 측면에서 여러 유사한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은 「서비스 경합」이라고 할 수 있다. 서비스 중복과 유사한 용어로 「서비스 중첩」을 들 수 있다. 서비스중첩이란 서로 다른 명칭으로 공급되는 다수 서비스의 수급대상과 요건, 급여내용이 부분적으로 겹치는 경우를 의미한다.

본 절에서는 아동수당과 서비스의 중복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제도들의 내용을

10) 대표적인 제도만을 살펴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2000), 긴급지원제도(2006), 보육지원제도(?년), 장기요양보험제도(2007), 기초노령연금제도(2008) 등이 생겨남.

고찰함으로써 아동 수당과의 중복성 여부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 수당과 기타 사회서비스제도와와의 중복성을 살펴볼 때 공급자들이 제공하는 제도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아동 수당제도 도입에 따르는 중복의 문제를 우선 공급자측면에서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수당측면에서 서비스중복에 해당될 수 있는 제도로는 양육수당, 장애아동수당,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사업, 한부모가정 자녀 양육수당, 입양 자녀 양육수당, 입양 장애 아동 양육 보조 수당을 들 수 있다.

첫째, 양육 수당은 자녀 보육 서비스에 대한 지원으로 보육료 지원과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이 수당은 현재 소득하위 50%까지 보육시설 이용에 따른 보육료가 무상지원 되기 때문에 양육 수당과 보육료 지원간의 형평성에 대한 논쟁이 있다. 따라서 양육수당은 아동의 건전한 발달을 위해 지원하는 아동 수당과의 중복성이라는 측면보다는, 오히려 양육 수당 지원 대상을 보육료 무상 지원 대상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 과제로 남아 있다.

실제로 아동 양육 수당 (Child raising allowance)을 도입하고 있는 유럽 국가들은 양육 수당을 가정의 자녀 보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아동 수당과는 별개의 제도로 운영하고 있다. 예를 들어, 자녀가 16세 될 때까지 자녀 1인당 월 SEK 1,050 (원화로 약 18만원)의 아동 수당을 지원하고 있는 스웨덴의 경우 2008년 7월부터 양육 수당을 도입하여 1~3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가정에 한해 최대 월 SEK 3,000 (원화로 약 52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양육 수당은 여성이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지원하고 있으며 실업급여, 병가급여, 육아휴직 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는 양육 수당을 받을 수 없게 하고 있다. 그러나 조세부담율이 50%에 이르는 유럽국가의 모형을 우리나라에 적용하는 것은 좀 무리가 따르는 것도 사실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동수당이 도입된다면 아동수당을 축으로 기존의 보육 및 아동에 대한 교양육 정책들을 체계화하여 가족정책을 재정립할 필요성이 다분히 존재한다. 그러한 경우 양육수당으로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과 이용하는 가정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것보다는 보육료나 시설육을 강화하여 보육을 강화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장애아동에 대한 수당은 장애발생으로 인한 장애인가구의 추가비용을 보전

하기 위한 제도라 할 수 있다. 즉 일반가정에 비해 장애아가 있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비용들을 지원하는 제도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제도 도입의 취지가 아동 수당과 다르고, 장애아동에 대한 특수성을 고려한다면 아동 수당과의 중복가능성은 없다고 할 수 있다.

셋째, 한부모가정 자녀양육비의 경우 대상자가 저소득층가구이며, 한부모 가정이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고 한부모가정의 생활안정과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 마련된 제도라는 측면에서 아동 수당과는 중복성이 없다고 할 수 있다. 한부모가정의 자녀가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보육료지원을 받을 수 없으며, 가정적으로는 한부모 가구주가 근로활동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또한 한부모 가정의 경우 부모 한 사람이 자녀를 양육하기 때문에 장애아동과 같이 일반가정과 달리 자녀양육에 추가적인 비용이 소요될 수 있다.

넷째, 입양 자녀 양육수당·입양 장애 아동 양육 보조 수당은 제도 도입의 취지가 아동 수당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입양자녀 수당의 경우 입양자녀들로 하여금 건전한 가정생활을 영유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한다는 점에서 아동 수당과는 입법취지에 차이가 있다. 특히 입양 장애아동의 경우 장애수당과 같이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과 소득보전이라는 측면에서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된 제도라 할 수 있다.

다섯째,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지원 사업의 경우 시장개방, 저출산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농어업 종사주민들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아동 수당과도 제도 도입의 목적과 대상이 다르다 할 수 있다. 또한 동 제도의 경우 이미 지원대상자 선정조건에서 ①타부처의 저소득층 지원대상 아동, ②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사업에 의해 보육료를 지원받는 아동, ③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취원아 중 교육비지원을 받는 아동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동 사업이 농어촌에 거주하고 있는 영유아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해 볼 때, 농어촌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범위에서 지원하는 아동 수당이 자녀 양육에 대해 지원하는 기본 정책으로서 자리 매김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여섯째,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규모로 운영되고 있는 아동양육지원제도는 보육료 및 유아교육비 지원 바우처 사업이다. 그러나 프랑스와 독일에서 보듯이 아동

수당은 아동의 존재 그 자체로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해주는 의미를 가지며, 자녀의 양육시 소요되는 교육비 등 시설 이용료 등은 또 다른 제도로 지원해주는 것이 보편적이다. 또한 미국에서는 아동수당제도는 도입되지 않았으나 조세감면을 통해서 아동의 존재 자체로 소요되는 비용과 자녀 양육을 위해 이용하는 보육 및 교육비에 대한 조세 감면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즉 보육료 지원사업과 아동수당은 일반적으로 중복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보편적인 아동수당이 전면적으로 도입되게 되면, 아동수당을 축으로 하여 보육지원사업도 전체적인 가족정책의 맥락에서 재정비 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노동정책측면에서 아동 수당과 서비스중복에 해당될 수 있는 제도로는 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를 들 수 있다. 양 제도와 아동 수당과의 중복성 여부는 산전후 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는 자녀의 양육 지원을 목적으로 마련된 제도라기 보다는 우선적으로 여성 근로자의 모성 보호와 여성고용을 촉진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는 것에서 아동 수당과의 중복성 문제를 피할 수 있다고 본다. 산전후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는 자녀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해 직장 생활을 잠시 휴직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는 근로자들에게 자녀 출산이나 양육을 위해 받지 못하는 급여, 다시 말해 자녀 출산이나 양육에 따른 기회비용을 보상해 준다는 측면에서 마련된 제도이다.

따라서 산전후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는 최소한의 소득 보전을 통해 근로자의 생활 안정에 기여한다는 노동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정책으로 볼 수 있다. 동 급여가 모두 고용보험에서 일부 지원된다는 것을 보아도 근로자 생활 안정을 위한 사회 보험적인 성격이 강한 제도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동 수당이 자녀의 t정책 발달을 위해 마련된 제도라는 것을 볼 때 산전후휴가 급여와 육아휴직급여와는 정책 추진의 목적 측면에서 자 생활분명하다. 외국의 사례료자의더라도 아동 수당과 육아 휴직 급여는 별개의 정책으로 중복 급여를 허용하고 있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아동 수당과 세제 지원 제도와의 중복성을 살펴보면, 소득세의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와 특별공제는 아동이 있는 가구에 대한 소득제고라는 측면에서는 중복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아동수당이 보편적이면서도 관대하게 제공되고 있는 유럽국가들의 경우는 세계상의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제도가 부재하거나, 수당

과 세금공제간 선택하도록 하고 있는 나라들도 있다. 반면 영국과 같이 아동수당을 기본층으로 깔고, 아동세액공제(Child Tax Credit)를 위주로 가족정책을 전개하는 나라도 있다. 현실적으로 재원이 충분하다고 한다면 세계 혜택과 아동수당의 중복성에 대한 논의는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으나, 재원이 충분하지 못한 대부분의 경우 많은 나라에서 아동수당의 확대와 함께 세제상의 부양가족관련 공제제도가 축소되거나 폐지되는 경우가 있었다.

근로장려세제는 저소득층의 근로의욕을 증진시키고 빈곤으로부터의 탈출을 유인하기 위한 제도로 아동 수당과 근로장려세제의 제도도입의 취지를 고려해 볼 때 중복성은 없다고 판단된다. 기초보장수급가구들의 경우 이미 근로장려세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으므로 중복수혜의 문제가 발생할 수 없다. 다만, 18세 미만 자녀를 두고 있는 저소득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복성이 지적될 가능성이 있으나, 이는 근로장려세제의 도입시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향후 18세 미만 자녀수 규정은 철회될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 따라서 근로장려세제와 아동수당의 중복성의 가능성은 없다 할 수 있다.

중앙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은 아니지만 각 지자체가 추진하고 있는 양육 지원 정책 역시 아동 수당과의 서비스 중복 차원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 지자체별로 별도로 운용되고 있는 수당 중 아동 수당과 겹칠 수 있는 제도로는 다자녀 가정 양육수당, 출산 축하금을 들 수 있다. 특히 농어촌지역의 경우 도시에 비해 높은 고령화율로 인해 생산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농어촌지역 지자체의 경우 인구유입과 고령화수준을 낮추기 위해 각종 다자녀 및 출산수당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다자녀 가정 양육수당 및 출산 축하금은 지자체에서 별도의 예산을 통해 운용되는 제도라 할 수 있다.

출산 축하금의 경우 자녀출산에 대해 일회에 한정되어 지급되는 수당이므로, 매월 지급되는 아동수당제도와는 지급방식에 있어서 다르다 할 수 있다. 다자녀 가정 양육수당의 경우 일부 지자체에서는 첫째, 둘째아에 대해서도 지원을 하고 있으나 주로 셋째아를 대상으로 지급되고 있다. 2008년 기초노령연금 도입시 각 지자체별로 운용되고 있던 교통수당, 장수수당, 장수노인 상차림 등 다양한 노인복지사업들이

기초노령연금제도로 통합되도록 한바가 있다. 중앙정부 차원의 아동수당 도입시 현 지자체별로 통일되지 않은 기준과 급여수준들이 하나로 통합·조정 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될 수 있다. 따라서 아동수당 도입을 통해 복잡하고 다양한 지자체별 출산 및 이동관련 수당들을 새롭게 정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나. 소득공제 제도 개편시 수혜계층의 변동

현행 소득공제제도는 면세점 이하의 가구와 저소득층 가구보다는 고소득층일 수록 혜택이 많은 역진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소득공제제도는 조세체계를 복잡하게 하여 효율성을 저해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현행 소득공제제도를 개편하여 아동수당의 재원을 조달하는 경우, 공제제도를 통한 조세지원 방식의 약점을 극복할 수 있고, 수혜자 측면에서도 소득공제보다는 현금지원이 지원에 대한 정책 만족도나 체감율이 높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현행 소득공제제도를 개편하면, 고소득층에서 저소득층으로, 전가구에서 아동수당 대상자 가구로 수혜계층이 변동하게 된다. 예를 들어, 현행 6세 이하 자녀에 대한 추가공제액을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축소한다면, 공제가 축소되면서 소득세를 계산하는 기준 과세 대상액이 증가하여, 아동수당 지급연령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정이나 아동수당의 지급을 받을 수 없는 가정에의 부담은 증가되게 된다. 또한 중산층이하 계층의 수혜는 증가하겠지만, 고소득층의 부담은 증가하게 된다.

대상아동의 연령이 높고 대다수 소득계층을 포함하는 보편적 형태의 아동수당이 도입되고, 소득공제제도의 개편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소득분포상 대다수의 가구가 수혜대상이 됨에 따라 세제감면 혜택의 정비에 따른 소득계층간 부담의 변동은 상대적으로 작을 수 있다. 또 부양아동이 있으나 아동수당 지급연령 이상의 자녀를 가진 가정에 대한 부담도 상대적으로 작을 수 있다. 다만, 아동수당이 저소득층 가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소득공제제도의 개편은 고소득층 아동부양 가구에서 저소득층 아동부양 가구로 소득이 이전되는 소득재분배적인 측면이 강화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결론하면, 아동수당과 함께 소득공제제도를 개편하는 경우 중산층 미만 가구에 대한 소득재분배 효과와 함께, 빈곤아동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 아동 수당 제도 도입을 위한 사회적 합의

정부가 아동 수당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은 보편적 성격의 아동 수당 지원을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이며 이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재원 마련이 어려운 이유는 아직 우리 사회에서 가족에 대한 지원 정책이 사회복지 정책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스웨덴과 프랑스와 같이 사회복지가 발달한 국가에서는 가족에 대한 지원 정책이 연금, 건강보험, 장애인 복지, 실업자 지원과 함께 중요한 사회복지의 한축으로 간주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고려해 볼 때 우리나라 복지 정책에서 가족 지원 정책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는 상당히 미흡한 실정이다. 우리나라에서 가족과 관련한 현금 지원 정책은 한부모, 장애아 등 취약가정에만 한정되어 있으며 보편성을 지향하고 있다. 양육수당 역시 현재 재정 여건상 저소득계층에 한해서만 지원을 하고 있다. 지자체에서 출산 장려의 목적으로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다자녀 가정을 대상으로 출산 축하금 혹은 양육 수당을 지원하고 있지만 이것도 아직은 일부 지자체에만 한정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 가족급여와 관련된 정부의 공공지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에 속한다. 우리나라에서 가족에 대한 급여 지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보육료 지원이다. 가족에 대한 현금 지출이 가족 급여에서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다른 OECD 국가와는 상당히 비교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예산상의 문제로 아동 수당이 저소득층만을 대상으로 지원될 경우 이는 우리나라 복지 정책이 잔여적 복지에 머무른다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아동 양육 지원 정책은 영유아가 공공재라는 것을 감안해 볼 때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전체 가정에 대해 보편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아동 수당은 보편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아동 수당의 보편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은 개별 가정이나 전 국가적인 책임이라는 것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합의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아동 수당에 대한 정부의 과감한 재정적 지출이 가능해 질 것으로 판단된다.

라. 아동 수당과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

여성학적 관점에서 아동 수당의 도입을 반대하고 있는 중요한 이유는 아동 수당을 도입함에 따라 여성의 취업 의사가 저하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다. 하지만, 월 10만원 수준의 아동 수당이 지급된다고 가정해 볼 때 직장을 포기하고 자녀를 집에서 양육하는 사례는 거의 희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직장을 포기 하는 경우는 대부분이 가정 내 돌봄 자녀가 세 명 이상이라서 가사와 양육에 전념해야 하는 경우가 아니면 대부분의 경우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을 선택할 것으로 판단된다.

아동수당이 여성 경제활동 참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는 아동 수당 정책 차원이 아니라 여성을 위한 노동 시장 환경 개선의 차원에서 논의될 사항이다. 그 동안 여성의 노동 시장 참여는 꾸준히 증가하여 여성 노동의 양적인 측면에서는 향상되었지만 이러한 양적인 증가가 질적인 증가로는 이어지지 않았다는 비판이 있다. 많은 수의 여성들이 비정규직이나 시간제 등 불완전한 고용 상태에서 낮은 임금 수준으로 일하고 있는 이상 원하는 수준으로 아동 수당이 주어진다면 전문직에 종사하는 여성이 아니고서는 직장생활을 포기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노동 환경 측면 뿐만 아니라 직업에 대한 여성들의 태도 역시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직업 의식과 커리어 의식이 강한 상태라면 아무리 본인이 희망하는 액수의 아동 수당이 지급되어도 직장을 포기하는 일은 거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동 수당과 여성의 취업 의향과의 문제는 아동 수당 정책을 도입할 것이냐 말아야 할 것이냐의 차원이 아니라 여성 고용의 환경을 개선하고 여성들의 커리어 의식을 향상하는 차원에서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다. 향후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보다 활발해 질 것으로 기대되는 바 여성의 고용 환경은 개선될 가능성이 크며, 전문직 여성의 증가로 인해 여성들의 커리어 의식도 향상되고 있는 바, 아동 수당이 아무리 희망하는 수준으로 지급되어도 직장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여성들의 비중은 점차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마. 중산층에 대한 지원

아동 수당이 도입이 된다면 보편적인 형태로 자녀를 가진 모든 가정에 대해 지원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때 제기될 문제점은 중산층 이상의 고소득 가정에 대해 아동 수당을 지급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고소득층은 저소득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양육비를 지출하고 있기 때문에 자녀 양육비에 대한 부담감이 고소득층이라고 해서 적은 것은 아니며 오히려 더 높은 부담감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 이러한 행태는 중상위 소득 수준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저소득층에 비해 적은 수의 자녀 갖기를 원하거나 실제로 적은 수의 자녀를 갖는 경향에서 발견 된다. 자녀 양육 부담은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계층이 가지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소득 계층에 상관 없이 아동 수당을 보편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아동 수당이 자녀 양육에 대한 국가적인 책임을 강조한다는 정책상의 지향점을 고려해 볼 때 보편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며 다만, 소득 형평성 문제를 고려하기 위해서 소득계층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즉, 소득분위별로 그룹을 나누어 높은 소득 집단 일수록 지원액수를 감액하여 지급하고 최상위 소득 계층에 대해서는 아동 수당을 지원하지 않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바. 출산률 제고 목적으로서의 아동 수당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의 출산률을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저출산 문제가 미래 사회의 성장 동력 확보에 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감안해 볼 때 아동 수당을 포함한 제반 가족 정책은 출산률 제고를 위한 목적을 가질 필요가 있다. 실제로 프랑스의 경우 다자녀 가정에 대해 더 높은 수당 액수를 지원함으로써 아동 수당 정책에 출산률 제고라는 암묵적인 의도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아동 수당 정책도 다자녀 가정에게 더 높은 급여액을 지원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초기 예산 확보의 문제에 부딪친다면 소득 수준에 상관 없이 다자녀 가정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도 있다. 처음에는 셋째 자녀 이상에 대해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일정액의 아동수당을 지급한 후, 둘째 자녀

그리고 모든 자녀를 가진 가정으로 확대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사. 지자체 양육 지원과 아동 수당간의 관계 재정립등을 통한 지방비 확보 가능성

현재 많은 지자체에서 저출산 정책의 일환으로 출산 축하금 혹은 양육비 지원 사업을 자체적으로 마련하여 지원하고 있다. 부산과 같은 대도시 지자체에서는 지역의 저조한 출산률 수준으로 인하여 인구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으며 농촌 지역에서는 도시 지역 보다 상대적으로 출산률은 높으나 젊은 세대 인구 유출로 인한 심각한 인구 감소 문제를 가지고 있다.

지역의 출산률 수준을 회복하고 인구 유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각 지자체에서는 출산 축하금과 양육비 지원 사업을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각 지자체마다 나름대로의 조례를 작성하여 자체적인 예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통일 되지 않게 추진되고 있다. 즉, 각 지자체의 정책 추진 의지와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 금액, 지원 대상, 기원 기간 등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지자체 자체 사업이고 있다. 지중양정부 차원에서도 지자체로 하여금 통일된 기준의 양육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라고 지침을 내리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이렇게 각 지자체마다 통일되지 않은 기준으로 양육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바라보고 있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거주 지역에 따라 양육비 지원에 많은 불평등이 있다고 느끼고 있다. 지자체 입장에서도 지역마다 통일적인 기준으로 양육비 지원 사업이 이루어질 것을 희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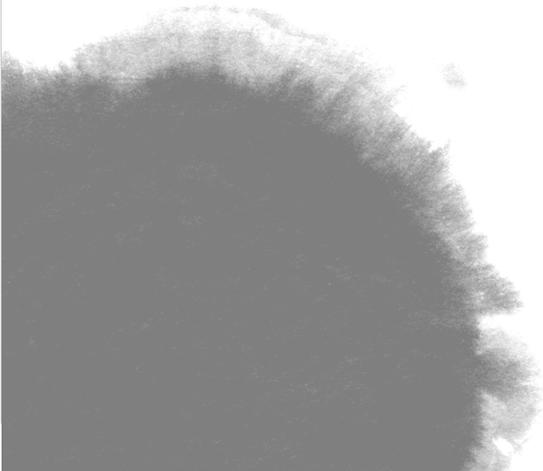
이러한 시점에서 국가적으로 통일된 기준의 아동 수당을 도입하는 것은 양육비 지원에 대한 지역간의 편차를 줄여 정책의 형평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각 지자체에서 지원하고 있는 다양한 양육비 지원 사업을 아동 수당 정책으로 흡수하여 현재 지자체가 자체적인 양육비 지원 사업에 지출하고 있는 예산을 아동 수당 정책 추진을 위한 지자체 매칭 펀드로 사용할 수 있다. 현재 각 지자체마다 어느 정도 양육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아동 수당 제도로 흡수할 때 아동 수당 제도를 도입시 지자체 매칭 펀드 조성에는 큰 무리가 따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아동 수당을 도입함으로써 현재 일관적이지 않게 추진되고 있는 지

자체 양육비 지원 사업이 통일된 기준으로 정리되어 지역별 편차를 극복하고 지역간 양육비 지원 형평성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07

K
I
H
A
S
A

결론 및 정책제언



제7장 결론 및 정책제언

우리나라에서의 아동수당 도입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어져 오고 있다. 우리나라의 가족정책은 주로 보육정책과 인구정책 등을 중심으로, 확고한 가족정책모형이 없이 전개되어 왔던 경향이 있다. 최근에는 저출산에 대한 우려와 함께 저출산 극복을 위한 차원에서의 가족정책이 전개되고 있으며, 이에 보육지원의 확대가 더하여 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가족정책은 영유아에 대한 지원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어, 우리나라의 경우 만 5세 이상 아동에 대한 정책은 상당히 미미한 편에 속한다. 하지만 아동의 건전한 발달과 육성을 통한 미래성장동력의 구축과 아동에 대한 선제적 투자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만 5세 이상 아동 및 보편적이며 관대한 가족정책을 펴고 있는 유럽국가들로부터, 최근에는 몇몇 아프리카의 나라들까지 아동수당이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다. 95개 국가의 아동수당은 각각 그 나라의 가족정책의 맥락에서 보육지원, 노동시장정책등과 함께 제도들과 시행되고 있다. 유럽국가들의 경우 아동수당 외에도 다양한 종류의 아동양육과 관련된 수당이 제공되고 있는 나라도 있다. 물론 우리나라와는 경제사회적 환경이 다르고, 이미 여성의 노동참여율이 매우 높은 유럽국가들의 모형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은 현실과는 맞지 않는 일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보육정책을 중심으로 가족정책의 확대가 이루어 지고 있으며, 노동시장정책을 통한 자녀양육관련 지원도 많은 발전이 이루어져왔고, 소득공제를 통한 자녀양육관련 세제지원도 제공되고 있다. 하지만 영유아를 제외한 일반 아동에 대한 지원은 방과후 학습지원이나, 교육비 공제를 통한 세제지원외에는 미흡한 것이 현 실정이다.

아동수당은 아동의 인적자원 육성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공유하는 것으로, 아동이

있는 유자녀가족에 소득을 보전하여 줌으로써, 자녀양육에 따른 가구부담을 완화하여 유자녀가족과 아동이 빈곤해 지는 것을 예방하고, 아동의 건전한 발달과 육성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제도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아동수당 자체만으로 출산율이 높아진다는 실증적 연구는 미미하기는 하지만, 아동수당을 통한 유자녀가족의 소득보장은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유인을 제공하는 것은 분명할 것이다. 현행과 같이 낮은 출산율에 대한 우려가 팽배한 시점에서는 아동수당의 설계에 다자녀 아동에 대한 추가적인 급여를 허용하는 형태를 포함하게 되면, 출산에 대한 긍정적 유인은 더욱 강하여 질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아동수당은 아동이 있는 모든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대상 아동의 연령도 높아야 하며, 순서에 상관없이 첫째아부터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그 본연의 취지에 보다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이러한 보편적 수당의 도입은 막대한 재원을 필요로 하게 되며, 이에 대한 우려로 대부분의 나라에서 아동수당은 대상 아동의 연령과 가구소득에 따라 제한적으로 도입되었다가 점차적으로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 일본의 경우는 일정소득 이하의 가구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대상아동은 도입당시에는 만 5세 미만 셋째아부터 시작하였다가, 점차 첫째아까지 포함하게 되었으며, 대상의 확대와 축소를 거듭하다가 현재는 12세 아동까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재정추계결과에서도 보편적인 아동수당을 월 10만원씩 18세까지의 모든 아동에게 지급하는 경우 약 11조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계되었으며, 6세까지의 (만 5세이하) 모든 아동에게 지급하는 경우 약 3조6천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되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아동수당이 도입된다고 할 때도 도입 초기에는 대상자를 소득과 연령, 자녀의 순서로 선별하는 것이 제도의 도입과 안정적 정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즉, 도입시기에는 소득기준은 차상위미만, 연령은 6세까지를 대상으로 둘째아부터 지급하는 방식으로 시작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후에는 연령을 12세까지 확대하여, 아동에 대한 지원이라는 정책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확대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중산층 가구에서 자녀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다. 자녀의 보육료나 양육비의 부담이 출산의향 등에 영향을 가장 크게 미칠 수 있는 것도 사실 중산층이다. 이러한 의미에서는 중산층 아동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중기적으로는 아동수당의 소득기준을 소득하위 50%로 확대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후는 둘째 아동의 기준을 첫째아까지 모든 아동을 포함하도록 보편성을 확대하고, 차후로 연령을 18세 까지 확대하여 보편성을 확보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제도가 안착되고 아동양육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후 아동수당을 소득 80%까지 확대하여 보편성을 지향할 수 있다.

〈표 7-1〉 아동수당의 도입 및 중장기 확대방안

(단위: 만원)

	소득기준	연령	대상아동	급여수준	대상자	재원
1	차상위	6세	둘째아동	10만원	211,272	25,352,645
2	차상위	12세	둘째아동	10만원	490,220	58,826,354
3	하위 50%	12세	둘째아동	10만원	1,882,251	225,870,084
4	하위 50%	12세	첫째아동	10만원	3,463,654	415,638,476
5	하위 50%	18세	첫째아동	10만원	5,193,744	623,249,261
6	하위 80%	18세	첫째아동	10만원	9,506,421	1,140,770,463

아동수당도입과 관련된 재원조달은 여러 가지 방향으로 이루어 질 수 있다. 정부지출의 증가로 인한 추가적 재원 마련 방안의 일반적 논의는 조세를 통한 재원조달이나, 국채를 통한 재원조달이나, 혹은 세출구조의 효율적 정비를 통한 절감분을 활용하느냐하는 것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수당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국가들을 중심으로 재원조달의 방식을 살펴보았다. 이들 나라의 재원조달 방식은 다양하지만, 아동수당이 보편적이고 관대한 나라인 경우 소득세제 상의 부양아동관련 공제가 축소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부양아동관련 공제제도가 부재하거나, 있더라도 세제감면과 수당 중 한 가지를 선택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또 아동수당제도가 보편화되거나 대상자의 확대가 일어나는 경우 기존 소득세제의 부양가족관련 공제제도를 축소하거나 폐지하여 추가적 재원을 조달하는 국가들도 많았다. 우리나라에서도 아동수당의 재원조달은 현행의 부양가족과 관련된 소득공제제도의 개편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현행 소득세의 인적공제제도는 소득역진성이 있으며, 면세점 이하계층이나 저소득층에게는 혜택이 적다는 측면의 문제점이 있다. 아동수당이 저소득층 가구를 중심으로 도입되는 경우 인적공제제도 개편

을 통한 재원조달은 고소득층 유자녀 가구에서 저소득층 유자녀가구로의 소득재분배를 강화하게 된다. 한편, 아동수당이 보다 보편적인 형태로 차상위 계층 이상의 소득계층을 포함하고, 연령도 12세 ~18세까지로 포괄적으로 확대될 때는 소득공제제도 개편에 따른 수혜계층 변동의 논란도 적어질 수 있다.

아동수당의 도입과 정착은 또한 우리나라 가족정책의 틀을 새롭게 개편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아동수당을 일층으로 하고, 그 위에 소득과 보육수요에 따른 차등보육료 지원과 보육시설의 확충 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아동양육지원을 체계화 할 수 있다. 최근에 시행된 양육수당은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과 그렇지 않은 아동간의 형평성 제고의 차원에서 도입되었으나, 보다 포괄적인 아동수당이 도입되어 아동양육의 기초를 제공하고, 보육수요에 따른 보육료 지원과 보육시설 확충지원을 중심으로 보육정책을 체계화 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한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아동 수당을 도입함으로써 현재 일관적이지 않게 추진되고 있는 지자체 양육비 지원 사업이 통일된 기준으로 정리된다면, 지역별 편차를 극복하고 지역 간 양육비 지원 형평성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 고경환, 정경희, 김미숙, 강지원, 『OECD 기준에 따른 한국의 Family Database 구축방안 연구』, 보건복지가족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9a.
- 고경환, 장영식, 김재진, 정무성, 강지원, 『2007년도 한국의 사회복지지출 추계와 OECD 국가의 노후소득보장체계』, 보건복지가족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9b.
- 고경환, 장영식, 강지원, 『2006년도 한국의 사회복지지출추계와 OECD 국가의 가족정책 비교』,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건복지가족부, 2008.
- 고경환, 「OECD 국가들의 가족정책 유형화와 한국에의 함의 : 노르웨이,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뉴질랜드, 한국을 중심으로」, 『보건복지포럼』, 2009.
- 국중호, 『주요국의 조세제도 : 일본편』, 한국조세연구원, 2004.
- 민희철, 우석진, 김현숙, 김혜원, 류덕현, 옥우석, 『저출산 극복 및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가족친화정책 : 조세, 재정, 보육·교육, 여성노동 분야에서의 정부의 역할』, 연구보고서, 한국조세연구원, 2007.
- 박정수, 『주요국의 조세제도 : 영국편』, 한국조세연구원, 2004.
- 심미례, 『한국의 아동수당제도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2007.
- 신윤정, 「2007년 프랑스 가족 수당 정책의 개관」, 『국제사회보장동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7.
- 신윤정, 「프랑스 저출산 정책의 주요 현황」, 『보건복지포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9.
- 안창남, 『주요국의 조세제도 : 프랑스편』, 한국조세연구원, 2004.

- 여성부, 『2005년 3월 세계여성정책보고』, 여성부 국제협력담당관실.
- 오기섭, 『고용보험법제의 효율화 방안 연구』, 2007.
- 윤로덕, 김상호, 박정란, 『사회보험과 노동조합의 역할』, 한국노동연구원, 2008.
- 윤홍식, 「노르딕 4개국 가족정책의 보편성과 상이성 : 아동보육과 돌봄 관련 휴가 정책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제59권 제 2호, 2007.
- 이선주, 박선영, 김은정, 「주요국가의 아동수당제도에 관한연구 : 프랑스, 핀란드, 일본을 중심으로」, 『사회보장연구』, 제 23권 제 4호, 2007.
- 이선주, 박선영, 김은정, 『아동수당제도의 국제비교 및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 한국여성개발원, 2006.
- 이재완, 최영선, 『세계의 아동수당제도』, 양서원, 2006.
- 이재완, 최영선, 「외국의 아동수당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영유아보육학』, 제42권, 2006.
- 이진숙, 「독일 가족정책의 현황과 젠더적 성격」, 『한국사회복지학』, 제 58권 제 4호, 2006.
- 이진숙, 김태원, 「EU 국가들의 가족정책의 한국 가족정책에 대한 함의」, 『한·독 사회과학논총』, 제 17권 제 1호, 2007.
- 전병목, 조찬래, 「주요국의 자녀세액공제와 시사점」, 『세법연구 06-08』, 세법연구센터, 한국조세연구원, 2006.
- 정연숙, 『저출산에 따른 국가의 대응정책에 관한 연구』, 2005.
- 최문숙, 『저출산 정책과 해결방안 연구』, 2007.
- 최영진, 「일본 아동수당법에 관한 연구 : 수당의 지급을 중심으로」, 『법학연구』 제48권 제2호, 통권58호, 2008.
- Akiko Oishi, Aya Abe, Yoshimi Chitose, and Yukiko Katsumata. Child related policies in japan, national institute of population and social security research, 2003
- EC, 『MISSOC(Mutual information system on social protection)』, European Commission, 2008.

Jonathan Bradshaw and Naomi Finch, A comparison of Child Benefit packages in 22 countries(2002), OECD.

OECD, 『Babies and Bosses : Reconciling work and Family life, vol.2 Austria, Ireland and Japan』, OECD, 2003.

_____, 『Child Related Policies in Japan』, National Institute of Population and Social Security Research, 2003.

_____, 『Extending Opportunities : How Active Social Policy Can Benefit Us All』, 2005.

_____, Taxing Wages 2007-2008 (2008), Paris: OECD.

SSA, 『Social Security Programs Throughout the World : Africa, 2009』, Social Security Association, 2009.

_____, 『Social Security Programs Throughout the World : America, 2005』, Social Security Association, 2005.

_____, 『Social Security Programs Throughout the World : Asia Pacific, 2008』, Social Security Association, 2008.

_____, 『Social Security Programs Throughout the World : Europe, 2008』, Social Security Association, 2008.

Institute for Child and Family policy 홈페이지(<http://www.childpolicyintl.org>)

UK DWP(Department of Work and Pensions) 홈페이지(<http://www.dwp.gov.uk>)

UK Paliament 홈페이지(<http://www.parliament.uk>)

_____, 『2009税金ポケットブック』, 近代セールス社, 2009.

_____, 『児童手当事業年報 平成19年度』, 厚生労働省雇用平等・児童家庭局, 2007.

今仲 清, 坪多 晶子, 『税制改正のポイント(平成21年度版)』, TKC出版, 2009.

代田 純, 『日本の國債・地方債と公的金融』, 税務経理協會, 2007.

神野 直彦, 池上 岳彦, 『地方交付税 何か問題か』, 東洋経済, 2005.

児童手当制度研究会, 『児童手当法の解説(4訂)』, 中央法規, 2007.

兒童手當制度研究會, 『兒童手當私務マニュアル - 四訂』, 中央法規, 2008.

日本 國稅廳 홈페이지(<http://www.nta.go.j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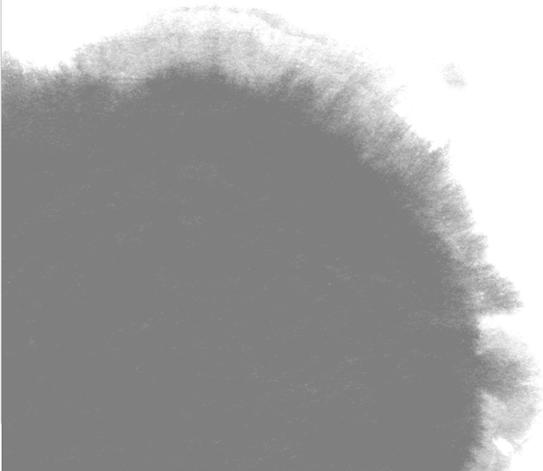
日本 社會福祉・人口問題研究所 홈페이지(<http://www.ipss.go.jp>)

日本 厚生勞動省 홈페이지(<http://www.mhlw.go.jp>)

井堀 利宏, 『要設日本の財政・税制(3訂版)』, 稅務經理協會, 2009.

川上 尙貴, 『(圖說)日本の税制(平成20年度版)』, 財經詳報社, 2009.

부 록



〈부표 1〉 정부가 전액 부담하는 국가들

국가	재원	방식	대상	종류	기준	급여
호주 Australia	일반세입 (general revenue) 에서 전액.	보편주의 사회부조	한 명 이상의 자녀를 둔 모든 거주자.	Family tax benefit, Part A and B)	<p>- 2008년 1월부터, 자녀부양 비용의 최소 35%를 부담하고 있는 개인에게만 자격 부여.</p> <p>[Part A]: 20세 이하(학생은 24세)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정에 지급.</p> <p>- 가족의 연간소득이 AUS 42,559(약 4,863.9만원)를 넘지 않는 경우에 최고금액이 지급됨.</p> <p>- 18세 미만의 자녀 일인에 대해 최고 AUS 100,801(약 11,520.1만원)까지 혜택 부여(18세 미만의 자녀 또는 18-24세 의 자녀가 추가됨에 따라 최고금액이 증액됨).</p> <p>[대가족추가분(large family supplement)]: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에 Part A의 일부로서 추가 지급됨.</p> <p>[쌍둥이수당(multiple birth allowance)]: 쌍둥이가 이상 출산한 가정에 Part A의 일부로서 추가 지급됨.</p> <p>- 자녀가 16세에 이르는 해(적어도 3명의 자녀가 전업 학생인 경우는 18세까지)까지 매 2주마다 수당이 지급됨.</p> <p>[임차수당(rent allowance)]: Part A의 수급자이면서 개인부동산 임자에게 임대료를 지급하고 있는 가정에 지급.</p> <p>[Part B]: 6세 미만(학생의 경우 18세)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정에 지급.</p> <p>- 1인소득자가(한부모가족 포함) 중 유자녀 가구에 지급.</p> <p>- 5세 미만을 둔 가정에 가장 높은 금액이 지급됨.</p> <p>- 제2 소득자의 연간 수입이 AUS 4,526(약 517.3만원)을 넘지 않는 경우에 최고금액이 지급됨. (한 부모 세대는 소득조사 의 대상이 되지 않음.)</p> <p>- 부부의 경우, 배우자의 연간 소득이 AUS 22,995(약 262.8만 원)이고 5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 또는 AUS 17,904(약 204.62만원)이고 5세-18세의 자녀가 있는 경우 Part B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음.</p>	<p>[Part A] 자녀의 연령에 따라 차등 지급됨. [최고금액] - 18세 미만 자녀 : AUS 48,300(약 5.5만원)/2주 - 18 ~24세 자녀 : AUS 64,960(약 7.4만원)/2주 [최고금액] - 13세 미만 자녀 : AUS 151,340(약 17.3만원)/2주 - 13 ~15세 자녀 : AUS 196,840(약 22.5만원)/2주 - 16 ~17세 자녀 : AUS 49,300(약 5.6만원)/2주 - 18 ~24세 자녀 : AUS 64,960(약 7.4만원)/2주 (연말에 일시불로 해당 자녀 당 AUS 686.20(약 78.4만원)/1연 간 가 추가 지급됨.) [대가족추가분(large family supplement)] - 셋째 자녀부터 일인 당 AUS 10,336(약 1.2만원)/2주가 추가 지급됨. - 셋째 자녀부터 일인 당 AUS 10,336(약 1.2만원)/2주가 추가 지급됨. [쌍둥이수당(multiple birth allowance)] - 세 쌍둥이 : AUS 125,580(약 14.4만원)/2주 (가족세제혜택에 추가됨)(Part A) [임차수당(rent allowance)] - 정해진 임차액 한도를 초과한 AUS 1.00마다 AUS 0.75(약 1천원)를 지급. - 수급신청자의 독신여부, 자녀의 수, 임대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됨. [Part B] [최고금액] - 5세 미만 자녀 : AUS 128,800(약 14.7만원)/2주 - 5 ~18세 자녀 : AUS 89,740(약 10.3만원)/2주 (연말 일시불로 AUS 335,800(약 38.4만원)연간 추가 지급) AUS 50,400(약 5.8만원)/2주</p>
				(Double orphan pension)	<p>- 16세 미만(학생의 경우 21세)의 아동에게 지급.</p> <p>- 양부모 모두 질병에 걸렸거나(또는 한부모가 질병에 걸렸고 다른 한쪽 부모가 장기입원 · 10년 이상 투옥 · 행방불명인 경우) 또는 특정 환경의 난민아동에게 지급됨(소득조사없음).</p>	

<부표 1> 계속

국가	제원	방식	대상	종류	기준	급여
호주 Australia	일반세입 (general revenue) 에서 전액.	보편주의 사회부조	한 명 이상의 자녀를 둔 모든 거주자.	(Maternity payment) (Maternity immunization allowance) (Child care benefit)	입양, 사산, 출생 후 사망 등의 경우 등을 포함하여 자녀를 출 산한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지급. 24개월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지급. - 18개월까지의 아동에게 권장되는 예방접종을 모두 접종시켰 거나, 예방접종 대상에서 면제되는 경우 지급됨. 권장예방접종을 모두 접종시켰거나 면제된 경우 또는 공인보육 기관에 보육비를 지불하고 있는 경우에, 자녀를 양육하는 거주 가정에 지급.	일반적으로 한 자녀당 AUS 5,000(약 571.3만원) 지급. (2009 년 1월부터, 13회에 걸쳐 2주마다 나누어서 지급됨.) 일시불로 AUS 222.30(약 25.4만원) 지급. (2009년 1월부터, 2회에 나누어 지급됨.) 가계소득, 자녀의 수, 매주 보육시간, 자녀의 연령, 보육기관의 상 태에 따라 차등 지급됨. 공인보육기관을 이용하는 저소득 가정에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함. - 첫째 자녀에게 18.10파운드/주 지급, 추가자녀들에게는 일인 당 12.10파운드/주 추가지급. (2007년 4월부터)
영국 United Kingdom	정부전액 부담	보편주의	1명 이상의 자녀를 둔 거주자	아동 수당 (Child benefit) 자녀세제혜택 (Child tax benefit) 근로세제혜택 (Working tax benefit)	만 16세 미만 아동(구직활동 중인 경우 16-17세까지, 전업학생 일 경우 만 19세 미만까지) 자격은 영구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나에 따라 결정됨. 매주 16시간 이상 근로하는 피고용인이나 자영업자.	이동이 있는 연간소득 58,175파운드 이하의 가정에 제공(1살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는 66,350파운드). 근로여부는 상관없이 지급. 1살 이하의 자녀와 장애아동에게 추가 세계 혜택이 제공됨. 소득과 가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급되며, 자녀양육비용을 포 함하고 있음. 장애근로자와 중증장애자에게는 추가 세계 혜택이 제공됨.
독일 Germany	정부전액 부담 자영업자에 게는 작용되지 않음.	보편주의 사회부조	1명 이상의 자녀를 둔 부모 양부모가 모두 없는 고아 및 부모와 연타이 두절된 아동들	(Child benefit) (Child allowance : means-tested)	18세 미만 아동(직업이 없을 경우 만 21세 미만, 학생이거나, 전업학생, 자원봉사자에 있는 경우는 만 27세 미만까지, 장애인 은 나이제한 없음) 아동의 연간소득이 7,680유로 이상일 경우, 지급이 정지됨. 25세 미만의 아동을 1명 이상 둔 그들 스스로의 필요를 충족시 킬 수 있지만 자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어려운 부모에게 지급. 특정 소득 최저금액과 최고금액 사이에 있어야 하며, 아동급여 지급 대상자 이어야 함.	- 첫째, 둘째, 셋째자녀까지 : 154유로/월 - 이후의 자녀 : 179유로/월/인당 최장 36개월까지 일인당 최대 140유로까지 지급됨. 지급대상 자녀가 2명 이상이면, 결함된 총 수당이 지급됨. 아동 본인의 소득이 있으면 급여가 감액됨.

<부표 1> 계속

국가	제원	방식	대상	종류	기준	급여
독일 Germany	정부전액 부담, 자영업자에 게는 적용되지 않음.	보편주의 사회부조	1명 이상의 자녀를 둔 부모 양부모가 모두 없는 고아 및 부모와 연락이 두절된 아동들.	(Child-rearing allowance : means-tested)	2007년 1월 1일 이전에 태어난 2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부모에게 지급. 부모는 무직상태·직업교육 중·주당 30시간 미만 근무 상태로 소득이 특정 연간 소득 상한치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이어야 함. [첫 6개월간 연간소득 상한치] - 자녀가 1명인 경우 : 30,000유로(1년 급여로 대신하고자 한다 면, 22,086유로) - 자녀가 1명인 한부모 : 23,000유로(1년 급여로 대신하고자 한 다면, 19,086유로) [첫 6개월이 지난 뒤의 연간소득 상한치] - 자녀가 1명인 경우 : 16,500유로(1년 급여로 대신하고자 한다 면, 22,086유로) - 자녀가 1명인 한부모 : 13,500유로(1년 급여로 대신하고자 한 다면, 19,086유로) (자녀가 1명 늘어날 때마다, 3,140유로씩 소득상한치가 증가함.)	2살까지의 아동 1인당 300유로/월 지급. 선택적으로, 1살까지의 아동 1인당 450유로/연간 지급.
				(Parental benefit)	14개월 미만의 자녀 1명을 양육하는 부모에게 지급. 부모는 무직상태이거나 주간 30시간 미만의 근무자. 자녀 출생 후 한 부모는 최대 12개월까지 양육수당 수급. 부부의 경우, 최장 14개월까지 공유할 수 있으며, 최소한 2개월 이상은 다른 한쪽 부모에게 지급됨.	최대 월1,800유로(무직 상태일 경우 300유로)/월 까지, 지급신 청한 부모 총 소득의 최소 67%까지 지급.

<부표 1> 계속

국가	제원	방식	대상	종류	기준	급여
핀란드 Finland	정부 전액부담, 지방자치 단체가 이동 가정내 양육수당의 전액을 부담.	보편주의	1명 이상의 자녀를 둔 모든 거주자	가족수당 (Family allowance)	핀란드에 거주하는 만 17세 이하의 아동	- 한 자녀 : 1,200유로(약 211.8만원)/연간 - 두 자녀 : 2,526유로(약 445.8만원)/연간 - 세 자녀 : 4,098유로(약 723.2만원)/연간 - 네 자녀 : 5,916 유로(약 1,044만원)/연간 - 다섯 자녀 이상 : 일인당 2,064유로(약 364.2만원)/연간 추가 지급. [한부모(별적으로 별거·미혼 부모) 추가급여] 아동 당 559.20유로(약 98.37만원)/월 추가 지급.
				출생수당 (Birth grant)	건강검진이 필요하거나 임신 154일이 지난 임신부에게 지급. 18세 미만의 아동을 입양하는 자에게도 지급. (생동이의 수나 입양아동 수에 따라 증액하여 지급함.)	
				입양수당 (Adoption grant)	해외에서 자녀를 입양하는데 드는 비용 보상을 위해 지급.	1,900유로(약 335.3만원)~4,500유로(약 794.1만원)사이에서 일 시별로 지급.
				아동 가정내 양육수당 (Child home care allowance)	3세 미만의 아동을 부모 중 한쪽이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 지 급.	가정 내에서 양육하는 3세 미만 자녀 일인 당 3,531유로(약 623.1만원)/연간 이 기본적으로 지급되며, 7세 미만의 자녀 일 인 당 725.52유로(약 128.0만원)/연간 이 추가로 지급됨. [자산조사 추가급여 (Means-tested supplement)] 최고 168.19유로(약 29.7만원)/월 까지 지급됨. [부분 가정내 양육수당(Partial home care allowance)] 1주일에 최대 30시간까지 근로시간을 감축하는 부모에게 70유 로(약 12.4만원)/월 지급.

<부표 1> 계속

국가	제원	방식	대상	종류	기준	급여
룩셈부르크 Luxembourg	정부전액 부담	보편주의	룩셈부르크에서 거주하거나 합법적으로 등록된 모든 아동	(Family allowance)	만 18세 미만의 아동(학생이나 장애자인 경우 만 27세) [추가 수당] 자녀가 중증장애일 경우 지급.	- 한자녀 : 185.60유로/월 - 두자녀 : 440.72유로/월 - 세자녀 : 802.74유로/월 - 네자녀 : 1,164.48유로/월 - 6-10세는 각 자녀당 월 16.17유로를 추가 지급 - 자녀가 12세 이상인 경우 자녀당 월 48.52유로 추가 지급 [추가수당] 185.60유로/월 지급.
				(Birth allowance)	룩셈부르크에 거주하며 의료 검진을 받은 모친에게 지급.	산전수당(prenatal allowance), 출산 보조금(birth grant), 산후 수당(postnatal allowance)으로 1,740.09유로가 등분되어 지급
				(Beginning of school year allowance)	가족수당의 지급대상이 되는 6세에서 18세까지의 자녀(학생일 경우 27세까지)가 있는 가정	- 한 자녀 : 6세이상 자녀는 113.15유로, 12세이상 161.67유로 - 두 자녀 : 6세 이상의 자녀에게는 일인당 194.02유로, 12세 이상의 자녀에게는 일인당 242.47유로 지급. - 세 자녀 이상 : 6세 이상의 자녀에게는 일인당 274.82유로, 12세 이상의 자녀에게는 일인당 323.34유로 지급.
				(Child-rearing allowance)	- 2살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모든 거주자. 수급자는 반드시 자녀를 전일 양육하여야 하며, 가구 소득이 사회보장기여금을 공제하고 난 사회최소임금(social minimum wage)의 3배(자녀가 1명일 때),4배(자녀가 2명일 때),5배(자녀가 3명일 때)를 넘지 않아야 함. 표준 근로시간의 절반 이상을 자녀 양육에 사용하는 사람은 소득조사 없이 수당의 50%를 지급받을 수 있음.	- 485.01유로/월 지급.
				(Parental leave allowance)	가족수당의 지급대상이 되는 5세 미만 자녀를 둔 부모. 부모는 자녀의 출생 시에 룩셈부르크에서 일을 하고 있거나, 거주하고 있어야 함. 양육휴직기간 직전 12개월 동안 부모는 표준 근로시간의 절반 이상을 자녀 양육에 사용하여야 하며, 두 사람이 같은 고용주(또는 자영업자의 경우 보험 가입자에게 고용되어 있어야 함).	- 최장 6개월까지 1,778.31유로/월 지급.

<부표 1> 계속

국가	제원	방식	대상	종류	기준	급여
네덜란드 Netherlands	정부전액 부담	보편주의	1명 이상 자녀를 가진 자	가족수당 (Family allowanc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 16세 미만의 아동 : 피보함자 가정의 자녀여야 함.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특정 상황 아래에서 수당이 지급될 수도 있음. - 만 16-17세의 자녀 : 학교에 다니는 아동은 반드시 분기당 213시간 수업을 받아야 함(숙제 및 여행시간 포함). 이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는 고등기술학교나 대학에서 학년당 최고 1,680시간의 직업교육 수업을 받거나 다른 종류의 교육을 받거나, 다른 종류의 교육을 최소 1,600시간을 받으면 이동수당을 수급할 수 있음. - 장학금을 받거나 네덜란드 학생 복지재정법 하에 대출을 받은 학생은 수혜자가 될 수 없고, 일주일에 19시간 이상의 유급 직업에 종사하거나 실업수당을 받으면 수혜자가 될 수 없음(실업 청소원은 반드시 일주일에 최소 19시간을 일할 직장을 찾아야 하며 근로 센터에 등록해야 함.) - 병이 있거나 장애가 있는 학생은 같은 나이의 건강한 학생들 이 받는 임금의 55%이상을 반드시 받아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인당 11,640크로네(연간)을 매달 분할하여 지급. - 만 3세 미만의 아동은 둔 한부모 가족의 경우 연정된 아동 수당 받을 수 있고, 추가 육아보조금으로 연간 7,920크로네를 받을 수 있음 - 극지방에 거주하는 수급자는 연간 일인당 3,840크로네를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음.
노르웨이 Norway	정부전액 부담	보편주의	노르웨이에 거주하는 모든 아동	가족수당 (Family allowance) (Cash benefit for families with young childre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세에서 3세까지의 자녀와 확광이 이전의 입양된 아동은 대상으로 가장 23개월까지 매달 지급. - 전액 혜택(한 자녀당 39,636크로네)을 받기 위해서는, 자녀가 주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주간보호센터에 등록되지 않아야 하며, 동시에 주간 33시간 미만으로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는 경우 감액된 현금수급 혜택이 주어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인당 11,640크로네(연간)을 매달 분할하여 지급. - 만 3세 미만의 아동은 둔 한부모 가족의 경우 연정된 아동 수당 받을 수 있고, 추가 육아보조금으로 연간 7,920크로네를 받을 수 있음 - 극지방에 거주하는 수급자는 연간 일인당 3,840크로네를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음. - 1세에서 3세까지의 자녀와 확광이 이전의 입양된 아동은 대상으로 가장 23개월까지 매달 지급. - 전액 혜택(한 자녀당 39,636크로네)을 받기 위해서는, 자녀가 주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주간보호센터에 등록되지 않아야 하며, 동시에 주간 33시간 미만으로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는 경우 감액된 현금수급 혜택이 주어짐.

<부표 1> 계속

국가	제원	방식	대상	종류	기준	급여
덴마크 Denmark	정부전액 부담	보편주의	시민권자, 1년 이상 덴마크에 거주한 비시민권자(특별 추가급여에 대해서는 3년 이상), 상호협정이 작용되는 비시민권자와 난민	가족수당	덴마크에 거주하는 만 18세 미만의 아동이며, 부모는 반드시 남성자 이어야 함.	- 2세 이하의 자녀 : 14,156크로네(약 335.1만원)/연간 - 3 ~6세 자녀 : 12,792크로네(약 302.8만원)/연간 - 7 ~17세 자녀 : 9,696크로네(약 229.5만원)/연간 [한부모 추가급여] 자녀 일 인당 4,556크로네(약 107.8만원)/연간 지급. [고아 추가급여] - 양친이 모두 없는 아동 : 24,000 크로네(약 568.0만원)/연간 - 한쪽 부모가 없는 아동 : 12,000 크로네(약 284.0만원)/연간 [연금수급자 자녀 추가급여] - 양친 모두 연금수급자인 아동 : 13,128 크로네(약 310.7만 원)/연간 - 한쪽 부모가 연금수급자인 아동 : 11,628 크로네(약 275.2만 원)/연간 [학업 추가급여] 학업 중인 부모의 한쪽마다 5,976 크로네(약 141.4만원)/연간 지급. (모든 급여는 분기별로 지급됨.) (급여는 매년 소득의 변화에 따라 조정되며, 아동 양육비용 · 교육비용 · 양육휴직 등이 추가로 제공됨.)
				(Birth grant)		- 쌍둥이에 대해서, 두 번째 자녀부터 7,504 크로네(약 177.6 만원)/연간 지급.
				(Adoption grant)		(보조금은 자녀가 7살이 될 때까지 분기별로 지급됨.) - 입양된 외국인 아동 일인당 43,225 크로네(약 1,023.1만원) 가 일시별로 지급됨.

<부표 1> 계속

국가	제원	방식	대상	종류	기준	급여
스웨덴 Sweden	정부전액 부담. (부양비 보조) (maintenance support)를 위한 비용은 부양책임이 있는 부모의 상황으로 일부 충당됨.)	보편주의	이동수당: 1명 이상의 자녀를 둔 모든 거주자 양육보조: 한부모와 영구적으로 거주하는 아동	이동수당 (Child allowance) (Maintenance support)	만 16세 이하 아동(학생은 20세 미만까지, 학습부진아들을 위한 교육기관에 다니는 경우 만 23세까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 한 명당 1,050크로나/월 지급 - 2명이상 자녀가 있을 경우 둘째에 대해 100 크로나, 셋째는 354 크로나, 넷째는 860크로나, 다섯째 자녀에 대해서는 1,050크로나를 추가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육보조의 상응하는 보조를 자녀에게 제공하지 못하는 한쪽 부모와 영구적으로 동거하는 18세 미만의 아동(해당 년도 6월 까지 학생인 경우 20세 미만까지). - 자녀가 거주지를 바꾸는 경우, 자녀의 법적양육권이 있는 부모에게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 한 명당 1,273크로나/월 지급. - 자녀의 소득이 100,000크로나의 소득한도액을 넘는 경우, 양육보조비용은 절반으로 감액됨.

<부표 1> 계속

국가	제원	방식	대상	종류	기준	급여
스페인 Spain	정부전액 부담	사회보협 사회부조	스페인에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자녀를 가진 가족.	가족수당 :소득조사 (Family allowance : Income-tested)	만 18세 미만 양육 및 입양아동(65% 이상의 장애가 있는 경우 나이제한 없음). 아동이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경우는 연간소득이 8,400유로를 넘지 않아야 함. 수급자는 기타의 주정부 가족 급여를 받지 않 아야 함. 아동과 수급자는 법적으로 스페인에 거주하고 있어야 함. (소득조사 : 한 자녀 가정의 경우 연간 소득이 11,000유로를 넘 지 않아야 하며, 세 자녀의 경우 16,555.70유로, 자녀가 한명 늘어날 때마다 2,681.56유로가 소득한도액에 추가됨. 33%이상 의 장애를 가진 18세 미만 아동이나 65%이상 장애를 가진 17 세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정에는 소득제한이 없음)	일인당 291유로/연간. - 3세 미만 자녀 : 일인당 500유로 - 33%이상 장애가 있는 경우 일인당 1,000유로 - 18세 이상이면서 장애가 65%이상인 경우 일인당 3,914.28 유로 - 75%이상의 장애가 있어서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경우 : 5,911.92유로
				(Birth or adoption grant : Income-tested)	출생하거나 입양된 아동에게 지급. 아동과 수급자는 법적으로 스페인에 거주하고 있어야 함. (소득조사 : 자녀가 3명 있는 가정의 경우 연간소득이 15,500.63유로를 넘지 않아야 하며, 자녀가 1명 추가될 때마다 한도액이 2,510.67유로 늘어남)	세금신고액에 대해 2,500유로의 세금공제. 대가족, 한부모 세대, 66%이상의 장애를 가진 아동을 가진 모 친에게는 1,000유로의 추가 세금공제 혜택이 주어지나, 자산조 사의 대상이 됨. 출산 및 입양보조금이 다출산 및 다입양보조금과 동시에 지급 될 수 있음.
				(Multiple births or adoption grant : no income test)	두 명 이상의 자녀를 출생하거나 입양하는 경우 지급. 수급자는 기타 주정부의 가족급여를 받지 않아야 함.	- 쌍둥이를 출산하거나 두 명의 아동을 입양하는 경우 : 보조 금의 액수는 월최소임금의 4배에 상당. - 세쌍둥이를 출산하거나 세 명의 아동을 입양하는 경우 : 8 배. - 네쌍둥이 이상의 출산과 네 명 이상의 아동 입양 경우 : 12배. (월최소임금 : 600유로) 출산 및 입양보조금이 다출산 및 다입양보조금과 동시에 지급 될 수 있음.

〈부표 2〉 정부와 고용주가 부담하는 국기들

국가	재원	방식	대상	종류	기준	급여
오스트리아 (Austria)	<p>자영업자 : 원칙적으로는 없으나, 농업인의 경우, 토지세의 일부가 가족수당의 재정으로 사용됨)</p> <p>고용주 : 임금총액의 4.5%</p> <p>정부 : 주의 거주자 당 연 1.74 유로를 전체 예산에 기여, 연방정부의 세금 총수입액의 일정 비율을 가족수당행항기금으로 이전</p> <p>거주자가 2,000명이 넘는 연방정부·주·지방자치정부는 지역예산 외에 추가로 가족수당에 필요한 비용을 지拂함.</p> <p>이동수당은 전적으로 가족수당행항기금에서 재원을 충당함.</p>	<p>보편주의</p>	<p>오스트리아에 지속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1명 이상의 자녀를 가진자(비시민권자는 3개월 이상 근무자 혹은 지난 5년동안 지속적으로 오스트리아에 거주한 자)</p>	<p>가족수당 (Family allowance)</p>	<p>자녀는 만 18세 미만이어야 함(학생, 혼련 및 직업훈련생 혹은 각종 장애자 26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세 미만 첫째 자녀 : 105.40유로/월 - 3 ~9세 첫째 자녀 : 112.70유로/월 - 10 ~18세 첫째 자녀 : 130.90유로/월 - 19세 이상 첫째 자녀 : 152.70유로/월 - 둘째 자녀 : 12.80유로/월 인상 - 셋째 자녀 이후 : 24.50유로/월 인상. <p>[중증장애아동추가급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증 장애가 있는 경우 : 138.30유로/월
			<p>가족수당의 대상자이면서 2002년 1월 이후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연간소득 14,600유로 미만의 부모에게 지급.</p>	<p>이동수당 (Child care allowance)</p>	<p>가족수당이 5,200유로까지의 한부모 가정에 6.06유로/일 추가 급여.</p> <p>(상황에 따라, 배우자의 연간 소득 7,200유로인 경우까지도 지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우자의 연간 소득이 7,200유로를 초과하는 경우 추가금 액분에서 차액이 공제됨. <p>(추가급여는 자녀가 15세가 되기 전에 상환해야 함)</p> <p>[대가족추가급여]</p> <p>과세표준소득이 한도를 넘지 않는 경우, 셋째 자녀 이후의 자녀를 대상으로 36.40유로/월 지급됨.</p> <p>[쌍둥이추가급여]</p> <p>쌍둥이 중 한 자녀를 제외한 나머지 자녀에게 7.07유로/일 추가 지급됨.</p>	

<부표 2> 계속

국가	제원	방식	대상	종류	기준	급여
프랑스 (France)	자영업자 : 소득의 5.4% 고용주 : 임금 총액의 5.4% 장부 : 개인 소득에 사회기여금(CSG) 을 부과하여 기금 형성.	보편주의	프랑스에 거주하는 모든 아동	가족수당 (Family allowance)	만 20세 미만의 자녀가 최소 2명이고, 자녀가 일하는 경 우 소득이 법정최저 임금의 55% 미만일 때.	- 두 자녀 : 119.13유로/월 - 세 자녀 : 271.75유로/월 - 네 자녀 : 424.37유로/월 - 추가되는 경우 할 자녀당 152.63유로 추가지급 - 12세 이상의 자녀에게 33.51유로, 17세 이상의 자녀에게 59.57 유로 추가지급 (단, 두 자녀 기점 중 첫 번째 자는 제외). - 74.06유로/월의 고정금액이 가장 1년 동안 20세의 자녀를 포함하여 가족수당의 대상에 해당하는 세 자녀 이상의 가정 에 지급. 일을 하고 있는 자녀의 수입은 746.39유로 이하이 어야 함.
				(Parental allowance for a sick child)	아프거나, 상해를 입거나, 장애가 있는 자녀를 돌보기 위 해 부모가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일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 최대 12개월까지 지급. 이 수당의 수급자는 근로감축기금이나 장애이동에 대한 특별양육수당 지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39.58유로/일(한부모 가정의 경우 47.02유로/일)는 한 달에 최 대 22일까지 휴직일수에 대해 지급됨. 급여는 12개월까지 지급. 감소된 급여는 자녀를 돌보는데 두 부모의 활동이 모두 줄어 는 경우, 두 부모에게 모두 지급됨. 부모는 아픈 자녀를 돌보는데 3년 동안 가장 310일까지 육아 휴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101.22유로가 자산 조사된 의료 비용으로 지급됨.
				장애아동 특별양육수당 (Special parental allowance for a disabled child)	50%이상 장애가 있는 20세까지의 아동에게 지급. 자산조사를 가지지 않음. 이 수당의 수급자는 sick child에 대한 양육수당 지급 대 상에 해당되지 않음.	수급자의 소득이 없을 경우, 인상부에는 561.18유로, 한 자 녀를 양육하는 한부모에게는 748.24유로, 자녀가 늘어날 때 다 187.06유로의 추가 급여가 지급됨. 소득이 있는 한부모의 경우, 소득의 총액과 자녀수에 따른 flat-rate housing amount에 따라 수당은 감소함. 급여는 아동이 3살이 될 때까지 지급되며, 3살 이상의 아동 의 경우 12개월동안 지급됨.
				한부모 수당 (Single-parent allowance ; means-tested)	자녀가 1명 이상이거나 임신 중인 한 부모 세대의 최소가 계소득을 보장.	

<부표 2> 계속

국가	지원	방식	대상	종류	기준	급여
프랑스 (France)	자영업자 : 소득의 5.4% 고용주 : 임금 총액의 5.4% 정부 : 개인 소득에 사회기여금(CSG) 을 부과하여 기금 형성	보편주의	프랑스에 거주하는 모든 이동	(Family backing allowance) (New school year allowance : means-tested)	고아, 미인정(nonrecognized) 및 유기 (abandoned)아동에 대해 지급. 6-18세의 학생 등에 대해 지급. 직업이 있는 아동에 대해서는 746.39유로월 을 초과하지 않음. (자산조사 - 한 자녀 : 17,011유로/연간 - 두 자녀 : 20,937유로/연간 - 세 자녀 : 24,863유로/연간 - 추가 : 3,926유로/연간/인 가계연간소득이 위의 한도액을 넘지 않아야하며, 근소하게 넘는 경우는 일부 감액하여 지급)	한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에게 83.76유로가, 양부모로부터 양육받지 못하는 아동에게는 111.68유로가 지급됨. 272.57유로가 한 아이당 지급됨. 16세 미만의 아동에게 8월에 지급됨. 16세-18세 아동의 경우 재학 또는 도제 중이라는 증명에 있 어야 지급됨.
				(Family supplement : means-tested)	3세-21세까지의 자녀가 3명 이상 있는 가정에 지급.	155.05유로의 금액이 매월 가정에 지급됨.
				(Housing allowance : means-tested)	한 가지 이상의 가족수당급여를 받고 있는 자에게 자격 부여.	임대 수준, 소득,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됨.
				(Home moving allowance)	새로운 자녀의 출생이나 입양으로 인해 가구수의 증가로 이사를 해야 하는 자녀 3명 이상의 가구에 지급. Housing allowance의 수급 자격을 갖고 있는 가정에 한 함.	부양 자녀 수의 최대한까지 지급되는 이사에 필요한 비용.
				(Health care card)	Part A의 최고금액을 수급하고 있는 자에게 제공. - 또한 신청 이전 8주 동안의 소득조사 결과 자격에 부합 하는 경우에도 저소득 의료카드가 제공됨. (소득조사 : 연간 과세표준소득과 수급 중인 생활보조금에 기초하여 조사됨)	소득보조를 받는 수급자와 Part A 세제혜택을 받는 가정에 자동적으로 발급됨. 일차적으로는 처방과 의료 이용 시 합인을 받을 수 있으며, 지방정부로부터 추가적인 보건·교통 혜택 등을 받을 수도 있음.

<부표 2> 계속

국가	제원	방식	대상	종류	기준	급여
이스라엘 (israel)	<p>자영업자 : 소득의 1.39% 미만 + 국민평균연금의 60% 이상의 소득자에게는 소득의 2.4% 추가 부과 (월 최소급여금은 1,916세켈로 월 국민평균임금의 25%에 상당하는 금액) (2008년 1월 월 국민평균임금은 7,663 세켈)</p> <p>자영업자 : 해당없음</p> <p>고용주 : 소득의 1.47% 미만 + 국민평균연금의 60%이상 소득자에게는 소득의 2.08% 추가 부과. (월 최소 급여금은 3,710 세켈로 월 최소임금과 동일)</p> <p>(월 최태급여금은 매년 1월 1일 국민평균임금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과 동일)</p> <p>(2008년 1월 월 국민평균임금은 7,663 세켈)</p> <p>정부 : 소득의 0.8% + 보험급여금·연기금·이민아동에 대한 지급액의 총액의 202.38%에 상당하는 금액.</p> <p>(월 최소 급여금은 3,710 세켈로 월 최소임금과 동일)</p> <p>(월 최태급여금은 매년 1월 1일 국민평균임금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과 동일)</p> <p>(2008년 1월 월 국민평균임금은 7,663 세켈)</p>	보편주의	1명 이상의 자녀를 가진 거주자	가족수당 (Family allowance)	이스라엘 거주 만 18세 이하 아동	<p>1004년 현재 첫째와 둘째 자녀가 있는 가족은 아동 당 월 120 세켈(new shekel).</p> <p>셋째 자녀는 월 164세켈, 넷째 자녀는 월 404세켈, 다섯째인 경우는 월 459세켈.</p> <p>이러한 자녀수에 따른 급여의 차등화는 2009년부터 소멸될 예정이다.</p> <p>이는 2008년 6월이나 이후 출생한 아동들에 대하여 자녀의 출생순위와 무관하게 모두 120세켈을 지급하도록 제도를 변화하였다기 때문임.</p> <p>2006년 6월 이전에 출생한 아동들에 대해서는 급여액이 점차 감소되어 출생순위와 상관없이 모든 아동들은 같은 비율의 급여액을 받게 됨.</p>

<부표 2> 계속

국가	제원	방식	대상	종류	기준	급여
이탈리아 (Italy)	<p>자영업자·해당사항 없음. 고용주 : 임금 총액의 2.48% 정부 : 고용주 기여금의 1.8%를 포함한 보조금 부담</p>	<p>고용관련제도 (Employment-related system)</p>	<p>근로자의 자녀와 과반양자 사회보험, 복지, 실업수당을 받는 자. 자영업자와 특수체계 하의 영급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특별 시스템</p>	<p>가족수당 : 자산조사 (Family allowance : means-tested) 가족 부양수당 : 자산조사 (Family support allowance : means-tested)</p>	<p>수급자는 유급근로자로서 비상근직 조합원 영급수급자, 결직, 출신, 질병 급여등의 수급자, 군부자 등이어야 함. 이혼하지 않았거나 별거중인 과부양 배우자 만 18세 미만의 자녀(장애인의 경우, 나이제한 없음, 전업학생 21세, 대학생 26세), 부모님이 돌이거섯을 경우, 부양하여야 할 형제나 조카(survivor) 영급의 수급대상자가 아닌 자).</p>	<p>가족 수와 부양가족수, 장애가족 수, 한부모 여부 등의 조건에 따라 월 급여액은 10.33유로에서 1,132.50유로까지 차등 지급됨.</p>
일본 (Japan)	<p>근로자와 비고용자의 이중구조 0-3세 : 근로자 : 사업주 부담 7/10 4-10세 : 근로자 : 사업주 부담 없음 11-12세 : 근로자 : 사업주 부담 없음 13세 : 근로자 : 사업주 부담 없음 14-15세 : 비고용자 : 사업주 부담 없음 16-17세 : 근로자 : 사업주 부담 없음 18세 : 근로자 : 사업주 부담 없음 19-23세 : 근로자 : 사업주 부담 없음 24세 : 근로자 : 사업주 부담 없음 25세 : 근로자 : 사업주 부담 없음 26세 : 근로자 : 사업주 부담 없음 27세 : 근로자 : 사업주 부담 없음 28세 : 근로자 : 사업주 부담 없음 29세 : 근로자 : 사업주 부담 없음 30세 : 근로자 : 사업주 부담 없음 31세 : 근로자 : 사업주 부담 없음 32세 : 근로자 : 사업주 부담 없음 33세 : 근로자 : 사업주 부담 없음 34세 : 근로자 : 사업주 부담 없음 35세 : 근로자 : 사업주 부담 없음 36세 : 근로자 : 사업주 부담 없음 37세 : 근로자 : 사업주 부담 없음 38세 : 근로자 : 사업주 부담 없음 39세 : 근로자 : 사업주 부담 없음 40세 : 근로자 : 사업주 부담 없음 41세 : 근로자 : 사업주 부담 없음 42세 : 근로자 : 사업주 부담 없음 43세 : 근로자 : 사업주 부담 없음 44세 : 근로자 : 사업주 부담 없음 45세 : 근로자 : 사업주 부담 없음 46세 : 근로자 : 사업주 부담 없음 47세 : 근로자 : 사업주 부담 없음 48세 : 근로자 : 사업주 부담 없음 49세 : 근로자 : 사업주 부담 없음 50세 : 근로자 : 사업주 부담 없음 51세 : 근로자 : 사업주 부담 없음 52세 : 근로자 : 사업주 부담 없음 53세 : 근로자 : 사업주 부담 없음 54세 : 근로자 : 사업주 부담 없음 55세 : 근로자 : 사업주 부담 없음 56세 : 근로자 : 사업주 부담 없음 57세 : 근로자 : 사업주 부담 없음 58세 : 근로자 : 사업주 부담 없음 59세 : 근로자 : 사업주 부담 없음 60세 : 근로자 : 사업주 부담 없음 61세 : 근로자 : 사업주 부담 없음 62세 : 근로자 : 사업주 부담 없음 63세 : 근로자 : 사업주 부담 없음 64세 : 근로자 : 사업주 부담 없음 65세 : 근로자 : 사업주 부담 없음 66세 : 근로자 : 사업주 부담 없음 67세 : 근로자 : 사업주 부담 없음 68세 : 근로자 : 사업주 부담 없음 69세 : 근로자 : 사업주 부담 없음 70세 : 근로자 : 사업주 부담 없음 71세 : 근로자 : 사업주 부담 없음 72세 : 근로자 : 사업주 부담 없음 73세 : 근로자 : 사업주 부담 없음 74세 : 근로자 : 사업주 부담 없음 75세 : 근로자 : 사업주 부담 없음 76세 : 근로자 : 사업주 부담 없음 77세 : 근로자 : 사업주 부담 없음 78세 : 근로자 : 사업주 부담 없음 79세 : 근로자 : 사업주 부담 없음 80세 : 근로자 : 사업주 부담 없음 81세 : 근로자 : 사업주 부담 없음 82세 : 근로자 : 사업주 부담 없음 83세 : 근로자 : 사업주 부담 없음 84세 : 근로자 : 사업주 부담 없음 85세 : 근로자 : 사업주 부담 없음 86세 : 근로자 : 사업주 부담 없음 87세 : 근로자 : 사업주 부담 없음 88세 : 근로자 : 사업주 부담 없음 89세 : 근로자 : 사업주 부담 없음 90세 : 근로자 : 사업주 부담 없음 91세 : 근로자 : 사업주 부담 없음 92세 : 근로자 : 사업주 부담 없음 93세 : 근로자 : 사업주 부담 없음 94세 : 근로자 : 사업주 부담 없음 95세 : 근로자 : 사업주 부담 없음 96세 : 근로자 : 사업주 부담 없음 97세 : 근로자 : 사업주 부담 없음 98세 : 근로자 : 사업주 부담 없음 99세 : 근로자 : 사업주 부담 없음 100세 : 근로자 : 사업주 부담 없음</p>	<p>고용주부담 (Employer Liability)</p>	<p>만 12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자</p>	<p>가족수당 (Family allowance)</p>	<p>3명 이상의 부양 아동이 있는 가정에 지급 (3명의 부양아동을 포함한 5인 가족의 경우, 연간소득이 22,480,911유로를 넘지 않아야 함).</p>	<p>124.89유로/월 지급. [자급 일정] 매월 지급되며, 12월에 13번째 지급.</p>
					<p>아동수당 : 12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자에게 그 소득이 4인가족의 경우 과년 소득이 7,800,000엔 미만 특례급여 : 12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자로서 소득 제도에 의해 아동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근로자(후생연금 등 근로자 연금가입자 등)이 특별로서 특례급여의 한도에 미만이 아닌 경우(4인가족의 경우, 7,800,000엔 미만)에 지급 8,600,000엔 미만)에 지급</p>	<p>아동수당 특례급여 모두 첫째 둘째 자녀의 경우 한달에 5,000엔, 셋째 자녀의 경우 한달에 10,000엔 지급. 수당은 2월 6월 10월에 지급</p>

〈부표 3〉 정부의 고용주, 피보험자가 재정을 부담하는 국가들

국가	제원	방식	대상	종류	기준	급여
포르투갈 (Portugal)	<p>피보험자 : 사회보험 중 34.75%(소득의 11%)를 피보험자가 납부하며, 그 중 2.15%가 가족수당의 재원으로 사용됨. 자영업자 : 사회보험 중 32%(평균소득의 25.4%)를 납부하며, 이 중 일부가 가족수당의 재원으로 사용됨. 고용주 : 사회보험 중 34.75%(전체 임금의 23.75%)를 납부하며, 그 중 2.15%가 가족수당의 재원으로 사용됨. 정부 : 프로그램에 보조금을 지불함.</p>	<p>보편주의</p>	<p>포르투갈에 거주하는 내외국인, 남민과 비시민자</p>	<p>가족수당 : 소득조사 (Family allowance : income-tested)</p>	<p>피보험자는 수당 청구 전에 지난 2개월 이전의 12개월 동안의 수입을 등록해야 함 (연금수령자의 보류 혹은 비합법적인 수령인 후 은 직업병 수당 수혜자는 최소 50%까지 사정 한다) 수급자는 포르투갈에 거주하고 피보험자의 피부 양자이며, 의무사회보장제도(compulsory social security scheme)에 보호받지 않아야 함.</p>	<p>- 수당은 가계 소득과 자녀 연령을 기준으로 차등 지급됨. 가계소득은 가구원의 총 수입을 해당 자녀 수에 1을 더한 값으로 나누어 결정됨. 수당은 최저임금(407.41유로)의 5배까지 지급됨 - 가족소득이 최저임금(월 407.41유로)의 50%미만이 면, 아동이 만 12개월이 될 때까지 135.84유로/월 지급, 만 12개월 이상이면 월 33.96유로 지급. - 가족소득이 최저임금의 50%-100%미만인 경우, 아동이 만 12개월이 될 때까지 112.66유로/월, 만 12개월 이상이면 28.17유로/월지급. - 가족소득이 최저임금 100%-150%인 경우 월 89.69유로가 해당 아동이 만 12개월이 될 때까지 지급되며, 만 12개월 사이면 월 25.79유로가 지급됨. - 가족의 소득이 최저임금의 150%-250%인 경우 12개월 미만 아동에게는 월 55.13유로, 만 12개월 이상이면 월 22.06유로 지급. - 가족소득이 최저임금의 250%-500%인 경우, 아동이 만 12개월이 될 때까지 월 33.09유로 지급, 만 12개월 이상이면 월 11.03유로 지급. [장애아동특별추가급여] - 14세 미만 : 57.80유로/월 - 14 ~18세 : 84.18유로/월 - 19 ~24세 : 112.69유로/월 [constant-attendance supplement]: 85.88유로/월 지급.</p>
				<p>(Prenatal family allowance) (Increased family allowance)</p>	<p>임신이 확인된 임신부에게 13주부터 지급. 가족소득이 사회급여 기준인 407.41유로의 5배를 넘지 않아야 함. 둘째 이상의 자녀 출생이나 입양 시 지급.</p>	<p>1세 미만의 자녀와, 1세 이상의 자녀에게 지급되는 가족수당과 가족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 둘째자녀의 출생이나 입양 시, 12개월에서 36개월 사이의 각 자녀에게 지급되는 가족 수당의 2배를 지급. 세 번째 자녀의 출생이나 입양 시, 12개월에서 36개월 사이의 자녀에게 지급되는 수당의 3배를 지급. 171.78유로/월 지급.</p>
				<p>(Lifelong)</p>	<p>신체·정신장애가 인정되는 24세 이상의 재정</p>	<p>171.78유로/월 지급. [연대추가급여]: 70세미만 16.83유로, 70세이상 33.65</p>

국가	재원	방식	대상	종류	기준	급여
그리스 (Greece)	피보험자 : 소득의 1% 자영업자 : 해당 없음. 고용주 : 임금 총액의 1% 정부 : 예산보조	고용관련제도	산업, 상업 등의 고용인	가족수당 (Family allowance)	직으로 부양이 필요한 가구원에게 지급. [연대 추가급여(solidarity supplement)] 평생수당에 추가하여 매달 추가 급여. 특수교육기관, 정규사립학교, 유치원에 다니거나, 특수기관의 지원을 받는 24세 미만의 장애 아동에게 지급. 가구원의 사망 전 마지막 2달 이전의 12개월 동안의 수입을 등록한 수급자에게 지급. 만 18세 미만의 자녀(학생 만 22세가 있고, 그리스에 거주 중인 그리스 혹은 EU 국민 부모가 전년도에 50일을 고용되었고, 지난 2개월간 실업수당을 받고, 2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일을 할 수 없거나 출산으로 2개월 동안 일을 못한 경우.	유로 지급. [constant-attendance allowance]: 85.88유로/월 지급. 가구소득에 따라 차등지급 장례식 비용을 지불한 자에게 208.85유로 지급 자녀가 한 명인 경우 월 8.22유로, 두명인 경우 24.65유로, 세명은 55.47유로, 네명은 67.38유로, 다섯명 이상은 자녀 당 11.29유로를 추가함. 한부모, 미망인, 장애인, 군인은 자녀 당 월 3.68유로를 추가 지급됨. 장애아동은 해당 아동에 대해 월 3.67유로를 추가 지급됨.

출처 : Social Security Programs throughout the World(2008),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http://www.ssa.gov>)

<부표 5> 시나리오 3, 4, 5안 소득기준별 수급대상 규모

대상이동 소득기준	3안			4안			5안		
	돌짜이동			돌짜이동 / 첫째이동			돌짜이동 / 첫째이동		
	양육수당 중복불가	양육수당 중복	양육수당 중복불가	양육수당 중복불가	양육수당 중복	양육수당 중복불가	양육수당 중복불가	양육수당 중복	양육수당 중복
소득하위 10% 이하	266,880 (0.55)	283,818 (0.59)	534,995 (1.10)	556,797 (1.15)	112,197 (0.23)	231,030 (0.48)	76,791 (0.2)	194,908 (0.4)	
소득하위 20% 이하	588,862 (1.22)	627,469 (1.29)	1,109,967 (2.29)	1,161,319 (2.40)	235,906 (0.49)	452,636 (0.93)	201,327 (0.4)	433,760 (0.9)	
소득하위 30% 이하	1,172,936 (2.42)	1,241,477 (2.56)	2,231,789 (4.61)	2,325,863 (4.80)	511,788 (1.06)	948,255 (1.96)	407,000 (0.8)	890,144 (1.8)	
소득하위 40% 이하	1,798,701 (3.71)	1,930,894 (3.98)	3,460,033 (7.14)	3,681,957 (7.60)	752,908 (1.55)	1,402,586 (2.89)	596,433 (1.2)	1,293,623 (2.7)	
소득하위 50% 이하	2,462,654 (5.08)	2,696,336 (5.56)	4,810,138 (9.93)	5,193,744 (10.72)	994,220 (2.05)	1,910,943 (3.94)	814,085 (1.7)	1,730,090 (3.6)	
소득하위 60% 이하	3,113,152 (6.42)	3,456,939 (7.13)	6,157,064 (12.71)	6,701,327 (13.83)	1,240,449 (2.56)	2,439,478 (5.03)	1,004,260 (2.1)	2,152,005 (4.4)	
소득하위 70% 이하	3,765,120 (7.77)	4,162,445 (8.59)	7,456,107 (15.39)	8,106,470 (16.73)	1,509,053 (3.11)	2,993,087 (6.18)	1,215,959 (2.5)	2,555,143 (5.3)	
소득하위 80% 이하	4,417,671 (9.12)	4,861,097 (10.03)	8,751,327 (18.06)	9,506,421 (19.62)	1,740,554 (3.59)	3,483,704 (7.19)	1,480,364 (3.1)	3,029,202 (6.3)	
소득하위 90% 이하	5,106,050 (10.54)	5,587,004 (11.53)	10,199,042 (21.05)	11,051,254 (22.81)	1,997,265 (4.12)	4,009,332 (8.27)	1,712,514 (3.5)	3,576,626 (7.4)	
소득하위 100% 이하	5,668,862 (11.70)	6,166,181 (12.73)	11,327,151 (23.38)	12,256,924 (25.29)	2,181,564 (4.50)	4,421,021 (9.12)	1,965,014 (4.1)	4,063,281 (8.4)	

<부표 6> 시나리오 1, 2인 소득기준별 소요재정 추계규모 결과표(월 10만원 수당 지급)

대상이동 소득기준	1인				2인			
	돌짜이동		첫째이동		돌짜이동		첫째이동	
	양육수당 중복불가	양육수당 중복	양육수당 중복불가	양육수당 중복	양육수당 중복불가	양육수당 중복	양육수당 중복불가	양육수당 중복
소득하위 10% 이하	9,347,111	11,379,639	13,086,918	15,703,150	22,810,724	24,843,251	40,810,472	43,426,704
소득하위 20% 이하	18,195,627	22,828,481	26,828,537	32,990,856	46,504,291	51,137,145	81,144,878	87,307,196
소득하위 30% 이하	30,497,749	38,722,707	47,206,715	58,495,684	91,912,367	100,137,325	160,997,362	172,286,330
소득하위 40% 이하	53,923,298	69,786,380	91,658,771	118,289,690	144,272,245	160,135,328	259,969,147	286,600,066
소득하위 50% 이하	78,521,839	106,563,636	140,292,658	186,325,309	197,828,287	225,870,084	369,605,825	415,638,476
소득하위 60% 이하	104,213,181	145,467,593	187,869,762	253,181,303	253,067,033	294,321,445	480,607,142	545,918,682
소득하위 70% 이하	124,812,884	172,491,920	228,945,287	306,988,836	305,899,239	353,578,275	588,115,678	666,159,227
소득하위 80% 이하	143,610,496	196,821,594	268,610,452	359,221,713	352,476,932	405,688,030	686,654,933	777,266,194
소득하위 90% 이하	167,552,435	225,266,970	313,570,163	415,835,601	407,224,269	464,938,803	794,689,995	896,955,433
소득하위 100% 이하	182,674,059	242,352,338	341,141,931	452,714,685	444,461,775	504,140,054	871,664,474	983,237,227

〈부표 7〉 시나리오 3, 4, 5안 소득기준별 소요재정 추계규모 결과표(월 10만원 수당 지급)

대상이동 소득기준	3안		4안		5안	
	돌짜이동		돌짜이동 / 첫째이동		돌짜이동 / 첫째이동	
	양육수당 중복불가	양육수당 중복	양육수당 중복불가	양육수당 중복불가	양육수당 중복불가	양육수당 중복
소득하위 10% 이하	32,025,656	34,058,183	64,199,444	13,463,612	9,214,932	23,388,972
소득하위 20% 이하	70,663,473	75,296,327	133,196,018	28,308,664	24,159,182	52,051,141
소득하위 30% 이하	140,752,312	148,977,270	267,814,633	61,414,618	48,839,945	106,817,272
소득하위 40% 이하	215,844,169	231,707,251	415,203,963	90,348,948	71,571,924	155,234,816
소득하위 50% 이하	295,518,477	323,560,275	577,216,611	119,306,448	97,690,191	207,610,785
소득하위 60% 이하	373,578,269	414,832,681	738,847,713	148,853,852	120,511,236	258,240,570
소득하위 70% 이하	451,814,345	499,493,381	894,732,873	181,086,355	145,915,106	306,617,196
소득하위 80% 이하	530,120,561	583,331,659	1,050,159,202	208,866,436	177,643,629	363,504,269
소득하위 90% 이하	612,726,001	670,440,536	1,223,885,067	239,671,834	205,501,732	429,195,072
소득하위 100% 이하	680,263,497	739,941,776	1,359,258,142	261,787,716	235,801,722	487,593,669

〈부표 8〉 시나리오 1, 2안 소득기준별 소요재정 추계규모 결과표(월 5만원 수당 지급)

대상이동 소득기준	1안				2안			
	돌짜이동		첫째이동		돌짜이동		첫째이동	
	양육수당 중복불가	양육수당 중복	양육수당 중복불가	양육수당 중복	양육수당 중복불가	양육수당 중복	양육수당 중복불가	양육수당 중복
소득하위 10% 이하	4,673,556	5,689,819	6,543,459	7,851,575	11,405,362	12,421,625	20,405,236	21,713,352
소득하위 20% 이하	9,097,813	11,414,240	13,414,269	16,495,428	23,252,145	25,568,573	40,572,439	43,653,598
소득하위 30% 이하	15,248,875	19,361,354	23,603,358	29,247,842	45,956,183	50,068,662	80,498,681	86,143,165
소득하위 40% 이하	26,961,649	34,893,190	45,829,386	59,144,845	72,136,123	80,067,664	129,984,574	143,300,033
소득하위 50% 이하	39,260,919	53,281,818	70,146,329	93,162,654	98,914,143	112,935,042	184,802,913	207,819,238
소득하위 60% 이하	52,106,591	72,733,797	93,934,881	126,590,651	126,533,517	147,160,723	240,303,571	272,959,341
소득하위 70% 이하	62,406,442	86,245,960	114,472,643	153,494,418	152,949,620	176,789,137	294,057,839	333,079,613
소득하위 80% 이하	71,805,248	98,410,797	134,305,226	179,610,857	176,238,466	202,844,015	343,327,467	388,633,097
소득하위 90% 이하	83,776,217	112,633,485	156,785,082	207,917,800	203,612,134	232,469,402	397,344,998	448,477,717
소득하위 100% 이하	91,337,030	121,176,169	170,570,966	226,357,342	222,230,888	252,070,027	435,832,237	491,618,614

